

2016년도 제4회 중국근현대사학회 정례발표회  
국제학술회의 발표자료집

# 근현대 한중관계사의 현안과 과제

- 일시: 2016년 12월 10일(토요일) 13:00-17:10
- 장소: 서울대학교 신양인문학술정보관 302호 국제회의실
- 주최: 중국근현대사학회
- 후원: 동북아역사재단

중국근현대사학회

이 발표논문집은 2016년도 동북아역사재단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음

# 프로그램

- 등록(13:00-13:30)
- 사회 및 발표와 토론

	사회: 김지환(인천대)
제 1 부	제1발표(13:30-14: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 <b>1905-1909년 일본의 간도 영토귀속문제 조사의 내막</b></li> <li>• 발표: 李花子(중국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li> <li>• 토론: 배성준(동북아역사재단)</li> </ul>
	제2발표(14:10-14: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 <b>1930-40년대 중한 외교문제의 현안과 과제</b> - 장정불과 소유린의 회억록을 중심으로</li> <li>• 발표: 김정현(동북아역사재단)</li> <li>• 토론: 김지훈(성균관대)</li> </ul>
	제3발표(14:50-15: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 <b>중일전쟁시기 조선 화교의 항일활동</b></li> <li>• 발표: 이정희(인천대)</li> <li>• 토론: 이은상(부산대)</li> </ul>
휴식	15:30-15:50
	사회: 오병수(동북아역사재단)
제 2 부	제4발표(15:50-16: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 <b>한국전쟁에 대한 중국의 반응과 동향</b></li> <li>• 발표: 서상문(고려대)</li> <li>• 토론: 손준식(중앙대)</li> </ul>
	제5발표(16:30-17: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 <b>냉전시기 동아시아 권위주의 국가 신문통제체제의 구축 과정</b> - 대만과 한국의 비교를 중심으로</li> <li>• 발표: 王恩美(대만사범대)</li> <li>• 토론: 문명기(국민대)</li> </ul>
만찬	18:00~20:00



# 목 차

## 【제1발표】

1905-1909년 일본의 간도 영토귀속문제 조사의 내막 ..... 이 화 자 1

## 【제2발표】

1930-40년대 중한 외교문제의 현안과 과제

- 蔣廷黻과 邵毓麟의 回憶錄을 중심으로 - ..... 김 정 현 29

## 【제3발표】

중일전쟁 시기 조선화교의 항일활동 ..... 李 正 熙 65

## 【제4발표】

충격과 혼돈: 한국전쟁에 대한 중국사회의 반응과 동향 ..... 서 상 문 97

## 【제5발표】

냉전시기 동아시아 권위주의 국가 신문통제체제의 구축 과정

- 대만과 한국의 비교를 중심으로 - ..... 왕언메이 117



【제1 발표】

## 1905-1909년 일본의 간도 영토귀속문제 조사의 내막

이 화 자\*

**요약** 러일전쟁 이후 일본은 간도문제를 도발하기 위하여, 간도와 백두산 지역에 대한 실지답사와 문헌연구를 진행하였다. 1907년 참모본부로부터 측량사를 파견하여 백두산 정계비와 그 동쪽에 있는 골짜기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흑석구(정계비 동쪽 골짜기, 조선에서 토문강이라고 칭함)가 송화강 상류에 연결되었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토문·두만 2강설의 기초였다. 이와는 반대로 나카이(中井喜太郎)와 나이토(内藤湖南) 등은 문헌연구를 통하여, 토문·두만이 같은 강이며, 1712년 목극등이 두만강을 경계로 정했으며, 흑석구는 목극등이 잘못 정한 두만강 수원이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1886·1887년 조선에서 두만강을 경계로 함을 인정한 것은 간도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외무성은 간도가 조선에 속한다는 논거가 약함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측을 견제하기 위하여, 여전히 간도 소속이 정해지지 않았음을 말하고, 2강설과 1887년 감계 결과의 무효 등을 들어 중국측의 두만강 경계론을 반박하였다. 결국에는 간도가 중국에 속함을 인정하는 조건으로 간도에 영사관을 세우고 ‘만주 5안건’의 이권을 얻는 등의 결과를 이끌어냈다.

검색어: 간도, 토문강, 두만강, 中井喜太郎, 内藤湖南

---

\* Li huazi 중국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 머리말

1. 간도의 가정(假定) 범위 설정과 백두산에 대한 실지답사
2. 나카이(中井喜太郎)와 나이토(内藤湖南)의 간도 문제에 대한 문헌연구
3. 외무성의 대청 담판책략과 ‘간도협약’의 체결  
결어

## 머리말

20세기 초 일본이 도발한 간도문제는 두 가지 측면이 포함된다. 하나가 간도 영토 귀속권 문제이고, 다른 하나가 간도지역 조선인 재판권 문제이다.<sup>1)</sup> ‘간도’란 1880년 대 조선인들이 두만강을 넘어가 땅을 개간하면서 생겨난 명칭이다. 주로 오늘날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일부분을 포함한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한 간도 영토귀속문제란 두만강 이북 지역이 중국에 속하는지 아니면 조선에 속하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일본이 간도문제에 개입하기 전에 초청 양국은 두만강 이북 영토귀속문제를 둘러싸고 두 차례의 논쟁과 교섭이 있었다. 하나가 1885(광서 11)·1887(광서 13)년 감계담판이며, 양국은 두만강을 경계로 하는데 합의를 보았다. 단지 두만강 상류 홍토산수·석을수 합류처 이상에서 합의를 보지 못하여 담판이 무산되었다. 다른 하나가 1902-1904년 대한제국 정부가 이범윤(李範允)을 두만강 이북 지역에 시찰사로 파견한 데 따른 분쟁이다. 그러나 얼마 후 이범윤의 사포대가 청조 길강군(吉强軍)에 의해 상기 지역에서 축출되었으며, 중한 양측 지방관 사이에 ‘변계선후장정(邊界善後章程)’이 체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 사이에 정식으로 국경조약을 맺지 못한 관계로 그 이후 일본이 이 문제에 간여하게 되는 구실을 제공하고 말았다.

1) 간도 조선인 재판권 문제에 관해서는 강용범, 『근대 중조일 3국이 간도 조선인에 대한 정책 연구』, 후룡강민족출판사, 2000년; 백영훈, 『동아세아 정치·외교사 연구--‘간도협약’과 재판관할권』, 오사카경제법과대학출판부, 2005년 등이 있다.

중국 학계의 간도문제 연구 성과를 살펴보면, 일본은 간도가 조선에 속한다는 증거가 부족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속한 간도 영토권을 교환 조건으로 삼아 간도에서의 특권과 ‘만주 5안건’의 이권을 얻었다고 보고 있다.<sup>2)</sup> 그러나 일본이 간도 영토귀속문제를 조사하는 내막 즉 실지답사와 문헌연구를 통하여 간도의 영토귀속문제를 밝히고 나아가 대청 담판책략을 짜는 과정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본 논고는 간도문제에 관한 기초자료인 『일본외교문서』·『통감부문서』,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에 보관된 지도 등을 통하여, 러일전쟁 이후 일본이 실지답사와 문헌연구를 통하여 간도의 범위를 정하고, 간도 귀속문제를 밝히며, 나아가 대청 담판책략을 모색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일본이 간도문제에 대한 교섭을 통하여 중국 동3성 지역에 대한 이권을 확장하고자 하였던 침략 본질을 깊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1. 간도의 가정(假定) 범위 설정과 백두산에 대한 실지답사

러일전쟁 이후 일본은 간도문제에 관심을 돌리게 되었다. 이에 앞서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간도의 지리적 범위였다. 간도란 고유 명사가 아니라 1880년대 조선 변민들이 두만강 이북에 넘어가 땅을 개간하면서 생겨난 명칭이었다. 즉 두만강이 종성·온성 사이를 흘러지나가 생긴 모래섬을 가리키는 말로서, 간도(壘島)라고도 쓰였으며, 개간한 섬이라는 뜻이었다. 그 이후 조선 변민들이 점차 두만강 이북에 넘어가 땅을 개간하면서 강 이북 지역을 간도라고 불렀다. 그러나 간도 범위가 모호하여, 어떤 사람은 해란강 이남을 가리킨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부르하통하 이남 또는 송화강 이남을 가리킨다고 하였다.

간도 범위와 귀속문제에 대해 맨 처음 조사에 착수한 것은 조선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이었다. 1905년 11월 주조선군 사령관 나가타니(長谷川好道)가 육군 참모본부에 ‘간도경계조사자료’라는 보고서를 올렸다.<sup>3)</sup> 이 보고서는 짤막한 글로서 함경도 관

2) 楊昭全·孫玉梅, 『中朝邊界史』, 吉林文史出版社, 1993년, 520-521쪽; 강용범의 앞 책, 131·144쪽.

찰사 조준우(1897년)와 경원군수 박일헌(1899년)의 조사기를 수록한 것이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1) 1712년 청과 조선의 정계에 대하여, 양국은 백두산에 관원을 파견하여 분수령에 비를 세웠으며, 서쪽으로 압록강, 동쪽으로 토문강을 경계로 정하였다. 토문강이란 정계비 동쪽에 있는 골짜기(흑석구입)가 대각봉(大角峰)에 이르러 흙벽이 마주하고 있는 것이 마치 문과 같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골짜기에 석퇴(石堆) 20리, 토퇴(土堆) 70리가 설치되어 있으며, 180여 개 되며, 그 위에 아름답디나무가 자라 있다. 또 토석퇴가 끝나는 곳에 이르러서는 계곡 물이 흘러 삼포(杉浦)를 이루며, 삼포 물이 송화강에 흘러들어간다고 하였다. 또한 두만강은 장산령 못에서 발원하며, 분수령 입비처(立碑處)까지 90리 된다는 것이었다.<sup>4)</sup> 이상의 내용은 조선 사람들이 말하는 이른바 토문·두만 2강설이다. 즉 다시 말하여 1712년 목극등이 토문강(송화강 상류)을 경계로 정하였고 두만강을 정하지 않았으며, 조선 변민들이 개간한 토문이남 두만이북의 간도가 조선에 속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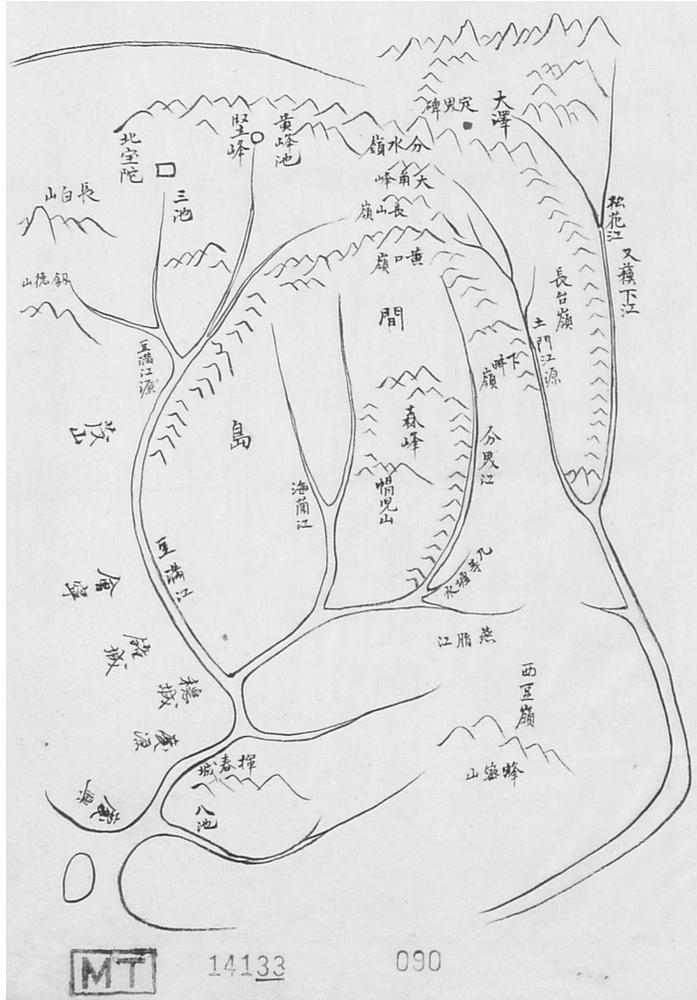
2) 조선 사람들의 이주 범위에 대하여, “무산 동쪽으로부터 온성에 이르기까지 600리, 길이 백리에서 수십리, 너비 50-60리 또는 20-30리에 이르러, 한인(韓人) 이주자가 수만호가 되며, 청인(淸人)의 압제를 받고 있으며, 청인은 한인의 1%를 차지하지 못한다.”고 기록하였다.<sup>5)</sup> 실은 이것이 당시 조선 유민들의 두만강 이북 지역에서의 개간 범위 즉 간도의 지리적 범위였다. 다시 이 보고서에 첨부된 지도(그림 1)를 살펴볼 경우, 간도가 분계강(分界江)과 두만강 사이에 있었다. 여기서 분계강이란 부르하통하를 가리켰으며,<sup>6)</sup> 즉 다시 말하여 간도가 부르하통하와 두만강 사이에 있었다.

3) 『間島境界調査材料』, 일본방위성방위연구소 소장, 육군-일로전역-M37-6-127, 1424-1431쪽.

4) 『間島境界調査材料』, 1426-1428쪽.

5) 『間島境界調査材料』, 142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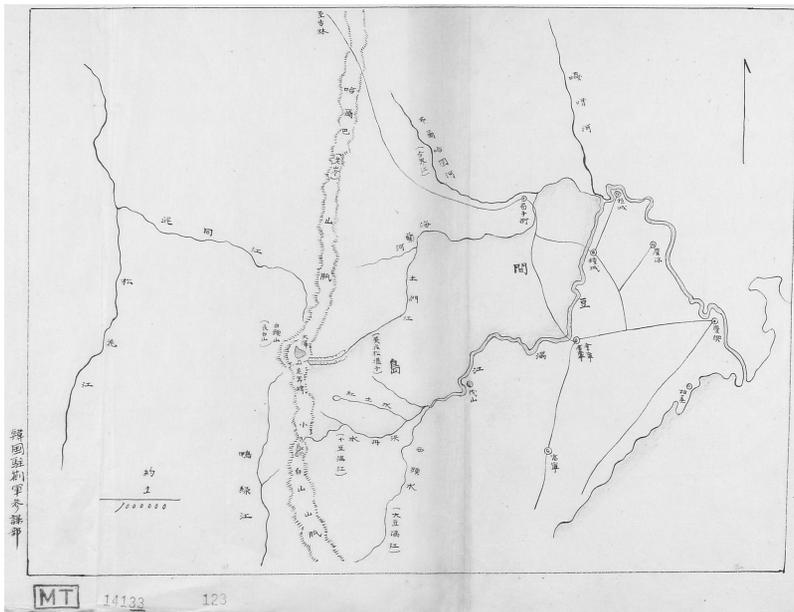
6) 조선 고지도를 살펴보면, 두만강 지류인 해란강·부르하통하를 분계강(分界江)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잘못된 지리인식에 속하며, 1712년 목극등 정계와 관련이 있는 듯하다. 즉 목극등이 정한 두만강 수원이 남쪽으로 흐른다고 한 것은 잘못되었으며, 이것이 두만강 정원이 아니며, 천지에서 발원하여 동쪽으로 흐르는 물이야말로 두만강 정원이라고 인식하였다. 한편 해란강이나 부르하통하가 서에서 동으로 흐르기 때문에 두만강 정원으로 잘못 인식하고 지도상에 분계강이라고 표기하게 되었다. 1880년대에 이르러 북도 변민들이 두만강 이북에 넘어가 땅을 개간하면서 분계강(해란강·부르하통하를 가리킴) 이남이 간도라고 하게 되었다. 조선의 토문강·분계강 인식에 대해서는 이화자, 『한중국경사 연구』(혜안, 2011년) 제2장 1절 참조.



[그림 1] 간도 범위도(『간도경계조사자료』의 삽도, 1905년)

그 다음해(1906년) 3월 주조선 일본군이 재차 보고서를 올렸는데, 『간도에 관한 조사 개요』였다. 이 보고서는 기존 문헌을 참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본군이 간도에 잠입하여 수집한 정보자료를 첨부하여, 내용 면에서 더 풍부해졌다. 예컨대 간도 명칭의 유래, 간도의 범위·지세·생산, 청인과 한인의 거주 상황, 청국인의 통치, 한국의 간도에 대한 정치, 국경문제의 유래 및 1885·1887년 감계담판, 간도의 국방 가치 등을 서술하였다. 그리고 백두산정계비 비문의 초본(抄本)과 간도 범위도(그림 2) 등을 첨부하였다.7)

이 보고서에 기술된 간도 범위를 살펴보면, 해란강과 두만강 사이에 있었다. 즉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토문강을 따라 해란하의 합류점에 이르고, 다시 해란하를 따라 부르하통하의 합류점에 이르며, 여기서부터 북쪽 부르하통하를 따라 두만강에 이른다.”<sup>8)</sup>는 것이었다. 여기서 토문강이란 해란하 상류를 가리키며(그림 2 참조) 송화강 상류를 가리키지 않았다. 이는 주조선 일본군의 정계비 비문의 이른바 “동위토문”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다. 보고서 기록에 의하면, “한국 사람들의 전하는 말과 기록에 근거할 경우, 토문강이 백두산에서 발원하여 동쪽으로 흐르고 또 북쪽으로 흘러 송화강에 흘러들어간다고 한다. 만약 이 같은 강을 토문강이라고 할 경우, 한국 영역이 매우 광대해지며, 오늘날 러시아·청 영토가 모두 한국 영역이 된다. 그러나 이는 필경 한국 사람들의 특유한 구실일 뿐이다.”<sup>9)</sup>라고 하였다. 즉 다시 말하여 러시아·청의 영토 현실로 보아도 토문강=송화강 상류가 경계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림 2] 간도 범위도(『간도에 대한 조사개요』, 1906년)

- 7) 『간도에 관한 조사개요』, 『간도 판도에 관한 청한 양국 분의 일건』(일본외무성의교사료관 소장, B-1-4-1-076) 제1권에 수록됨.
- 8) 『간도에 관한 조사개요』, 일본외무성의교사료관 소장, MT14133, 108-109.
- 9) 『간도에 관한 조사개요』, 일본외무성의교사료관 소장, MT14133, 108-109.

이 보고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간도의 국방 가치에 관한 내용이다. 1) 간도는 길림에서 조선 함북으로 통하는 요충지에 있으며, 물자가 풍부하다. 만약 적들이 간도를 점할 경우 직접 본지에서 식량을 해결할 수 있는 편리를 얻게 되지만, 함북은 무인지역이어서 멀리 후방의 물자에 의지해야 한다. 2) 회령 대안에 있는 간도의 지세가 높으며, 이 고지를 먼저 점할 경우, 적에게 회령 평지를 내주는 것과 같게 된다. 3) 만약 일본이 진공의 세를 갖추어 함북에서 길림으로 진군하려 할 경우, 반드시 간도를 먼저 점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목적을 이룰 수 없다. 이 때문에 간도가 청과 한국 어느 쪽에 속하는가는 것은 한국의 국토 방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sup>10)</sup> 이상의 보고서는 일본이 그 이듬해(1907년) 용정촌에 ‘통감부임시간도과출소’를 세우는데 추진 역할을 하였을 것이며, 조선에 대한 식민통치를 강화하고, 만주 지역으로 확장하기 위한 거점으로 삼으며,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전초 기지로서 간도를 경영할 필요가 제기되었을 것이다.

1907년에 이르러 통감부 간도과출소를 세우기 위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같은 해 3월 참모본부로부터 ‘동경제1지형측도반(測圖班)’이 두만강 상류 지역에 파견되어 측량을 실시하였다. 이 측도반은 네 개 팀으로 나뉘어 무산·회령·중성·온성 등지에서 측량을 실시하였으며, 5만분의 1 ‘간도국자가표면략측도(間島局子街表面略測圖)’를 그리고자 하였다. 이는 참모본부에서 실시하고 있던 외방측량 계획의 일부분이었다.<sup>11)</sup>

같은 해 4월 7-20일 육군 중좌 사이토(齋藤季治郎)와 측탁 시노다(篠田治策)가 통감부의 명을 받고 두만강 이북 지역에 잠입하여 정보를 수집하였다. 그 목적인즉 그곳의 일반상황과 통감부 간도과출소를 세울 위치를 물색하기 위해서였다. 이들은 회령에서 강을 건너 강북의 동성용·국자가(연길)·동불사·천보산·두도구·육도구(용정촌)를 경유하여 중성으로 돌아왔다. 2주 동안에 조선 개간민들이 집거하고 있던 해란강·부르하통하 유역을 조사하였으며, 해란강이 흘러지나가는 육도구(용정촌)에 간도과출소를 세울 것을 건의하였다.<sup>12)</sup>

8월 19일 ‘통감부임시간도과출소’가 용정촌에 세워졌다. 같은 날 북경 주재 일본공

10) 『간도에 관한 조사개요』, 일본외무성외교사료관 소장, MT14133, 120-121.

11) 『외방측량연혁사』 ‘草稿제2編前, 明治40年度’, 일본방위성방위연구소 소장, 지나-병요지지-129.

12) 篠田治策, 『통감부임시간도과출소기요』(1910년), 史芸研究所 2000년 영인본, 47쪽.

사가 청 외무부에 조회를 보내어, “간도가 중국 영토인지 한국 영토인지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곳의 한민(韓民)이 10여만이 되지만 마적과 무뢰배들의 능욕과 학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통감부에서 인원을 간도에 파견하여 보호하고자 함으로 속히 이곳의 중국 관원에게 전문을 보내어 오회를 없애도록 하기 바랍니다.”고 하였다.<sup>13)</sup> 이에 대하여 8월 24일 청 외무부는 조회를 통하여, “이곳은 연길청에 속하며, 확실히 중국 영토입니다.” “조청 국경을 살펴보면 도문강(두만강임-필자주)을 천연 계한으로 삼으며, 간도 명칭이 없습니다.” “조회문에 이른바 통감부에서 인원을 파견한다는데 대해 중국은 절대 허락할 수 없습니다.”고 강하게 항의하였다.<sup>14)</sup> 이로써 중일 간에 간도문제를 둘러싼 외교교섭이 시작되었다.

일본측은 간도파출소를 세움과 동시에 1712년 백두산 정계의 결과인 정계비와 흑석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같은 해 9월 5일 참모본부로부터 두 명의 측량수(測量手) 즉 오소네(大曾根誠二)와 나카하라(中原佐藏)가 백두산에 파견되었다. 이 두 사람은 간도파출소의 스즈키(鈴木信太郎)와 함께 떠났으며, 두만강을 거슬러 올라갔다. 중도에서 스즈키가 몸이 불편하여 무산에 머물러 있었고, 다른 두 사람이 백두산에 이르렀다.

일행의 행진 노선을 보면, 두만강을 거슬러 발원지와 원지(圓池) 근처에 이르렀고, 천지 동남쪽에 있는 입비처를 본 후 천지에 올랐다. 천지에서 내려온 후 정계비 동쪽 골짜기(흑석구·황화송구자임. 조선에서 말하는 토문강임)를 따라 갔으며, 동남 언덕에서 석퇴(돌무지임)를 발견하였다. 계속 골짜기를 따라 내려가 송화강 상류 소사하(小沙河) 입구에 이르렀다. 이어 두만강 상류 홍기하를 따라 내려와 홍기하와 두만강 합류처에 이르렀고, 두만강 물줄기를 따라 10월 2일 용정촌에 돌아왔다(그림 4 참조).<sup>1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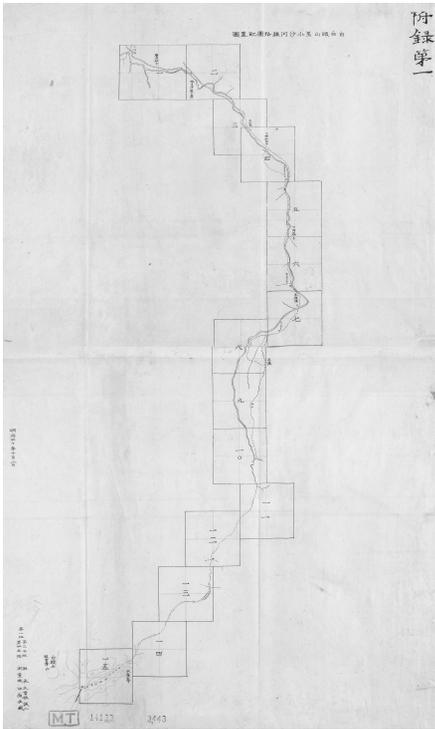
답사를 끝낸 후 두 측량수가 두 폭의 지도를 그렸는데, 하나가 5만분의 1 ‘백두산-소사하 노선도(自白頭山至小沙河線路圖)’(그림 3)이고, 다른 하나가 40만분의 1 ‘백두산부근 노선측도(長白山附近線路測圖)’(그림4)였다. 이밖에 정계비의 탁본과 사진 등을 남겼다.<sup>16)</sup> 이상의 자료는 10월 18일 통감부를 거쳐 외무성에 전달되었으며, 간도정책

13) 『일본외교문서』 40권 2책, ‘간도문제일건’, 873, 암남당서점, 1993년, 91-93쪽.

14) 『일본외교문서』 40권 2책, ‘간도문제일건’, 873, 91-9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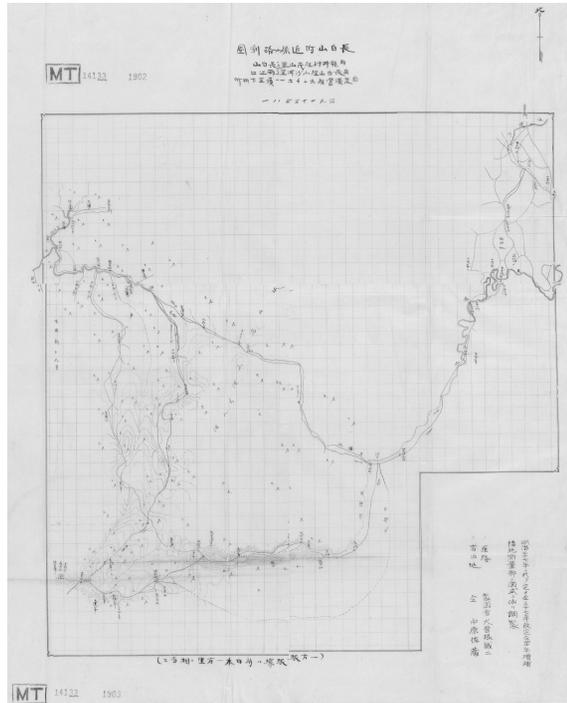
15) 『통감부임시간도파출소기요』, 89-91쪽; 『통감부문서』 2, ‘간도문제에 관한 서류 1-3’, 국사편찬위원회, 1998년, 349·356·369쪽.

과 대청 담판책략을 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sup>17)</sup>



[그림 3]

‘白頭山至小沙河線路圖’(1907년)



[그림 4] ‘長白山附近線路測圖’(1907년)

이상의 실지답사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즉 “정계비로부터 동쪽으로 하나의 골짜기 (흑석구임--필자주)가 있는데 동북으로 뻗어가며, 이것이 토문강 본류이다.” 그 동남안에 석퇴가 설치되어 있으며, 길이 7킬로미터(5킬로미터라고도 함--필자주)이다.<sup>18)</sup> 석퇴의 끝에 이르러서는 양쪽 기슭의 절벽 깊이가 백 미터 되며, 높이 솟아 있는 것이 마치 문과 같다하여 토문이라 하였다. 석퇴 끝으로부터 골짜기가 하천 모양을 띠며,

16) 『통감부임시간도파출소기요』, 90쪽.

17) 『통감부문서』 2, ‘간도문제에 관한 서류 1-3’, 415쪽.

18) 『통감부문서』 2(369쪽)의 기록에 의하면, 석퇴가 정계비로부터 5킬로미터 연장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기요』에는 7킬로미터라고 기록하였다. 북한 학자 황철산(黃鐵山)의 1948년 답사에 의하면, 골짜기 동남안에 석퇴가 106개 있으며, 첫 번째 석퇴로부터 마지막 석퇴까지 5,391미터라고 기록하였다(『NewsMaker』 611호, 2005년 2월 15일 참조).

삼림 속에서 동북으로 16킬로미터(4일본리라고 기록함. 1일본리≈3.927킬로미터임) 뻗어나가며, 또 북으로 1킬로미터 모래하천이 있다. 그 아래로 12킬로미터(3일본리≈12킬로미터) 작은 하천이 있으며, 송화강 상류 이도백하와 합쳐 소사하(小沙河)에 이른다. 또 길 안내자의 말에 의하면, 삼림 속에 24킬로미터(6일본리≈24킬로미터)의 토퇴(돌무지)가 있다고 하였지만 보지 못했다고 기록하였다.<sup>19)</sup> 여하튼 일행은 정계비 동쪽 골짜기를 따라 수십 킬로미터 내려갔으며, 송화강 상류 소사하에 이르렀다. 이로써 정계비와 토석퇴가 송화강에 이어졌음을 확인한 셈이다. 즉 다시 말하여 정계비와 연결된 실제 수원이 두만강이 아니라는 말이 되며, 이른바 토문·두만 2강설의 기초가 되었다. 그 이후 일본측은 이 결과를 이용하여 중국측의 두만강 경계론을 반박하고 나섰다.<sup>20)</sup>

그러나 위 조사결과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발견된다. 하나가 정계비 동쪽 골짜기 즉 흑석구가 과연 송화강 상류에 이어졌는가는 문제이다. 필자의 실지답사와 연구에 따르면, 흑석구가 하류 모래하천에 이르러 자취를 감추고 말며, 송화강에 연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 실제 상황은 다음과 같다. 흑석구 하류에 이르러, 동남안에 있는 토퇴가 먼저 사라지며, 이어 골짜기가 수백 미터 앞으로 나가다가 자취를 감추며, 그 아래에서 모래길이 연장되다가 황화송전자(풀밭)를 500미터 앞에 두고 완전히 사라져 버린다. 즉 다시 말하여 골짜기에서 흐르던 물이 이곳에 이르러 땅속에 스며들어 없어진다. 그 앞에는 망망한 원시림이 분포되어 있으며, 이 삼림과 황화송전자를 넘어야 송화강 상류 지류가 발원하였다.<sup>21)</sup> 이 뿐만 아니라 흑석구는 여름에 짧은 기간에 물이 흐를 뿐, 대부분 시간 마른 골짜기로 존재하였다. 이 점에 대해서는 1887년 조선 감계담판 대표 이중하도 “이른바 송화강 수원이란 건천(乾川)일 뿐, 물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sup>22)</sup> 즉 다시 말하여 흑석구가 송화강 상류가 아니라는 뜻이다.

19) 『통감부임시간도파출소기요』, 90·91쪽, 『통감부문서』 2, ‘간도문제에 관한 서류 1-3’, 369쪽.

20) 『일본외교문서』 41권 1책, ‘간도문제일건’, 463(455-457쪽).

21) 이화자, 「중국 북한 국경 답사기: 백두산 토퇴군의 새로운 발견」, 『문화역사지리』 제 24권 제3호, 2012년; 이화자, 「백두산 정계의 표식물: 흑석구의 토석퇴에 대한 새로운 고찰」, 『동방학지』 제162집, 2013년 6월 참조

22) 이중하, 『감계사교섭보고서』 ‘4월 15일 答華員’,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11514의 2. ‘所謂松花之源 只是乾川 元無點水’.

둘째, 골짜기 동남안에 설치된 토퇴를 보지 못한데 따른 의문이다. 골짜기에 대해 실지답사를 행할 경우, 석퇴 아래에 십여 킬로미터 연장되는 토퇴를 못 볼 리 없겠지만, 보지 못했다는 이유를 알 수 없다. 혹시 토퇴가 끝나는 곳에 이르러 송화강에 닿지 않았기에 그 존재를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처럼 흑석구에 대한 조사·측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천지 동남쪽에 있는 정계비터에 대한 조사·측량도 하였다. 그리하여 정계비 높이가 2척이 넘고, 너비가 1척이 넘으며, 그 위치가 “백두산 꼭대기 호수 동남 기슭 1리(약 4킬로미터임) 여에 있으며, 압록·토문 양강 수원 사이에 끼여 있다. 동남쪽으로 경사진 평탄한 안부(鞍部)에 위치해 있으며, 비석 정면이 남쪽으로 향하여 서북으로부터 30도 방향이 된다. 또 입비처(立碑處)로부터 서쪽 압록강 수원 절벽까지 약 3정(町, 1정≈109미터임)이고, 동쪽 토문강까지 약 5-6정(545-654미터임)이다.”라고 기록하였다. 즉 다시 말하여, 입비처가 천지 동남쪽 약 4킬로미터에 있으며, 서쪽 300여 미터에 압록강 수원이 있고, 동쪽 500여 미터에 토문강 즉 흑석구가 있다는 것이었다.<sup>23)</sup>

이상의 조사결과를 전체적으로 볼 때, 흑석구가 송화강에 연결되었다는 부분만 빼면, 조사 수치의 정확도가 높다고 하겠다. 특히 조사의 성과물인 5만분의 1 등고선지도(그림 3)의 경우, 흑석구에 관한 지도 중에서 가장 세밀한 지도였다. 기실 흑석구에 관한 기록을 통하여, 실제 길이를 알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앞에서 보았듯이 석퇴의 길이가 7킬로미터(5킬로미터라고도 함)이며, 여기에다가 삼림 속에서 연장하는 골짜기 길이 16킬로미터(실은 토퇴가 분포됨)를 더할 경우, 총 길이가 23킬로미터(혹은 21킬로미터)이다. 이것이 실은 흑석구의 전체 길이이다. 이는 필자의 연구·답사 수치와도 비슷하다.<sup>24)</sup> 위에서 보았듯이 여기서 앞으로 더 나갈 경우 1킬로미터 모래하천이 있으며 삼포(杉浦)라고 불렀다. 이는 실은 흑석구 하류에 속하며, 여기에 도착할 경우 골짜기가 자취를 감췄다. 앞으로 더 나갈 경우 12킬로미터 작은 하천이 있다고

23) 『통감부임시간도파출소기요』, 10-11쪽.

24) 필자는 최근 중국 경내에 있는 흑석구(황화송구자)에 대한 답사를 끝마쳤으며, 북한 경내의 흑석구에 석퇴가 있음도 확인하였다. 그리하여 석퇴의 길이가 약 5.3킬로미터(황철산이 5,391미터라고 주장)이고 토퇴의 길이가 약 18킬로미터이며, 토석퇴의 총 길이가 약 23킬로미터이며, 흑석구의 길이가 약 24킬로미터라고 생각한다(이화자, 『중국 북한 국경 답사기: 백두산 토퇴군의 새로운 발견』; 이화자, 『백두산 정계의 표식물: 흑석구의 토석퇴에 대한 새로운 고찰』 참조).

하였지만, 실은 흑석구와 연결되지 않았다. 그 중간에 삼림과 황화송전자가 분포되어 있었다. 즉 다시 말하여 흑석구와 송화강 상류가 이어져 있지 않고 끊어져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보았듯이 모래하천과 작은 하천 사이를 모호하게 서술함으로써 둘 사이가 이어지듯이 해놓았다(그림 3 참조). 이는 1883년 어윤중이 종성 사람 김우식 등으로 하여금 답사한 후 토문강이 송화강 상류라고 보고한 것과 동일한 수법이다.<sup>25)</sup> 간도가 조선에 속함을 주장하기 위해서였다.

## 2. 나카이(中井喜太郎)와 나이토(内藤湖南)의 간도문제에 대한 문헌연구

러일전쟁 이후 일본은 간도문제에 대한 문헌연구에 착수하였다. 나카이(中井喜太郎)가 통감부에 의해 촉탁에 임명되었고 나이토(内藤湖南)가 참모본부·외무성에 의해 촉탁에 임명되어, 문헌자료를 통하여 간도의 범위와 영토귀속문제를 연구하게 되었다.

나카이는 ‘요미우리신문’의 총편과 주필을 맡았으며, 1902년 ‘조선협회’ 간사로 조선에 가서 ‘대러동지회’에 참석하였으며, 주전론을 폈던 인물이다. 1905년 5월 러일전쟁이 끝난 직후 러시아인들이 아직 간도에서 철수하기 전에 그는 주조선 일본군 조사원들과 함께 간도에 잠입하여 정보를 수집하였다.<sup>26)</sup> 또한 간도문제를 조사하기 위하여, 서울에서 한국측 자료를 조사하였다. 예컨대 1712년 백두산정계에 관하여, 흥세대의 『백두산기』, 『숙종실록』의 관련 기술, 『동문회고』의 설책(設柵)에 관한 자문, 『북여요선』(김노규 편) 중의 이의복의 기사, 숙종의 ‘백두산시’ 등을 참고하였다. 또한 1885·1887년 감계담판에 관해서는 이중하의 장계, 양측 왕복 서류와 담판 기록인 『북감도문계지담록공문절략(覆勘圖們界址談錄公文節略)』 등을 참고하였다. 1902-

25) 이른바 흑석구가 송화강에 연결되었다고 보는 것은 조선 북도경략사인 어윤중이 1883년 종성 사람 김우식 등을 파견하여 답사한 후 제기한 것이다. 그 이후 1885·1877년 감계 때 조정 양국 대표들은 각기의 주장을 놓고 논쟁을 벌일 뿐, 이 착오를 수정하지는 못하였다.

26) 名和悦子, 『内藤湖南의 근대 동아시아 시각--20세기 초 간도문제와의 상호 관련성』, 岡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0년, 35쪽.

1904년 이범윤(李範允)이 두만강 이북에서의 활동에 관해서는 양측 교섭 서류와 이범윤의 보고서 등을 참고하였다. 이를 기초로 1907년 9월에 『간도문제의 연혁』이라는 보고서를 통감부에 올렸으며, 11월에 외무성에 전달되었다.<sup>27)</sup>

나카이의 『간도문제의 연혁』은 세 부분으로 나뉜다. 즉 정계사(목극등을 가리킴)·감계사(이중하를 가리킴)·시찰사(이범윤을 가리킴)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1712년 백두산 정계에 관하여, 청사 목극등이 백두산에 정계비를 세우고, 두만강을 따라 무산에 이르렀으며, 회령·경원에 도착하여 두만강 입해구(入海口)를 본 후, 경원에서 훈춘에 넘어가 북경에 돌아갔으므로 목극등이 정한 것이 두만강임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목극등이 귀국한 후 조선은 정계비 동쪽으로부터 연이어 석퇴·토포를 설치하고, 토포 끝으로부터 두만강 상류 홍토수까지 목책을 설치하였으나, 그 이후 목책이 다 썩어 없어졌다. 이 역시 목극등이 두만강을 경계로 정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었다.<sup>28)</sup> 또한 조선 사람들이 말하는 이른바 정계비 동쪽에 있는 토문강(혹석구임)이란 실은 목극등이 토인(김애순)에게 속여 잘못 정한 두만강 수원이라고 보았다.<sup>29)</sup> 여하튼 나카이는 1712년 목극등이 두만강을 경계로 정했다고 보았다.

둘째로 1885·1887년 감계담판에 관해서는 자료에 근거하여 감계의 원인·경과 및 결과에 대해 서술하였다. 그리하여 조선측은 “목극등 비의 이른바 토문강에 대하여 두만강임을 인정하였으며, 이로써 경계를 정할 것을 주장하였다(중앙정부의 명을 받들고 그렇게 했는지는 알 수 없다). 이로써 두만강 상류 경계, 특히 무산 하류의 회령·종성·온성 양쪽에 있어서는 명백히 두만강으로 조청 양국의 경계를 나누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 정부를 놓고 볼 때, 오늘날 간도가 청국 영토임을 확실히 인정했으

27) 中井喜太郎, 『간도문제의 연혁』(『간도 판도에 관한 청한 양국 분의 일건』 제3권, 일본외무성외교사료관 소장: B-1-4-1-078, MT14133, 1521에 수록됨).

28) 中井喜太郎, 『간도문제의 연혁』, 120-121쪽.

29) 中井喜太郎, 『간도문제의 연혁』, 24-27쪽. 나카이는 정계비 동쪽에 있는 골짜기(혹석구·황화송구자)가 목극등이 잘못 정한 두만강 정원이라고 하고 있지만, 필자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사료에 의할 경우, 이 골짜기는 처음부터 두만강 복류처 즉 물이 땅속에서 흐르는 부분으로 간주되었으며, 두만강 수원의 일부분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므로 나카이의 주장처럼 잘못 정해진 두만강이 아니다. 잘못 정해진 두만강이란 두만강 발원지 근처에 있는 오도백하 지류일 가능성이 크다. 이에 관해서는 이화자, 『한중국경사 연구』(혜안, 2011년) 및 『강희연간 백두산정계와 두만강 상류 퇴책의 방향』, 중국조선사연구회 편, 『조선·한국역사 연구』, 연변대학출판사, 2013년 참조.

며, 다만 홍토수 상류 두 물줄기 가운데 어느 물을 경계로 할 것인지를 해결하지 못했을 뿐이다.”라고 평가하였다.<sup>30)</sup> 이상 두 차례 감계에 대한 나카이의 분석은 사실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셋째로 1902-1904년 이범윤의 두만강 이북 지역에서의 활동에 따른 간도문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한청조약’(1899년) 12조에 “변민이 이미 월경하여 개간을 진행했을 경우 업에 안착하여 생명·재산을 보호하도록 하며, 이후에 만약 변계를 몰래 넘는 자가 있을 경우 피차 반드시 금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조선측이 간도가 청국 영토임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중한 및 중일 간의 다음과 같은 교섭에 주목하였다. 1904년 “청국 정부가 한국측에 인원을 파견하여 감계할 것을 청했을 때, 일본 우찌다(内田) 공사가 러일전쟁이 끝난 후 다시 논하라고 하였으며, 청국 정부가 이를 승낙하였으므로, 중한 간의 감계가 끝나지 않았음을 뜻하며, 일본은 이를 이용하여 중국측과 서서히 담판하고 교섭하여 시국의 발전을 기다리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청국은 곧 분할되어 분열의 국난을 맞게 될 것이다.”는 것이었다. 이 마지막 한마디로부터 나카이가 일본 식민정책의 충실한 추종자임을 엿볼 수 있다. 얼마 후 그가 식민지 함경북도 서기관으로 임명된 것은 자연스런 일이다.<sup>31)</sup>

아래 나이토(内藤湖南)의 연구 결과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나이토는 일본 동양사학계의 교토학파 창시자로서 널리 알려져 있다. 그가 교토대학 교수로 임명되기 전에 오사카 아사히신문 논설위원으로 재직할 적이 있다. 이때 그가 참모본부와 외무성에 의해 촉탁에 임명되었으며, 두 차례나 간도문제를 조사하였으며, 두 편의 『간도문제 조사서』를 올렸다. 이 두 조사서의 결론에는 차이가 났으며, 참고문헌이 상이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1906년 1월 나이토는 참모본부에 의해 촉탁에 임명되어 간도문제를 조사하였다. 같은 해 2월 첫 번째 『간도문제조사서』를 완성하였다.<sup>32)</sup> 이 보고서에 열거한 참고문헌을 보면, 조선측 자료로서 『동국여지승람』·『국조보감』·『대한강역고』·『통문관지』·『북여요선』 등이 있었다. 또 중국측 자료로는 봉천(심양) 상봉각(翔鳳閣)에 소장되

30) 中井喜太郎, 『간도문제의 연혁』, 83·121쪽.

31) 『일본외교문서』 40권 1책, ‘간도문제일건’, 544·564쪽.

32) 名和悦子の 앞 논문, 31쪽 참조.

어 있는 만주어 백두산지도, 만주어 성경도, 송모각(崇謨閣)에 소장된 한문 당안(檔案, 공문서) 및 『길림통지』와 제소남(齊召南)의 『수도제강(水道提綱)』 등이 있었다. 또한 자료의 부족함에 대하여, 그는 조선정부에 보관된 공문서 자료와 청나라 성경장군과 길림장군에 보관된 공문서를 보지 못했으며, 백두산 지역과 두만강 본류·지류에 대한 실지답사를 하지 못했음을 기록하였다.<sup>33)</sup> 여기서 조선정부에 보관된 공문서란 1885·1887년 감계담판 자료를 말하는 듯하다. 그런 이유 때문에서인지 첫 보고서의 결론에 문제가 존재하였으며, 한중 국경사의 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

이 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리적·역사적 각도로부터 간도 귀속문제를 분석하였다. 첫째로 1712년 목극등이 압록강·두만강을 경계로 정하려 하였으나, 그와 조선 관원들이 강원을 착각하여 송화강 상류(흑석구입)<sup>34)</sup>를 두만강으로 보았다. 그 이후 조선 사람들이 이 잘못 본 송화강 상류를 따라 토석퇴와 목책을 설치하였다. 그러므로 지리적으로 볼 때, 한국의 정당한 주장은 현존하는 증거물을 근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었다.<sup>35)</sup> 즉 정계비·토석퇴와 송화강을 따라 경계로 해야 하며, 그럴 경우 간도가 조선에 속한다는 것이다.<sup>36)</sup> 그러나 앞에서 보았듯이 그가 한 가지 사실을 착각하고 있다. 즉 그는 토석퇴와 목책이 모두 흑석구에 설치되어 송화강에 이어진 줄로 알고 있지만, 실은 토석퇴를 제외한 나머지 목책 부분이 흑석구에 설치되지 않고, 흑석구로부터 두만강 상류 홍토산수까지 이어져 있었다.<sup>37)</sup> 이 점에 대해서는 두 번째 간도문제조사서에서 시정하게 된다.

둘째로 역사적 시각으로 보아, 간도가 조선에 속함을 증명할 수 있는 유리한 증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조선 국왕의 조상들이 두만강 이북에서 활동하였으며, 조상의 묘지가 그곳에 있다. 2) 명대 200년 간 두만강 동북면에 살았던 여진인들이 조선의 관작을 받아 양속 상태에 있었다. 3) 청태조 누르하치가 이곳에서 흥기한 후

33) 内藤湖南, 『간도문제조사서』(1906년),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아래 외교사료관이라고 약칭함) 소장, 『간도 판도에 관한 청한 양국 분의 일건』 부속서(内藤虎次郎 및 조사보고)에 수록됨. 외교사료관 소장, B-1-4-1-094, MT14133의 10465-10468.

34) 흑석구는 황화송구자라고도 부른다. 정계비 동쪽에 위치한 골짜기로서 길이가 약 24킬로미터이며, 그 동남안에 토퇴·석퇴가 설치되어 있다.

35) 内藤湖南, 『간도문제조사서』(1906년), MT14133, 10459-10461.

36) 内藤湖南, 『간도문제조사서』(1906년), MT14133, 10408-10409.

37) 두만강 상류에 이어진 목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이화자, 『한중국경사 연구』 제1장 및 이화자, 『강희 연간 백두산 정계와 두만강 상류 퇴책의 방향』 참조.

다만 인민을 통치하였을 뿐이며, 조청 양국은 모두 유민의 침입을 금하였으며, 이곳이 실로 중립지(中立地)였다. 4) 압록강 대안 역시 중립지이며, 왕청·애양 변문 밖의 공지가 청국인들이 금령을 어기고 개발한 곳인 만큼, 조선인이 금령을 어기고 개발한 간도도 조선 영토에 속해야 한다는 것이었다.<sup>38)</sup> 이상의 이른바 조선에 유리한 증거란 사실을 왜곡한 부분이 적지 않았지만, 외무성은 이를 반겼으며, 이로써 청측의 두만강 경계론을 반박하고자 하였다. 이로 인하여 나이토가 재차 간도문제를 조사하게 되었고 교토대학 교수로 임명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나이토는 외무성의 의해 재차 촉탁에 임명되어 간도문제를 조사하였다. 같은 해(1906년) 7월 그는 서울에 가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는 제1차 조사 시 보지 못했던 1885·1887년 감계 자료를 보았다. 거기에는 이중하의 장계, 비밀 보고서(후추별단), 양측의 담판 기록 등이 포함되었다. 서울에 머무는 동안 나카이(中井喜太郎)를 만나 서로의 생각을 교류하기도 하였다. 같은 해 8월 그는 재차 심양에 가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듬해(1907년) 교토대학에 교수로 갔으며, 계속 간도문제를 연구하였다. 그는 이미 많은 문헌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청 양측 자료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듀알드가 편찬한 『중화제국전지(中華帝國全志)』를 참고하였다. 특히 책 속에 들어있는 지도와 레이저 비망록이 그의 관심을 끌었다. 이 지도의 경우, 두만강 이북에 서에서 동으로 점선이 그려져 있었는데, 레이저(강희 『황여전람도』 편찬에 참여함)는 점선 남쪽에 조청 양국에 의해 협의된 무인지대가 존재한다고 하였다. 나이토는 이것이 조선에 유리한 증거라고 보았다.<sup>39)</sup>

근 1년간의 자료 수집과 연구를 통하여, 1907년 9월 나이토는 외무성에 두 번째 『간도문제조사서』를 올렸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1712년 백두산정계에 관하여,<sup>40)</sup> “청국은 백두산을 판도에 넣기 위하여 정계를 행했으며, 경계를 나누는 비석을 백두산 남쪽 분수령에 세웠다. 이로부터 청국인이나 조선인이나 모두 두만·압록 양

38) 內藤湖南, 『간도문제조사서』(1906년), MT14133, 10453-10463.

39) 名和悦子の 앞 논문, 34-37쪽.

40) 나이토가 참고한 1712년 정계에 관한 자료로는 정계비의 비문, 흥세대의 『백두산기』, 『동문회고』에 수록된 설책에 관한 자문, 『북여요선』에 수록된 조선 군관 이의복의 기록, 목극 등의 주문, 국왕이 올린 ‘사정계표(謝定界表)’, 『통문관지』에 실린 김지남전·김경문전, 제소남의 『수도제강』, 성경 상봉각의 만주어 장백산지도, 만주어 성경지도, 청 여도의 민간 간본(胡林翼·嚴樹森 편),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등이 포함된다.

강 본류로서 양국의 계한으로 삼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 “간도문제 발생 이후, 조선 사람들이 이른바 청사 목극등이 지정한 경계가 분계강이라고 하거나 송화강 지류라고 하는 것은 견강부회일 뿐이다. 김지남이 무산에서 경계를 넘어간 조선 사람들에 대하여 힘겹게 분별하여 설명한 것을 통해서도 무산의 두만강을 경계로 함을 알 수 있다.”<sup>41)</sup> 여하튼 1712년 목극등이 두만강을 경계로 정했음을 인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보고서와 같이 여전히 간도 소속이 조선에 유리한 증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즉 목극등 정계 이후 조선은 실제로 압록강·두만강 이남 지역을 통치하였으나, 청은 이북 지역을 공지로 두어 통치 범위에 있지 않게 하였으며, 강북 지역이 무인의 중립지 또는 간황(間荒) 상태로 있었다는 것이었다.<sup>42)</sup> 이로써 외무성의 이른바 간도의 영토소속이 미정이라는 주장에 영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로 1885년·1887년 감계에 대하여, 제1차 감계 시 이중하의 장계와 비밀보고서(추후별단) 및 1886년 조선이 토문·두만이 동일한 강입을 인정한 조회문을 인용하여, “이 문제는 단지 두만강 수원을 조사하여 정하는데 머물렀으며, 간도문제는 이미 포기되었다.”고 지적하였다.<sup>43)</sup> 1887년 제2차 감계에 대해서는 이중하의 장계에 근거하여, 양국이 홍토수·석을수 합류처 이하에서 이미 조사를 끝냈으며, 다만 합류처 이상의 두 수원 사이에서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중하가 홍토수를 주장하고 중국측 진영이 석을수를 주장한 것이라고 하였다.<sup>44)</sup> 여하튼 두 차례 감계에 대한 그의 견해는 사실에 가까웠으며, 앞에서 본 나카이의 주장, 특히 청 외무부 주장과 비슷하였다.

셋째로 1902-1904년 이범윤의 활동에 대해서는 대한제국 정부가 러시아나 일본의 힘을 빌어서 상기 지역에서 국가의 위엄을 보이려고 한 것이라고 보았다.<sup>45)</sup> 한편 그 역시 이범윤이 위 지역에서 축출된 후 청이 조선에 공동감계를 제안했을 때, 일본 우찌다 공사가 러일전쟁 이후 조사할 것을 제안하였고, 청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을 들어, 조청간의 국경 조사가 끝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중국측과 담판

41) 內藤湖南, 『간도문제조사서』(1907년) 제3, 『간도 판도에 관한 청한 양국 분의 일건』 부속서(內藤虎次郎 및 조사보고)에 수록됨. 외교사료관 소장, B-1-4-1-094, REEL NO. 1-0364, 0340-0341.

42) 內藤湖南, 『간도문제조사서』(1907년) 제3, REEL NO. 1-0364, 0342.

43) 內藤湖南, 『간도문제조사서』(1907년) 제4, REEL NO. 1-0364, 0359-0364.

44) 內藤湖南, 『간도문제조사서』(1907년) 제4, REEL NO. 1-0364, 0364-0365.

45) 名和悦子の 앞 논문, 58쪽.

하여 이익을 챙길 것을 권고하였다.<sup>46)</sup> 일본 정부의 간도 확장정책의 추종자였음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넷째로 간도 범위에 대하여, 부르하통하 서쪽에 있으며, 백두산으로부터 동쪽으로 하발령·연산(連山) 산맥을 따라 두만강까지의 구역이며, 북간도라고도 칭한다. 또 백두산 서남, 압록강 상류 이북 지역을 서간도라고 칭한다고 보았다. 한편 통감부 조사원의 이른바 두만강 이북 가야하까지를 동간도라고 칭하고, 송화강 상류 지역을 서간도라고 칭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특히 일진회와 조선 사람들이 정계비와 토문하류(송화강 상류를 가리킴)를 근거로 간도 범위가 영고탑·길림까지 이른다고 한 것은 건강부회라고 일축하였다.<sup>47)</sup> 이상 나이토가 제기한 간도 범위가 조선 사람들이 실제 개간하고 거주한 범위로서, 그 이후 ‘간도협약’(1909년)에 규정된 조선인 잡거지역의 범위와 비슷하다. 이로써 외무성이 나이토의 약간 보수적인 간도 범위를 채용했음을 알 수 있다.

### 3. 외무성의 대청 담판책략과 ‘간도협약’의 체결

외무성은 대청 담판의 전담 기구로서 나이토와 같이 촉탁을 임명하여 간도문제를 연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체 내에서도 여러 경로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예컨대 1907년 10월 30일 조선에 설치된 통감부를 통하여 이중하의 계초(啓草)·별단초(別單草)·‘변석 고증 8조(辨析考證八條)’와 두 통의 자문을 구해 왔다.<sup>48)</sup> 또 12월 3일 조선의 내각총리대신 이완용으로부터 1711·1712년 정계 시 『동문회고』 중의 왕복 자문(청 예부 자문이 포함됨)을 받아 왔다.<sup>49)</sup> 그러나 조선 궁내부에 소장된 1887년 8월 19일 조선의 자문 가운데 지도와 담판기록인 『복감도문계지공

46) 內藤湖南, 『간도문제조사서』(1907년) 제5, REEL NO. 1-0364, 0364·0366-0372.

47) 內藤湖南, 『간도문제조사서』(1907년) 제6, REEL NO. 1-0364, 0367.

48) 『통감부문서』 2, ‘간도문제에 관한 서류 1-3’, 422-423쪽. 두 통의 자문이란 광서 13(1887)년 8월 19일 국왕이 청 예부에 보낸 자문과 광서 14(1888)년 4월 20일 국왕이 북양대신 이홍장에게 보낸 자문을 말한다.

49) 『통감부문서』 2, ‘간도문제에 관한 서류 1-3’, 455쪽.

문절략(覆勘圖門界址公文節略)』이 빠져 있어서 주북경 공사로 하여금 청 외무부에 문의해 구하도록 하였다.<sup>50)</sup> 그리하여 12월 7일 일본 공사가 청 외무부 나동(那桐)·원세개와 만났을 때 이를 제기하여 두 폭의 지도(1885·1887년 감계지도)를 모사하게 되었다. 12월 27일 두 폭의 지도를 포함하여, 1887년 이중하가 진영에게 보낸 조회문, 조선 국왕이 북양대신 이홍장에게 보낸 자문 등을 베껴왔다. 특히 두 폭의 지도를 통하여, 외무성은 조선에서 말하는 이른바 토문강(황화송구자)에 아무런 명칭도 기록되지 않았으며, 조청 양국이 토문강 즉 두만강에 있어서 별 차이가 없음을 발견하였다.<sup>51)</sup>

위와 같은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를 통하여, 1907년 12월 6일 외무성은 간도 영토 귀속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즉 “우리측 조사를 통하여, 간도문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주장의 논거가 약하다.”고 하였다. 이와 동시에 주북경 공사로 하여금 경계의 기초를 정하기 위하여, 먼저 상대방 즉 청측의 논거를 수집하도록 명하였다.<sup>52)</sup> 여기서 한국정부의 주장의 논거가 약하다고 한 것은 토문·두만 2강설에 기초하여 간도가 조선에 속한다는 주장이 성립되기 어렵다는 뜻이다.

위에서처럼 간도에 관한 한국정부의 논거가 약할 경우, 일본은 마땅히 간도파출소를 철수하고 간도에 관한 교섭을 멈춰야 하겠지만, 외무성은 그렇게 하려 하지 않았다. 거꾸로 토문·두만 2강설과 나이토가 제기한 이른바 조선에 유리하다는 증거를 이용하여, 중국측과 담판을 벌임으로써 간도 지역으로 침투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고자 하였다. 이에 외무성은 12월 28일 ‘연혁상 간도소속문제가 한국측에 유리한 증거의 제요령’을 제기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나이토의 두 번째 조사서의 관점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폈다.

1) 간도(間島)는 간도(壘島)·간토(壘土)라고도 하며, 이주한 새 개간지로서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을 말한다. 애신각라씨(愛新覺羅)가 흥기한 후 두만강 좌안(북안임) 주민들을 이끌고 싸웠으나 간도 지방은 비워 두었다. 그리하여 청한 양국이 각기 인민의 이주를 금지하여 중립지대와 같았다. 프랑스 사람 레이지의 ‘비망록’에 의하면, 장책

50) 『일본외교문서』 40권 2책, ‘간도문제일건’, 936-937(141-142쪽)·943(145-147쪽)·979(171쪽).

51) 『일본외교문서』 40권 2책, ‘간도문제일건’, 984(173-175쪽)·991(187쪽)·993(188쪽)·998(190-191쪽)

52) 『일본외교문서』 40권 2책, ‘간도문제일건’, 980(172쪽).

(長柵)과 조선 국경 사이에 무인지대가 존재한다고 하므로, 두만강 좌안이 중립지대 성격을 띠었다는 증거이다.

2) 간도는 청국의 통치 밖에 있었으며 주인이 없는 중립지대이다. 이곳에서 실력을 행사한 것은 한국 관헌으로서 이는 문헌을 통해 증명된다. 애신각라씨가 간도 지방에서 민을 이끌고 싸웠을 뿐이며, 땅을 차지하는데 뜻이 없었다. 그러나 이조(李朝)의 경우 두만강 하류에서 발상하였고 옛날의 능침이 모두 두만강 밖에 있었다.

3) 두만강을 국경으로 한다는 청측 주장은 믿을 수 없으며, 강희제의 명을 받들고 국경을 조사한 레이지가 그린 지도를 보더라도 강 좌안 산맥으로서 청·한 국경을 나누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후 비록 강희제가 목극등을 파견하여 경계를 정했지만, 두만강 좌안에 대한 통치를 실시하지 않았다. 다만 하류에 훈춘청을 세웠으며, 상류는 전부 포기하여 대안에 집을 짓지 못하게 하였다.<sup>53)</sup>

4) 한국측에 가장 불리한 것이 1887년 감계 때 이중하의 조치이다. 청에서 힘으로써 석을수설을 주장하였고, 비석을 운반하여 위력으로 경계를 정하려 하였으나 아무런 협의도 맺지 못하였다. 또한 이중하의 독단적 월권행위에 대하여 한국 정부가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그 후에 한국정부가 이범윤을 간도에 파견하여 무산 아래 두만강 좌안이 한국 영토임을 주장하고 관리하고자 하였던 사실을 통해서도 증명된다.<sup>54)</sup>

같은 날 외무성은 위 요령과 레이지 비망록 및 프랑스어 지도 등을 정부 각 요해 부문 장관과 재외 대사관·영사관에 보냈다. 예컨대 총리대신·육군대신·해군대신·참모총장·군령부장·소네(曾彌) 부통감·주영대사·주안동 사무대리·이토 통감·야마가타공작(山縣公爵) 및 재외 대사관·공관(주미·프·독·이·러 대사관, 주상해·천진·한구 공사관)에 보냈다.<sup>55)</sup> 그 의도인즉 이른바 조선에 유리하다는 증거를 이용하여 중국측과 담판을 시작할 것임을 알리기 위해서였다.

며칠 후(1908년 1월 15일) 주북경 공사로부터 ‘간도 경계 비문의 토문에 대한 의견’이 도착하여, 외무성의 위 판단을 지지함을 표명하였다. 그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53) 강희 53년 두만강 이북에서 청인들이 집을 짓고 땅을 개간하는 것을 철회하도록 요구한 내용은 이화자, 『조청국경문제연구』(집문당, 2006년) 제5장 참조.

54) 『일본외교문서』 40권 2책, ‘간도문제일건’, 999(192-194쪽).

55) 『간도판도에 관한 청한 양국 분의 일건』 제5권, 외교사료관 소장, B-1-4-1-080, MT14133의 2752-2762.

같았다. 1) 1712년에 세운 정계비 중의 토문과 1711년 유지 중의 토문은 모두 두만강을 가리키며, 한국측은 이에 대해 이의가 없었다. 2) 1885년 이중하가 잘못 정해진 물줄기(흑석구를 가리킴)로서 경계를 나눌 것을 요구하였지만 청이 이를 받아드리지 않았다. 3) 이중하의 비밀 보고서(추후별단임)에 의하면, 정계비 동쪽에 있는 토석퇴·목책이 두만강 변에 이르렀다. 1886년 한국측은 두만강을 경계로 함을 인정하였고 1887년 홍토수설을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청한 경계 교섭은 1887년에 채 감정하지 못한 부분만 남았다. 4) 외무성에서 보낸 참고서에 의거할 경우, 비문의 이른바 토문이 두만이 아니라고 하는 한국측 주장이 극히 유감스러우며, 근거가 부족하다. 이를 근거로 송화강에 흘러들어가는 지류로서 경계를 나누려는 것을 결코 지지할 수 없다. 잘못 정해진 송화강 지류로서 경계를 나누더라도 어디까지를 경계로 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우며, 결국에는 홍토수 부근의 문제이다. 끝으로 주북경 공사는 간도문제 처리 대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이 문제를 이용하여 청을 견제하며, 청으로 하여금 간도 지방이 한국과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국경무역조약을 체결하여 한국인의 보호관할 시설을 확장하자는 것이었다.<sup>56)</sup> 여기서 이른바 보호관할 시설이란 영사관을 말하며, 간도에 영사관을 설치하여 조선인에 대한 영사 재판관을 실시하려는 시도였다.

4월 7일(1908년) 외무성은 주북경 공사에게 구체적인 대책으로서 ‘간도문제내훈(內訓)’을 전달하였다. 즉 한국측 주장의 근거가 약하여 두만강을 경계로 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청에 다음과 같은 요구를 제기한다. 1) 일본인과 한국인이 간도에 잡거하는 것을 허락한다. 2) 국자가(局子街)에 영사관을 설립하고 다른 중요한 곳에 분관 또는 출장소를 설립한다. 3) 한국인의 재판권은 영사관에서 행사한다. 4) ‘길장(吉長, 길림-장춘)철도’를 회령까지 연장한다. 즉 ‘길회(길림-회령)철도’를 수축할 데 대한 제의이다. 이밖에 천보산 광산 및 기타 사업에 대한 권리를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 5) 청한 양국이 두만강을 경계로 함을 인정하고, 홍토수·석을수에 대해서는 일정 양국이 사람을 파견하여 공동으로 조사한다. 위 조건에 대하여 청이 즉시 받아드리지 않을 것을 고려하여, 잠시 이전의 방침 즉 간도의 영토귀속이 정해지지 않았음을 견지하며, 적당한 시기에 위 조건을 제시한다. 또 길장철도 연장 건에 관해서는 적당한

56) 『일본외교문서』 41권 1책, ‘간도문제일건’, 422(418-420쪽).

시기에 간도문제와 분리시킨다는 등의 내용이었다.<sup>57)</sup> 이상의 내용으로부터 ‘간도협약’(1909년)의 주요내용이 거의 다 포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며칠 후 4월 11일 일본 정부는 칙령으로써 ‘통감부임시간도파출소관제(官制)’를 반포하였다. 즉 간도파출소를 통하여 청측에 계속 압력을 가함과 동시에 청 외무부와의 접촉과 담판을 통하여 위 목표를 실현하고자 하였다.<sup>58)</sup>

한편 외무성의 명으로 4월 14-28일 파출소 소장인 사이토(齋藤季治郎)가 북경에 출장하여 주북경 공사와 함께 중국측을 반박할 조회문을 작성하였다.<sup>59)</sup> 5월 10일 조회문이 완성되었으며, 그 핵심 내용인즉 토문·두만 2강설과 1887년 감계 결과의 무효를 주장하여, 청측의 두만강 경계론을 반박하는 것이었다. 그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1) 청한 양국 국경은 백두산 위에 있는 비석을 기점으로 서쪽은 압록강, 동쪽은 토문강을 경계로 한다. 토문강은 정계비·토석퇴와 연결된 물줄기이며, 두만강이 아니다. 2) 1885년 한국측은 토문강을 경계로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1887년 청측의 압력을 못 이겨, 홍토수·석을수 합류처 이하에서 두만강을 경계로 함을 동의하였다. 그러나 합류처 이상에서 서로 간에 논쟁이 존재하여 결정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1887년 감계의 결과는 전적으로 무효이다. 1888년 이후 두 나라 사이에 감계에 관한 교섭을 진행하고자 하였지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3) 1903년 한국은 이범윤을 파견하여 두만강 이북 지방을 관리하였고 청국에 조회하였다. 그러나 양국 사이 근래의 교섭을 살펴보면, 백두산 비석을 기점으로 그 동쪽 일대의 경계가 전혀 정해지지 않았다. 4) 1904년에 체결된 청한 ‘선후장정’ 제1조에 양국 경계는 백두산 위에 있는 비문을 증거로 삼는다고 하였다. 이로써 두만강이 양국 경계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비문이란 동위토문을 가리키며, 두만강이 아님을 내비쳤다. 즉 토문·두만 2강설을 주장한 것이다.

이밖에 조회문에는 역사상 간도가 조선에 속하는 유리한 증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a) 두만강 이북은 한국의 발상지이며, 내부(內附)하여 병풍과도 같으며, 옛 성지·고분 등 유적이 많다. b) 강희연간에 노예령(老爺嶺) 이남에 청국의 초소가 하나도 없었으며, 청국의 통치 밖에 있었음을 말해준다. c) 백두산에 비석을 세운 후, 청

57) 『일본외교문서』 41권 1책, ‘간도문제일건’, 446(437-439쪽).

58) 『일본외교문서』 41권 1책, ‘간도문제일건’, 446(437-439쪽).

59) 『일본외교문서』 41권 1책, ‘간도문제일건’, 446(437-439쪽)·450(441-442쪽).

인들이 두만강 이북에 집을 짓고 땅을 개간하려 할 경우, 한국인들이 항의하면 청국은 곧 철회시켰다. d) 1883년 이전 강북에 청국 지명이 없었다. 그러므로 양국이 예로부터 두만강을 경계로 한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다.<sup>60)</sup> 이상의 조희문 내용은 참모본부 측량수의 답사 결과와 나이토의 두 번째 보고서에 근거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간도에서 특권을 얻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얼마 후 또 ‘만주 5안(案)’을 추가하여, 이른바 ‘만주 6안’을 형성하였다. 이에 관한 1908년 9월 25일 일본 각의(閣議) 결정은 다음과 같았다. “한국정부 주장의 근거가 심히 약하다. 강희 정계 이후 청한 양국의 교섭 역사, 청국이 한국에 앞서 이 곳에 행정을 실시한 사실을 통하여, 두만강이 양국 국경이라고 함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지금 남은 것은 단지 두만강 원류(홍토수·석을수) 중에 어느 물줄기를 상류 경계로 삼을 것인가라는 문제이다.” 양측 관헌 사이의 충돌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기에 이번이 생겨대세에 영향을 주는 일을 막고, 만주 경영을 추진하기 위하여, 청에 다음과 같은 요구를 제기한다. 1) 두만강이 청한 양국 국경임을 인정하며, 상류 지방의 경계는 일청 양국의 공동조사위원회가 조사하여 정한다. 2) 청은 일본인과 한국인이 간도에 잡거하는 것을 인정한다. 3) 국자가 및 기타 중요한 곳에 일본 영사관 또는 분관을 설치하며, 조약에 근거하여 영사 관리의 권리를 이행한다. 4) 청은 이 곳에서 일본인과 한국인이 이미 얻은 재산 및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인정한다. 5) ‘길희철도’에 관하여 적당한 시기에 청측과 교섭한다. 6) ‘만주 5안’의 요구를 제기한다. 법고문(法庫門) 철도의 수축, 대석교·영구 철도의 철회, 무산·연대 탄광의 채굴, 경봉선(京奉線)을 봉천성 근처까지 연장하며, 안봉선(安奉線) 및 기타 철도 연선의 광산 채굴에 관한 요구를 제기한다는 등의 내용이었다.<sup>61)</sup>

이듬해(1909년) 1월 11일 일본 이주인(伊集院) 공사가 정식으로 청 외무부에 간도 문제와 ‘만주 5안’을 함께 해결할 것을 제기하였다.<sup>62)</sup> 2월 17일 양측이 진행한 제6차 담판에서 이주인 공사는 간도문제에 관한 다섯 가지 조건과 만주의 기타 현안을 받아드릴 경우, 일본은 간도 영토귀속문제에서 양보할 것이라고 말하였다.<sup>63)</sup> 일본측이

60) 『일본외교문서』 41권 1책, ‘간도문제일건’, 457(444쪽)·463(455-457쪽).

61) 『일본외교문서』 41권 1책, ‘만주에 관한 일청 협약 체결 일건’, 695(685-691쪽).

62) 『일본외교문서』 42권 1책, ‘만주에 관한 일청 협약 체결 일건’, 201(222-203쪽).

간도 영토귀속권문제를 담판 조건으로 내걸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월 4일 중일 양국은 정식으로 ‘간도협약’과 ‘만주 5안건 협약’을 맺었다.

‘간도협약의 주요 내용을 보면, 중일 양국 정부는 피차간의 성명을 통하여, 두만강이 중한 양국 국경이며, 강원(江源) 지방은 정계비로부터 석을수로 경계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또 용정촌·국자가·두도구·백초구 네 곳을 통상지로 개방하며, 일본은 영사관 또는 분관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또 두만강 이북에 조선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잡거지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지도에 표시하였다. 그 범위를 살펴보면, 동쪽이 가야하이고, 서쪽·북쪽이 하발령(老爺嶺)이며, 남쪽이 두만강이다. 또 위 잡거지의 통치권이 중국에 속하며, 조선인에 대한 민형사 안전의 심판에 있어서 일본 영사가 심판장에 가서 들을 수 있으며, 복심(覆審)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로써 장차 일본이 간도의 사법권을 간섭하게 되는 우환을 남기게 되었다. 또 일본이 ‘길회철도’를 수축할 데 대해 규정하였다. 이밖에 ‘만주 5안건 협약’을 통하여, 일본은 신법철도 수축, 경봉선 연장, 무순·연대 탄광 채굴권 등 이권을 얻었다. 이로써 근 2년간의 간도 교섭이 끝났다. 같은 해 11월 3일 통감부 간도과 출소가 용정촌에서 철수하였다. 대신 일본 영사관과 분관이 간도지역에 세워졌다.

이처럼 일본은 불법적인 통감부 간도과출소를 설립하여 중국측에 압력을 가함과 동시에, 간도의 영토귀속이 미정이라는 가 명제를 내세워 중국측과 담판을 벌였으며, 최종적으로 간도의 영토권이 중국에 속함을 인정하는 조건으로 간도에 영사관을 세우고 ‘길회철도’를 수축하며, ‘동삼성 5안건’에 대한 이권을 얻게 되었다. 이는 일본이 러일전쟁 승리의 위세를 타서 청에 대해 강권 외교를 펼친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측의 반대로 인하여 일본은 ‘만주 6안건’을 다 이룰 수 없었다. 특히 조선인 재판권 문제에 있어서 일본은 다만 네 곳의 개방지에서 영사 재판권을 얻었을 뿐, 개방지 밖에서는 중국의 처분을 따라야 했다.<sup>64)</sup> 또한 중국측을 놓고 볼 때, 국력이 약한 상황에서 일부 이권을 양보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 대신 영토권을 수호하는데 성공하였다. 특히 오록정(吳祿貞)을 대표로 하는 ‘길림변무공서’가

63) 『일본외교문서』 42권 1책, ‘만주에 관한 일청 협약 체결 일건’, 210(235-239쪽).

64) 강용범의 앞 책, 140쪽 참조.

일본의 간도과출소에 맞서 싸움으로써 일본으로 하여금 압력을 느끼게 하였고, 서구 열강의 간섭 및 만주 전역에서의 이익에 손해를 끼칠까 우려하여 간도의 영토권과 기타 문제에서 양보하게 되었다.

## 결어

러일전쟁 이후 처음으로 간도문제 조사에 착수한 것은 주조선 일본군이었다. 1905년·1906년 이들이 두 차례 보고서를 올렸는데, 첫 번째 보고서는 함경도 관찰사 조준우와 경원군수 박일헌의 주장을 수록한 내용으로서, 간도의 범위가 부르하통하와 두만강 사이에 있으며, 두만강과 구별되는 토문강이 존재하며 즉 송화강 상류를 가리키며, 이로써 경계를 나눈다고 하였다. 그럴 경우 토문강 남쪽에 위치한 간도가 조선에 속하게 되었다. 두 번째 보고서는 주조선 일본군이 직접 간도에서 정보를 수집한 내용을 수록하였으며, 간도의 범위가 해란강과 두만강 사이에 있으며, 토문강이란 해란강 상류를 가리키며 송화강 상류를 가리키지 않으며, 청과 러시아의 영토 현실로 보아도 송화강 상류가 경계가 될 수 없다고 보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란강 남쪽에 위치한 간도가 여전히 조선에 속하게 되었다. 이 보고서에는 특히 간도의 국방상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여, 그 이듬해 일본이 용정촌에 통감부 간도과출소를 세우는데 추진 역할을 했을 것이다.

1907년 참모본부에서 두 명의 측량수를 파견하여 간도과출소 관원과 함께 백두산 정계비와 그 동쪽에 있는 골짜기(흑석구·황화송구자임, 조선 사람들이 토문강이라고 칭함)를 조사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정계비터에 대한 측량 수치 및 흑석구에 대한 5만분의 1 지도의 제작 등 객관적인 결과를 남기기도 하였지만, 흑석구가 송화강 상류에 연결되지 않은 사실, 석퇴 아래 십여 킬로미터 토퇴가 이어진 사실 등을 조작하였거나 은폐한 혐의가 제기된다. 특히 흑석구가 송화강 상류에 이어지듯이 해놓은 것은 토문·두만 2강설의 기초가 되었고, 간도가 조선에 속함을 증명하기 위한 의도에서였다. 그 이후 일본측은 이 조사 결과로써 중국측의 두만강 경계론을 반박하는 증거로 삼았다.

이와 동시에 일본측은 한중 국경사에 대한 문헌연구를 진행하였다. 나카이(中井喜太郎)가 통감부에 의해 촉탁에 임명되었고, 나이토(内藤湖南)가 참모본부·외무성에 의해 촉탁에 임명되었다. 이 두 사람은 서울에서 자료를 수집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카이의 경우 간도에 잠입하여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나이토의 경우 봉천에 가서 궁궐에 소장된 지도·공문서 등을 수집하였다. 1907년 9월 이들이 각각 보고서를 올렸는데, 간도 영토귀속문제에 대한 비슷한 결론을 얻어냈다.

이 두 사람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1712년 백두산정계에 대하여, 목극등이 두만강을 경계로 정했으며, 토문·두만이 실은 같은 강이며, 조선 사람들의 이른바 분계강(부르하통하 또는 해란강을 가리킴)이 존재한다거나 토문강이 송화강 상류이며 이로써 경계를 나눈다는 것은 착오라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정계비 동쪽에 있는 골짜기(흑석구, 토문강이라고 칭함)에 대해서는 목극등이 토인들에게 속여 잘못 정한 두만강 수원이라고 보았다. 또한 1885·1887년 감계에 관해서는 조청 양국이 두만강 상류 홍토수·석을수 합류처 이하에서는 이미 조사를 끝냈으며, 다만 합류처 이상에서 협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보았다. 특히 1886년 조선측이 두만강을 경계로 함을 인정한 것은 간도 소유권을 포기한 것과 같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1902-1904년 이범윤의 활동에 따른 간도문제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청이 조선에 공동감계를 요구했을 때, 일본 우찌다 공사가 러일전쟁 이후 논의할 것을 제의하여 청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이는 조청 감계가 끝나지 않았음을 뜻하며, 일본은 이점을 이용하여 청과 담판하여 이익을 챙겨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특히 나이토의 경우 이른바 역사상 간도의 소속이 조선에 유리하다는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청을 견제하는 담판 조건으로 이용되었다. 일본 정부의 간도 확장정책을 위하여 계책을 돕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조사·연구에 근거하여, 1907년 12월 6일 외무성은 간도문제에 관한 한국 정부의 주장의 논거가 약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측을 견제하기 위한 방책으로 여전히 간도의 영토귀속이 정해지지 않았음을 주장하고, 토문·두만 2강설과 1887년 감계 결과의 무효 및 간도가 조선에 유리하다는 증거를 제시하여 청 외무부와 교섭하고 담판하였다. 1908년 4월 외무성은 ‘간도문제내훈’을 통하여 두만강 국경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간도에 영사관을 세우고 ‘길회철도’를 수축하는 등 요구를 제기할 것을 정한데 이어, 같은 해 9월 내각의 논의를 거쳐 간도에서의

특권뿐만 아니라 ‘만주 5안’을 더 추가하기로 결정하였다.

1909년 9월 중일 양국은 ‘간도협약’과 ‘만주 5안건 협약’을 맺었다. 일본은 간도 영토권이 중국에 속함을 인정하는 조건으로 간도에 영사관을 세우고 ‘길회철도’를 수축하며, ‘만주 5안건’의 이권을 챙기는 실을 거두게 되었다. 이는 일본이 러일전쟁 승리의 위세를 타서 중국에 대해 강권 외교를 펼친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측의 반대로 일본은 ‘만주 6안건’의 요구를 다 얻어내지 못하였다. 중국측을 놓고 볼 때, 당시 국력이 약한 상황에서 일부 이권을 내주는 대신 영토권을 수호하는데 성공하였다. 여기에는 오록정을 위시한 길림변무공서의 간도파출소와의 투쟁을 간과할 수 없다. 일본측으로 하여금 압력을 느끼게 하였으며, 열강의 간섭과 만주에서의 이익을 상실할까 우려하여 영토권과 기타 문제에서 양보하게 되었다.



【제2발표】

## 1930-40년대 중한 외교문제의 현안과 과제

- 蔣廷黻과 邵毓麟의 回憶錄을 중심으로 -

김 정 현\*

- I. 문제제기
- II. 1920-30년대 중국국민당 정부와 임시정부의 외교문제
- III. 1937년 이후 한중협력과 국민당 정부의 한국독립운동 지원
- IV. 임시정부 승인과 전후 독립을 위한 중한 외교문제
- V. 1930-40년대 중한 외교문제 연구의 특징, 재평가, 과제

### I. 문제제기

근현대 중한 외교문제 연구는 한동안 연구의 불모지대이기도 하였으나, 한중수교 20주년을 기념해 다시 생산되기 시작하였고,1) 이는 양국의 학술교류 증대, 자료발굴과 번역 등 새로운 변화가 연구 환경에 미친 영향이 크다.2) 이시기 한국외교사는 주

\* 동북아역사재단.

- 1) 박기수, 2014, 『최근의 한중관계사·한일관계사 연구의 쇄도와 새로운 동양사 연구 방향의 탐색』, 『역사학보』 223집, p.139; 대표적으로 유용태, 2012, 『중국의 지연된 외교와 한중관계-동아시아 지역사의 시각』, 『한중인문학연구』37;배경한, 2012,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중화민국의 외교관계(1911~1945)』, 『중국근현대사연구』562; 유용태 편, 『한중관계의 역사와 현실: 근대외교, 상호인식』, 한울출판사, 2013 등이 있다.
- 2) 최근 중국국민정부와 임시정부의 외교활동 실상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 계속 발간·발굴됨에 따라, 외교문제 연구가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편찬위원회 편,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전51권 (국사편찬위원회, 2005 ~2011) ;김영신 편역, 2011, 『장중정총통당안 중 한국 관련 자료 집역』, 선인 등

권을 상실한 국가는 국제정치적 실체로 인정될 수 없고 따라서 외교적 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해석도 있고, 그동안 독립운동사 연구가 중심이었다. 중국정부의 외교대상인 대한민국임시정부(이하 ‘임시정부’) 수립은 망명정부에 관련된 국제법의 원칙에 의거하여 이루어졌다. 임시정부는 설립 초기부터 중국은 물론 미국·러시아·국제연맹 등에 승인외교 활동을 벌이기 시작하여 중국 孫文의 護法政府和 蔣介石의 국민당 정부로부터 사실상 승인을 얻어내게 되었으며, 중국 공산당과도 연결망을 확보하였다.<sup>3)</sup> 임시정부 외무부는 ‘외교정무 및 국제교섭의 시행과 외국 거류인민의 보호사무’를 임무로 삼아, 해방을 맞아 환국할 때까지 27년 동안 그 명칭과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며 활동하였다.<sup>4)</sup>

그동안 중국 국민당 정부와 임시정부의 관계는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왔으나, 주로 ‘독립운동’ 연구가 대부분이며, 중국현대사 시각에서 중한 외교문제를 접근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한국외교사는 한국인들의 대외적 상황에 관한 기록이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점은 한국의 상황이 외부적 세력들의 영향아래 규정되었다는 사실’<sup>5)</sup>이기에, 중한외교문제는 중국 외교정책에 대한 구체적 탐구와 열강들이 규정한 역사적 상황에 대응하는 한국의 활동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더욱이 변동하는 동아시아 질서를 염두에 둘 때, 중국의 愛國主義와 중화주의적 팽창을 ‘우려’만 할 것이 아니라, 전통적 외교관계에 대한 연구를 넘어서 현대사에서 변동했던 중국의 행위방식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sup>6)</sup>, 한국의 중국현대사 연구에서 외교사 연구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sup>7)</sup>, 한국의 중국현대사연구에서 중일전쟁 시기와 국공내전시기는 매우

3) 소재지 국가의 승인을 얻었으며, 본국 정부를 대신하여 국가행위를 한 임시정부는 단순한 민족독립운동 조직의 성격을 넘어선 국제법상 합법적 망명정부로서 수립되었다고 평가된다. 李庸中, 2009,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지위와 대일항전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國際法學會論叢』, 54-1, p.109.

4) 임시정부 외무부가 27년여 동안 존립하며 활동하였지만, 1919년 수립 초기와 1940년대 重慶시기의 자료가 대부분이고 1920년대와 1930년대의 자료는 거의 없다. 주로 외무부장을 역임한 趙素昂의 文書 가운데 관련 자료가 상당수 남아 있다. 1920년대 상해시기와 1940년대 중경시기의 자료는 대부분 초대 대통령을 역임한 ‘이승만문서’와 ‘소양문서’를 통해 보존되었다. 한시준, 『해제』,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6권 외무부』, p.iii.

5) 구대열, 1995, 『한국국제관계사연구 1 - 일제시기 한반도의 국제관계』, 역사비평사, p.3.

6) 이병인, 2008, 『중국현대사연구: 연구영역의 확대·隔遠과 새로운 방향의 모색』, 『역사학보』199, pp.325-326.

7) 김수영, 2010, 『역사학의 ‘근대성’에의 도전: 새로운 역사방법론의 실험과 사회문화적 접근

중요한 시기이나, 관련 연구성과가 크게 부족하다<sup>8)</sup>는 지적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본고는 1930-40년대 중한 외교 현안과 과제에 접근하는 방법으로 중국 국민당정부 외교관을 역임한 蔣廷黻과 邵毓麟의 回憶錄<sup>9)</sup> 내용을 관련 자료와 선행 연구성과를 연관지어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존의 국민정부의 독립운동 지원이나 임시정부 중심의 독립운동사 연구와 달리, 현대사에서 변동했던 중국의 한국에 대한 외교 행위 방식을 파악하고, 더욱 자세하고 활성화된 한중외교사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부응하고자 한다.

蔣廷黻(1895-1965)은 1920-30년대 근대중국의 외교자료를 수집하고 새로운 방법과 관점으로 근대 중국외교사를 하나의 연구분야로 확립시켰으며<sup>10)</sup>, 만주사변시기 동북 위기를 만회할 방략을 연구하였다. 1930년대 蔣介石정부의 외교관을 역임하였고 1940년대 임시정부의 승인외교를 도왔다. 이 시기 蔣廷黻의 외교인식과 정책을 분석하는 것은 당시 중국정부의 대일외교와 동북정책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주제이다. 본고는 蔣介石 국민정부의 대일외교정책에 영향을 미친 蔣廷黻의 외교노선을 분석하고 그러한 정책하에 발생한 중한 외교문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邵毓麟(1909-1984)은 重慶에서 蔣介石의원장 비서실과 외교부에서 임시정부와 한인 독립운동 지원업무를 담당하였다. 중국정부내 직위가 높지는 않았지만 국민당 정부의 한국정책을 실제 집행하는 중요한 지위에 있었고, 1944년 임시정부 고문, 1949년 7월 중화민국 초대 주한특명전권대사로 임명되었다. 한국 독립운동 지도자들과 교류하면서 한국독립운동의 전모를 파악하고 있던 邵毓麟의 외교활동과 관련 연구성과를 통해 이 시기 한중 외교문제의 현안과 과제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방식의 확산』, 『역사학보』 207, p.199.

8) 김지환, 2016, 「사회적 다양성의 수용과 역사연구의 경계 및 확장」, 『역사학보』 231, p.262.

9) 蔣廷黻, 『蔣廷黻回忆录』(長沙:岳麓書社, 2003); 邵毓麟, 『使韓回憶錄』(臺北:傳記文學出版社, 1980).

10) 蔣廷黻은 1931년 근대중국 외교사의 기초자료를 정리한 『近代中國外交史資料輯要』를 편찬하였고, 외교자료를 기반으로 100년간 국제관계의 변화에 따른 중국역사의 성공과 실패의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한 『中國近代史』를 저술하였다. 蔣廷黻, 『中國近代史-自序』, 『民國叢書』第2編 75, 上海書店(商務印書館1935年版影印), p.2.

## II. 1920-30년대 중국국민당 정부와 임시정부의 외교문제

### 1. 중국 국민당 정부의 임시정부 승인과 계승성

邵毓麟의 『使韓回憶錄』은 1919년 3.1운동에서 1979년까지 60년간의 대한민국 독립운동사와 근현대 중한관계를 기록하였다.邵毓麟은 성립 초기 임시정부의 외교적 노력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이 廣州혁명정부와의 연계 시도라고 보았다.<sup>11)</sup> 1921년 1월 임시정부는 국민당이 廣州에 혁명정부를 건립한 소식을 접한 즉시 呂運亨을 파견하여 축하의 뜻을 전하였고<sup>12)</sup>, 9월 護法政府의 외교적 승인을 얻기 위해 申圭植을 사절로 파견하였으며, 孫中山은 외교적 승인요청을 승인하였다고 서술하였다.<sup>13)</sup> 廣東의 국회의원들이 1921년 11월 28일 비상국회에 한국독립승인안을 제출하였고, 11월 30일 上海에서 개최된 中華全國國民外交大會의 대표 94명도 ‘한국의 독립을 승인할 일’을 안건으로 제출하였다.<sup>14)</sup>

선행연구에서도, 孫文이 임시정부 대표를 廣州에 상주하도록 허락한 것은 사실상의 외교관계를 인정한 것이며, 임시정부 공식대표로서 박찬익을 廣州에 파견한 사실도 호법정부가 임시정부를 승인하였다는 분명한 증거가 된다.<sup>15)</sup> 이러한 외교활동 경험은 양국 정부 인사들 사이에 기억되고 계승되어 갔다<sup>16)</sup> 당시 護法정부 자체가 오래지

11) 邵毓麟, 「自序」, 『使韓回憶錄』, p.1.

12) 孫文이 대총통에 취임하기 전에 呂運亨이 廣東을 방문하여 광동군정부의 주요 인사들과 만난 사실은 일본의 재상해 총영사에 의해 일본 외무대신에게 보고되었다. 「呂運亨 廣東행의 건」(1921.1.6), 「廣東에서의 呂運亨의 행동의 건」(1921.1.17),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2권 대중국 외교활동』, p.3.

13) 대한민국임시정부 사절인 신규식은 孫中山 선생에게 5가지 청구사항(대한민국임시정부와 중국 호법정부의 상호 외교적 승인 교환, 중국군사학교에 한국학생 입교, 태평양회의에 중국대표가 한국독립을 위한 선전활동 협조, 차관, 중국내 조차지 허용을 통한 한국독립군양성 지원)를 제출하였고, 孫中山은 차관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찬동하였다 한다. 邵毓麟, 『使韓回憶錄』, pp.20-21.

14) 「廣東國會의 韓國獨立承認案」·「中國國民外交代表會의 壯舉」(1921.12.6),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2권 대중국 외교활동』, p.15.

15) 배경한, 2012, pp.10-11.

16) 이재호, 2015,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護法政府와의 외교관계 검토」, 『한국독립운동사연구』52, p.21.

않아 해체되었기 때문에 한국 임시정부에 대한 승인 역시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지만, 그렇더라도 孫文은 이후 국민당 정권에 의해 國父로 받아들여졌고, 그의 사상이 국민당의 지도적인 사상이 되었기 때문에 孫中山이 한국 독립운동에 대해 가졌던 적극적인 태도는 국민정부에 의해 계승되고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sup>17)</sup>고 하였다.

邵毓麟은 한국혁명지사들이 외교선전 방면에서 한국독립운동사에 길이 남을 중대한 공헌을 하였음은 길이 기억되어야 하며,<sup>18)</sup> 특히 임시정부가 외무부장 김규식을 파리에 파견하여 강화회의에 출석한 각국 대표를 상대로 활동을 전개한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sup>19)</sup> 또 임시정부 인사들이 중국 각계 지도자들의 개별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北洋派 인물들과도 접촉을 시도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였으며,<sup>20)</sup> 중국 군사와 정치계 인사들이 한국독립운동을 돕기 위해 한인 학생들에게 黃埔군관학교에 입학할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서술하였다.<sup>21)</sup> 선행연구는 이 시기 임시정부의 외교성과에서 대표적인 것은 한인청년들을 광둥정부와 군벌정권 산하의 여러 군사학교나 군부대에 들여보낸 것이라 평가하였다.<sup>22)</sup>

邵毓麟은 국민당 지도자들인 陳其美·宋教仁·廖仲愷·戴季陶·鄒魯·于右任·陳果夫 등이 한국혁명지사들과 긴밀한 왕래를 하였지만, 1928년 중국이 통일될 때까지 한국독립운동에 대한 중국의 지원은 개인적, 개별적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 시기 중국은 ‘한국독립운동을 지원할 마음은 있으나 그럴 여력이 없는 상태’였고,<sup>23)</sup> 초기 임

17) 오경평, 1996, 『항전시기에 한국 임시정부의 승인에 대해 중국 국민정부가 가졌던 태도에 관하여』, 『동방학지』92, p.61.

18) 邵毓麟, 『使韓回憶錄』, p.16.

19) 邵毓麟, 『使韓回憶錄』, p.18.

20) 심지어 袁世凱·趙秉鈞·張勳 등 北洋派 인물들과도 접촉을 시도하였으며, 당시 군사실력자들이던 閻錫山·吳佩孚 등과 연계를 맺기도 하였다고 한다. 邵毓麟, 『使韓回憶錄』, pp.20-21.

21) 황포군관학교 입학생 가운데 제4기에 한국학생이 비교적 많았으며, ‘조선민족혁명당’ 당수인 金若山도 제4기 출신이다. 졸업 후 중국혁명군의 하급간부로 임명된 이들 한국청년들은 북벌전쟁에 참가하여 중국혁명에 공헌하였으며, 일부는 졸업 후 동북이나 한국으로 들어가 비밀리에 독립운동에 종사한 경우도 있었다. 邵毓麟, 『使韓回憶錄』, p.24.

22) 조선청년들로 하여금 군벌정권 산하의 군사학교나 군사기관에 들어가 군사지식을 배우고 군사기술을 연마케 하는 것은 임정의 중요한 대중국 외교활동의 하나였다. 최봉춘, 1997,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중화민국정부의 관계』, 『한국민족운동사연구』16, p.230.

23) 당시 집권당이 아니었음에도 국민당 인사들은 약소민족 원조라는 혁명정신에 입각하여 한

시정부가 영도하는 독립운동은 계파와 노선투쟁으로 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취약한 상태였다고 하였다.<sup>24)</sup>

그는 廣州에서 임시정부의 외교적 노력으로 孫中山선생으로부터 얻어낸 약속이 孫文 선생의 급작스런 사망으로 당장에는 결실을 맺지 못하였으나, 북벌과 국민혁명의 성공에 발맞춰 임시정부가 청구했던 사안들은 하나 둘씩 실현되었다. 孫中山 선생의 유훈이기도 했던 약소민족에 대한 원조를 국민당이 이어 실천하였다고 서술하였다.<sup>25)</sup> 이와 관련, 선행 연구는 孫文과 호법정부의 한국독립지지의 전제조건이 되는 일본의 한국 강제병합에 대한 비판적 인식에 일정한 한계가 있었으며, 孫文의 이러한 인식과 태도들은 신규식의 廣州방문 결과가 상당한 결과를 거둔 한편 일정한 한계를 가지게 된 요인이라고 보았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호법정부의 외교적 호조와 협력관계도, 그 내면에 한중호조라는 긍정적 측면 외에 ‘중화주의와 사대주의의 교차’라고 하는 부정적 갈등적 측면이 공존한다는 것이다.<sup>26)</sup>

## 2. 북벌통일이후 국민당 정부의 대일 소극외교와 대한 비밀외교

### 1) 중국 국민당 정부의 대일 소극외교

邵毓麟은 중국의 북벌완성과 통일로 국민당정부가 임시정부의 든든한 후원자로 등장하였지만, 초기 몇 년간 상해 임시정부의 대외활동은 아쉽게도 특기할만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하였다.<sup>27)</sup> 선행연구도 중국의 내부사정과 일본요소의 작용, 임시

---

국지사들을 동정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나, 통일정부의 일관된 정책에 근거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한국독립운동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邵毓麟, 『使韓回憶錄』, pp.19-20.

24) 邵毓麟은 임시정부 내부의 계파는 대부분 지역성에 근거한 同鄉 관념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한국혁명진영 내부의 당파는 반공성향의 한국독립당, 친공적인 조선민족혁명당으로 분열되었고, 무정부주의, 공산주의 등 노선을 둘러싸고 더욱 격렬한 투쟁이 전개되었다. 독립에 앞서 자치실현을 주장한 ‘온화파’와 완전한 독립쟁취를 주장한 ‘강경파’ 간의 노선대립, ‘중국관내파’와 ‘만주파’, ‘불평파’와 ‘간부파’의 갈등과 대립 등, 각양각색의 당파 간 투쟁이 보는 사람의 눈을 어지럽게 할 정도였다고 한다. 邵毓麟, 『使韓回憶錄』, p.16.

25) 邵毓麟, 『使韓回憶錄』, p.21.

26) 배경한, 2012. 앞글.

27) 邵毓麟, 『使韓回憶錄』, p.22.

정부 대중국외교의 소홀함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1920년대부터 30년대 초반까지의 한중관계는 소강상태에 있었다고 하였다.<sup>28)</sup> 이 시기 중국 국민당정부와 임시정부의 외교문제는 국민당정부의 대일 정책에 좌우되었으며, 蔣廷黻은 蔣介石의 대일외교 정책에 영향을 미친 인물의 하나이다.

蔣廷黻은 蔣介石의 요청으로 관직에 들어가기 전 대학에서 중국근대외교사를 연구하였고, 일본의 동북침략에 대한 대응방법을 모색하였다. 1920년대 초 南開대학 사학과에 부임한 蔣廷黻은 중국근대외교사 연구를 개척하였다. 당시 외교부 공문서가 체계적으로 발간되지 않았고, 도서관 설비도 미비한 등 열악한 상황에서 蔣廷黻은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기본 자료를 편찬하고, 중국 자료에 근거한 외교사를 서술하여 중국 외교사 연구의 발전에 공헌하였다.<sup>29)</sup> 1929년 淸華대학 역사학부 주임교수가 된 蔣廷黻은 북경 외교문서와 새 사료를 다수 발굴하였고 외교문헌 연구의 전문가가 되었다.<sup>30)</sup> 그는 北平도서관의 미출판 사료, 古宮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軍機處 자료 등 여러 기관과 개인의 도움을 받아, 대외교섭 공문과 비망록, 중앙정부가 외교관에게 내린 훈령, 외교관의 중앙정부 보고, 외교관의 편지일기 등 새 사료를 다수 발굴하였다.<sup>31)</sup> 蔣廷黻이 각 방면 인사들을 방문하여 수집한 대량의 자료를 편찬한 『近代中國外交史資料輯要』는 이후 중국 근대외교사 연구의 기본 자료집이 되었다.

蔣廷黻은 국제 평화협력과 경제호혜를 표방한 Carlton J.H. Hayes의 국제주의 이념을 받아들여, 대항을 피하고 상호협력을 강조하는 외교사상을 가졌다.<sup>32)</sup> 그는 초기 국민정부의 ‘혁명외교’ 정책이 族國主義적 편협한 추세를 띠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동북의 외환사를 연구한 이후 蔣廷黻은 ‘동북문제’가 중국 최대 외교문제라고 보았다.<sup>33)</sup>

28) 1921년 孫文이 영도하는 혁명정부로부터 ‘사실상 승인’과 장래 지원을 약속받은 것은 임시정부가 펼친 대중국외교의 성과였지만, 이후 중국의 내부사정과 맞물려 임정의 대중국외교는 소홀함이 없지 않았다. 1930년과 1931년 한국독립당과 임정이 국민당에 청원을 제출하였지만 주로 한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것으로, 한국독립운동에 대한 실제적 지원요청은 아니었다. 김영신, 2016, 「해방 전 蔣介石의 한국인식」, 『전북사학』48, p.257.

29) 蔣廷黻은 컬럼비아대학에서 공부하면서, 중국외교 서적 대부분이 외국인 시각으로 서술되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중국외교사를 연구하게 되었다고 한다. 蔣廷黻, 『近代中國外交史資料輯要 自序』, 『民國叢書』第2編 27, 上海書店(商務印書館1931年版影印), pp.1-3.

30) 蔣廷黻, 『蔣廷黻回忆录』, pp.100-102.

31) 蔣廷黻, 「近代中國外交史資料輯要 自序」, 『蔣廷黻回忆录』, p.3.

32) 蔡乐芬, 金富軍, 「蔣廷黻外交思想探析」, 『清华大学学报』(哲學社會科學版) 20, 2005-1. p.40.

33) 蔣廷黻, 「最近三百年东北外患史」, 『中国近代史论集』, 益世書局, 1974; 蔣廷黻, 『蔣廷黻回

그는 1927년 봄 남경국민정부 외교부장 王正廷을 방문하여, 동북문제가 최대의 ‘外交 문제’이므로 조속히 대비할 것을 건의하였다.<sup>34)</sup> 蔣廷黻은 제국주의 타도를 위한 충돌은 피해야 하며, 중국변방 지역과 중국본토를 중국과 외국의 정치 경제관계와 같은 특수한 것으로 보았다.<sup>35)</sup> 蔣廷黻은 동북문제의 난점은 일본이지만, 일본이 강하므로 타도 제국주의를 외치는 ‘혁명외교’는 안되며, 일본과 우호관계 유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동북문제를 잘 처리하려면 적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한 그는 1927 여름 일본 동경에서 중국과 평화유지를 외교방침으로 삼은 시데하라(幣原喜重郎) 외상을 만나기도 하였다.<sup>36)</sup> 蔣廷黻은 근대 식민주의와 제국주의 관계를 적대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전화위복으로 이용하면 적을 동지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세계역사의 발전추세와 중국이 낙후하게 된 객관적 현실과 중국의 우세한 잠재 역량을 잘 아는 것이, 열강의 중국에 대한 약육강식을 억제하고, 중국이 이성적 민족주의로 나아가는데 이익이 된다고 인식하였다.

그는 1931년 9월 만주사변은 일본 군인들의 행위이고 일본정부는 사태를 확대할 의사가 없다고 여겼다. 일본이 동북을 점령할수록 많은 장애에 부딪힐 것이고, 동북3성 통치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본 蔣廷黻은 경제발전이 더 우선이므로 전쟁은 피해야 하고, 장기적으로 경제발전을 통해 중국이 통일국가를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sup>37)</sup> 그는 중국이 약하고 일본이 강한 것은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므로, 만주사변에 대한 대책은 시간을 쟁취하는 것이라 믿었으며, 전면전쟁을 요구하는 주장에 반대하고 이를 저지하고자 노력하였다. 중국은 일본보다 우수한 장비로 훈련된 육·해·공군이 부족하므로 외부의 지원 없이 항전을 계속할 수 없다. 국제사회는 일본과 전쟁하는 중국이 통일하는 것을 절대 돕지 않을 것이고, 준비도 동맹국도 없이 일본과 전쟁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고 하였다.<sup>38)</sup> 그에게 主戰派는 1894년 청일전쟁 당시

忆录』, p.117.

34) 蔣廷黻, 『蔣廷黻选集(五)』, 台湾传记文学出版社, 1978年版, p.959.

35) 张玉龙 钟昌火, 『寻求危机的转圜: 蔣廷黻与东北问题述论』, 『東北史地』, 2009年 第2期, pp.82-83.

36) 하지만 시데하라의 중국내정 불간섭외교는 일본 군부의 제지를 받았고, 이후 등장한 다나카 내각은 동북3성에 대한 침략확장 행동강령을 제정하였다. 蔡乐芬, 金富軍, 『蔣廷黻外交思想探析』, 『清华大学学报』20, 2005-1. pp.40-41.

37) 蔣廷黻, 『蔣廷黻回忆录』, pp.137-138.

38) 蔣廷黻, 『蔣廷黻回忆录』, pp.142-143.

일본의 국력이 약하다고 인식하고 맹목적으로 전쟁을 벌인 전통 사대부의 전형인 반면, 主和派가 국정을 이해하는 진정한 영웅이었다. 그는 전쟁은 일종의 병과 같은데, 아직 그것을 치료할 약을 발명하지 못하였다고도 하였다.<sup>39)</sup>

만주사변을 동북지역의 특수한 지방성 사건으로 간주한 蔣廷黻은, 외교적 노력으로 평화유지를 위한 환경을 건설하는 것이 곤경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선택이라고 주장하였다.<sup>40)</sup> 蔣廷黻은 ‘쌍방 균등이익 획득’이라는 ‘특수화’ 방식을 세웠다. ‘중일양국이 동북경제에서 공존공영을 취하며, 일본만의 군사·정치 특권은 포기한다’는 원칙 아래, ‘일본의 동북 주둔군 및 경찰의 완전철폐, 남만철도의 중일양국 공동관리’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는 동북3성의 민족주의가 고양되어 있고, 일본이 동북지역을 멸망시킬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방법에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蔣廷黻은 당시 主戰론자들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을 보며 좌경일수록 호전적이 되는데, 이는 전쟁방지와 평화옹호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며, 개혁과 건설계획을 통해 主戰 정서를 대체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胡適·傅斯年 등과 더불어 국난극복을 위한 학술구국에 노력하였다. 잡지 『獨立評論』에 ‘급박한 대일작전은 실패할 수 있다. 현대 전쟁은 장기준비와 전국총동원이 필요하다’는 글을 발표하였다.<sup>41)</sup> 蔣廷黻은 정부에 장기저항 계획을 건의하였고, 민족주의 감정에 근거한 ‘단기내 일본과 전쟁으로 해결하기보다 장기-5년 혹은 10년-저항의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42)</sup> 그의 주장은 당시 민족주의와 애국주의 정서가 고조된 상황에서 비판을 받기도 하였지만, 『獨立評論』과 『大公報』 등에 실린 그의 글은 蔣介石의 관심을 끌었다. 1933년 여름 蔣介石을 만난 蔣廷黻은 ‘조만간 중일간 일전은 피하기 어렵다. 중국의 주요한 대책은 준비를 위해 시간을 쟁취하는 것’이라고 건의하였다. 蔣廷黻은 이러한 행동이 연구를 버리고 정치를 하려던 것이 아니라, 蔣介石이 중국 외교방면에서 자신의 정책과 관점을 이해해주기를 바랐기 때문이었다고 하였다.<sup>43)</sup> 蔣廷黻은 동북위기를 만회하고자 노력하였지만, 기대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일본이 만주국 수립에 이어

39) 蔡乐芬, 金富軍, 『蔣廷黻外交思想探析』, 『清华大学学报(哲學社會科學版)』20, 2005-1. p.48.

40) 王金静, 『从蔣廷黻《中国近代史》看其‘韬光养晦’策略』, 『井冈山学院学报』29-11. 2008. p.98.

41) 蔣廷黻, 『蔣廷黻回忆录』, p.148.

42) 李雲漢, 『抗戰前中國知識分子的救國運動-民國20年至26年』, 林能士, 胡平生合編『中國現代史論文選輯』臺北市：南京出版公司, 1978. pp.273~275.

43) 蔣廷黻, 『蔣廷黻回忆录』, p.152.

침략을 확대하면서 동북에 이어 화북지역 분리를 추진하였고, 중국인의 전쟁정서가 날로 높아지는 시기였기 때문이다.<sup>44)</sup>

국민당 정부가 蔣廷黻의 주장과 같은 일본과 충돌을 피하는 외교정책을 펼치고 있을 때, 1931년 동북지역에서 일본의 대륙정책과 중국의 갈등, 한인 이민에 대한 중국의 박해와 갈등이 복합적으로 드러난 萬寶山사건이 발생하였다. 국민당 정부는 이를 국지화시키고자 하였지만 萬寶山사건에 이어 조선에서 화교배척 사건 등 한중 국민들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였다. 임시정부는 외무부장 趙素昂 등이 나서 화교배척은 일본 제국주의 계략임을 알리고 중국관민들을 무마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sup>45)</sup> 蔣介石은 萬寶山사건 관련보고를 받은 1931년 7월 3일 ‘일본인들의 만행’을 규탄하는 정도였지만, 漢城에서 폭동이 일어나 화교 수천명이 피난중이라는 후속 보고를 받고, 일본에 분개하면서도 일본의 의도적인 선동에 쉽사리 넘어간 ‘韓人들의 우매함’을 더욱 개탄하였다. 그리고 7월 23일 이같은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攘外’보다도 ‘案內’가 더 중요함을 강조하여 정책중심을 여전히 對日보다는 反共에 둘 것임을 발표하였다. 관련 연구로는 국민당정부의 대일 부저항 정책이 萬寶山사건에 대한 대응에서도 그대로 드러난 것,<sup>46)</sup> 만주사변 전후 한인들이 받은 피해를 밝힌 연구,<sup>47)</sup> 만보산과 만주사변 시기의 한중관계와 민족문제를 다룬 연구<sup>48)</sup> 등이 있다. 萬

44) 일본관동군이 본국의 중립지구에 대한 지시를 무시하고 북경지역으로 쳐들어오자, 蔣廷黻은 중일 쌍방의 평화유지 노력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바뀌었고, 동료 교수들과 함께 학생들이 작전을 준비할 수 있도록 강의내용도 바꾸었다고 한다. 蔣廷黻, 『蔣廷黻回憶錄』, p.144.

45) 임시정부 외무부장을 비롯한 각 단체들이『한국에서 발생한 화교박해사건에 대한 한인들의 성명』통해, “한국경내에서 발생한 華僑慘案의 근본적 원인은 일본 제국주의의 오도와 선동에 있다. 중국관민들은 일제의 간사한 계략을 통찰해주시기 바란다”며, 사건을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한시준, 「해제」,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2권 대중국 외교활동』, p.x.

46) 김영신, 2016, p.255.

47) 1932년 5월 이전까지 한인 사망자 140명, 부상자 226명, 부녀자 강간 48건, 가옥 방화 76건, 가옥 파괴 98건, 가옥 약탈 1,121건, 종자 씨앗 방화나 약탈 350건, 일본 영사관의 보호를 받은 한인은 35,000명에 달했다. 이같이 엄청난 한인 피해는 만주사변이라는 정치적 대변혁에 가리워져 주목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구대열, 1992, 「1930년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 梨花女子大學校法政大學『社會科學論集』 권12호; 손춘일, 2001, 「滿洲事變 前後 在滿朝鮮人 問題와 그들의 困境」, 『정신문화연구』24-2, p.155.

48) 박정현, 2014, 「만주사변 이후 화교배척과 조선 민족주의 운동」, 『중국근현대사연구』 63;

寶山사건의 외교문제를 다룬 연구로는, 萬寶山사건의 직접 배경이 되는 재만 한인의 국적문제를 검토하면서 외교 공식문서를 통해 중일 양국정부의 인식과 태도를 살펴본 연구<sup>49)</sup> 협력과 저항의 사이에서 ‘국경 혹은 경계를 넘나드는’ 재만한인을 일국사의 틀을 전복할 수 있는 연구대상으로 삼고, 기존 민족주의적 시각에 가려져 제대로 주목받지 못했던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양국의 외교행위를 각급 외교담당자의 입장과 그 변화, 자율성 및 중앙외교 방침의 실행과정 등을 분석한 연구<sup>50)</sup> 등이 있다.

## 2) 국민당 정부와 임시정부의 비밀외교

邵毓麟은 한인과 중국인 사이에 발생한 ‘萬寶山事件’의 배경을 중한 두 나라 인민의 감정을 이간질시키고자 하는 일본군벌의 간악한 술책이 효과를 발휘한 것<sup>51)</sup>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국민정부 성립이후 임시정부와 한국독립운동에 대한 원조가 점차 조직적·계획적으로 변해갔지만, 일본의 압력을 피하기 위해 비밀리에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였다.<sup>52)</sup> 1930년대에 들어 국민당정부임시정부와 임시정부의 외교활동이 활발해졌다. 임시정부 인사들이 1930년 1월 한국독립당을 창당하자, 중국 국민당 각 黨部는 축하전문을 보내 한국독립운동 원조의 뜻을 천명하였다.<sup>53)</sup> 1932년 1월

---

孫承會, 2003, 『萬寶山事件과 中國共產黨』, 『동양사학연구』83; 손승희, 2004, 『만주사변 전야 만주한인의 국적문제와 중국, 일본의 대응』, 『中國史研究』 31; 이재령, 2004, 『남경국민정부시기 중국의 한국인식- 만보산사건에 관한 여론동향을 중심으로』, 『중국사연구』31집; 최봉룡, 2011, 『만주국의 국적법을 둘러싼 딜레마 : 조선인의 ‘이중국적’ 문제』, 『한국민족운동사연구』69; 황영원, 2016, 『만주국의 조선 주재 영사관 설립과 교민 관리에 대한 일고찰』, 『동북아역사논총』52호 등.

49) 손승희, 2007, 『지역 너머의 만보산사건(萬寶山事件)(1931년)-사건을 둘러싼 실제적 외교행위 규명을 중심으로』, 『人文研究』53.

50) 孫承會, 2009, 『근대 한중관계사의 새로운 시각 모색 : 萬寶山事件 연구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역사학보』202.

51) 일본은 대륙침략정책의 일환으로 수백만에 이르는 한인들을 우리의 동북지방으로 이주시켰다. 일본당국의 압박으로 장작림 지방정권은 동북 한인의 독립운동을 억압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동북 이주 한인 가운데 일본의 교사를 받은 친일분자들은 호가호위하며 우리 양민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공권력을 침해하기까지 하였다. 그 결과 동북에 거주하고 있던 선량한 한인 이주자들과 우리 지방관 및 토착민들과의 관계가 날로 악화되었다. ‘萬寶山事件’이 발생하게 된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 邵毓麟, 『使韓回憶錄』, p.22.

52) 邵毓麟, 『使韓回憶錄』, p.28.

53) 『漢口特別市黨部の 조선독립운동원조 통전』(외무대신, 1930. 2. 20), 『조선독립운동 후원에

28일 일제가 上海를 침공하자 다수의 한인이 중국 第18路軍 및 第5軍에 참여하여 활동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萬寶山사건으로 악화된 중국민의 인식을 개선시키는데 일조하였고, 이를 계기로 제19로군·제5로군 및 東北義勇軍後援會 등이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였다.<sup>54)</sup>

특히 1932년 4월 홍구공원 사건은 萬寶山 사건으로 한중 두 민족간 생겼던 감정의 골을 푸는 계기가 되었고, 중국 국민정부와 한국 임시정부간의 협력이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가능한 한 일본과의 대립을 피하기 위해 중국정부가 전면에 나서지 않고 당과 군사당국이 주도하는 비밀원조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邵毓麟은 당을 대표하여 임시정부를 지원한 곳은 중앙조직부였고, 군에서는 정치작전과 정보방면의 부서들이 담당하였으며, 원조는 세가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고 한다.<sup>55)</sup> 첫째는 한국독립지사들의 항일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임시정부의 단결과 합작을 촉진시키려는 정치적 노력과 재정원조가 주를 이루었고, 장래 일본제국주의와 최후의 결전을 벌일 때 중한 쌍방이 협조할 여력을 갖추게 하는데 중점이 두어졌다고 한다.<sup>56)</sup> 두 번째는 비밀리에 한국청년들을 훈련시켜 군사간부를 양성하는 것으로, 邵毓麟은 후일 ‘조선의용대’와 ‘한국광복군’이 되는 1932년 남경의 ‘조선혁명간부학교’와 중앙군관학교 낙양분교 두 계열의 군사학교로 나누어 서술하였다.<sup>57)</sup> 세 번째는 정보공작이며, 대일정보 수집공작에 필요한 모든 훈련과 필요경비는 중국이 전부 부담하였고, 기밀사항인지라 구체적인 액수는 아직까지도 밝혀진 바 없다고 하였다. 중국 정보당국이 제공한 자금이 한국독립운동 진영에 매우 중요한 재원이 되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비밀리에 지원한 자금 분배문제가 임시정부 내부에 또 다른 분쟁을 촉발시킨 요인이 되었다는

관한 南京市黨部の 선언』(외무대신, 1930. 2. 24) 등,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2권 대중국 외교활동』, pp.27-29.

54) 한상도, 『해제』,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5권 중국의 인식』, p.iv.

55) 중앙조직부장을 맡았던 陳果夫·陳立夫 두 선생의 숙부이자 국민당 원로인 陳其美 선생은 생전에 한국독립운동 지사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 다. 邵毓麟, 『使韓回憶錄』, p.26.

56) 邵毓麟, 『使韓回憶錄』, p.27.

57) 중국 군사당국과 조선민족혁명당 영수인 김약산이 1932년 10월 南京 湯山에서 ‘조선혁명간부학교’라고 불린 훈련반에서 교육한 학생들의 상당수는 후일 ‘조선의용대’의 근간이 되었다. 한편 1932년 12월 중국당국과 김구는 함께 중앙군관학교 낙양분교 군관훈련반을 개설하였고, 남경중앙군사학교에도 특별반이 개설되었다. 김구와 중국국민당이 주도 훈련반 출신은 후일 韓國光復軍의 근간이 되었다. 邵毓麟, 『使韓回憶錄』, p.25.

점은 아쉽다고 지적하였다.<sup>58)</sup> 또 한국측 군사인재들이 한국독립운동 진영 내부당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하였는데, 邵毓麟은 이점은 중국 당국도 깊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하였다.<sup>59)</sup>

邵毓麟은 한국독립운동 내부 갈등의 배경인물로 김약산을 지목하였다. 김약산이 ‘조선의열단’ 조직을 기초로 황포군관학교동창회와 일부 復興社 단원의 지지를 등에 업고 한국혁명진영 내부의 정치투쟁을 격화시켰으며, ‘한국대일전선통일동맹’을 조직하여 사사건건 임시정부의 시책을 반대하여 곤경에 처하게 하였다고 한다.<sup>60)</sup> 그런데 선행연구에 따르면, 蔣介石이 조직부와 부흥사 두 계통으로 지원한 것이야말로 한국독립운동계열 분열의 원인이라고 한다. 당시 蔣介石은 두갈래 지원으로 인해 예상되는 한국 당파의 분열과 갈등도 자신의 역량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리라 여겼다고 한다. 하지만 중국 국민당 정부내 두 조직이 동시에 한국독립운동에 원조를 제공하면서 상호교류와 정보교환이 거의 없었고, 두 계통이 자기 조직에 유리한 방향으로 활동상황과 계획을 보고하여 결국 蔣介石의 사실판단과 인식에 혼선을 빚게 하였다는 것이다.<sup>61)</sup>

이시기 蔣廷黻의 외교활동을 보면, 蔣介石의 국민당 정부는 대한 비밀외교에서 뿐 아니라, 소련과의 외교에서도 혼선을 빚었다. 蔣介石은 1934년 蔣廷黻에게 자신의 개인 대리인 자격으로 소련에 가서 중국이 일본에 대항하는데 원조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타진하도록 하였다. 蔣廷黻은 모스크바에서 중국 국민당정부는 소련의 원조를 희망하고 있으나, 국내 반공정책은 계속할 것임을 전하였다. 소련측은 국민정부와 친선 관계에 반공은 장애물이 되지 않으며 蔣介石이 중국의 유일한 지도자임을 확인하여 주었다. 이후 蔣廷黻은 1936년 10월 중·소관계 개선이라는 사명을 부여받고 주 소련 대사로 임명되었다. 1936년 12월 蔣介石이 ‘내전정지와 일치항일’을 요구하는 張學良에 의해 西安에 억류되는 사건이 벌어지고, 일본과 전쟁이 불가피해졌다. 당시

58) 邵毓麟, 『使韓回憶錄』, p.27.

59) 邵毓麟, 『使韓回憶錄』, p.25.

60) 邵毓麟, 『使韓回憶錄』, p.26.

61) 蔣介石이 조직부를 통해 임정계열을 지원한 것은 이전부터 한국독립운동가들과 왕래가 있던 조직부장 陳果夫를 통한 지원이 편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역행사를 통해 김약산을 지원한 것은 그와 황포군관학교 동기인 역행사 초대서기 滕傑이 적극 지원을 청하였고, 일본을 의식하여 비밀조직인 역행사를 통해 지원한 것이다. 김영신, 2016, pp.258-259.

소련은 중국이 일본과 전쟁을 벌이는데 직접 참가할 의사가 없었지만, 南京政府의 유력자들이 소련이 중국의 항일전에 참전하리라는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蔣廷黻은 이들의 착각을 일소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이들과 대립하는 등 혼선이 빚어진 것이다.<sup>62)</sup>

### Ⅲ. 1937년 이후 한중협력과 국민당 정부의 한국독립운동 지원

#### 1. 임시정부의 정치적 단결을 위한 활동

1937년 7월 7일 중일전쟁의 발발과 항일전선의 확대는 중한 관계가 ‘한·중 연대’ ‘공동항일’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다. 邵毓麟은 전면적인 항일전쟁 개시 이후 중국정부는 대한원조를 공개적으로 진행하면서, 한국독립운동 진영 내 각 당파의 단결과 합작을 요구하고 이를 위한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邵毓麟은 이전까지 임시정부를 반대했던 당파라도 독립 쟁취를 위해서는 모든 역량을 임시정부에 집중시켜야 함이 시대적 사명이라고 하였다. 蔣介石은 한국독립운동 진영의 불일치는 각 당파의 사상적 차이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sup>63)</sup>

임시정부는 1937년 8월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를 조직하여 정부의 기초를 확대하고자 하였지만 전세의 악화로 중국정부 각 기관을 따라 서쪽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邵毓麟은 임시정부의 이동에 대한 국민당정부의 보호와 안정을 강조하면서, 임시정부

62) 1937년 7월 7일 중일전쟁 발발 후, 8월 21일에 중소불가침협정이, 9월에는 국공합작이 체결되었다. 소련주재 중국대사인 蔣廷黻에게는 소련의 중국 원조를 받아내리는 임무가 부여되었다. 그런데 소련제 무기와 장비 구입을 위해 모스크바를 방문한 국민정부 인사가 귀국 후 소련이 곧 참전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이를 믿은 남경정부 관료들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죄로 蔣廷黻을 고발하여, 1938년 2월 모스크바로부터 소환되었다. 蔣廷黻, 『蔣廷黻回忆录』, p.3.

63) 蔣介石은 1938년 10월 당시 중앙당부비서장으로 한국관련 업무의 책임을 맡게 된 朱家驊에게 단결촉진에 주안점을 둔 한국혁명운동 보조업무를 부여하였다. 邵毓麟은 임시정부와 교섭창구인 중국국민당 조직부장이 1938년 陳果夫에서 朱家驊로 바뀌었지만, 임시정부에 대한 국민당의 적극적인 지원은 변함이 없었다고 한다. 邵毓麟, 『使韓回憶錄』, p.27.

가 漢口에서 長沙로 이동할 때 호남성정부, 다시 廣州로 이동할 때는 광둥성정부 주석 吳鐵城의 보호를 받았으며, 柳州를 거쳐 1938년말 사천성 綦江으로 이동하여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하였다. 한편 중국 군대를 따라 漢口로 이동한 조선민족혁명당 영수 김약산 일파는 1937년 12월 또 다른 한인 좌익인사들의 조직인 ‘조선민족해방운동자연맹’·‘조선혁명자동맹’과 연합하여 ‘조선민족전선연맹’을 결성하였고, 이후에도 김약산 일파는 대한민국임시정부 계열의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와 사사건건 충돌하였다고 지적하였다.<sup>64)</sup>

邵毓麟 자신은 1937년 5월 주일본 요코하마 총영사로 파견되어 일본의 중국 침략을 저지하는 외교(阻滯外交)를 추진하였으나, 1938년 1월 일본정부가 ‘국민정부를 상대하지 않는다’는 近衛성명을 발표한 이후, 漢口로 철수하였다. 邵毓麟은 漢口에서 ‘대적선전연구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면서 조선민족혁명당의 김약산과 접촉하였으며, 1938년 김약산이 성립한 조선의용대 활동을 자세히 알 수 있었다고 하였다.<sup>65)</sup> 그는 漢口에 머물 때 『大公報』의 張季鸞<sup>66)</sup> 주필이 자신에게 한국독립운동을 위해 분투할 것을 당부하며, 장래 독립된 한국의 첫 번째 중국대사가 되라는 격려를 하였는데,<sup>67)</sup> 1939년 重慶에서 국민정부 군사위원회 위원장 시종실 비서가 되면서 한국독립운동 진영과 본격적으로 관계를 맺게 되었다고 한다.<sup>68)</sup>

64) 邵毓麟, 『使韓回憶錄』, p.29.

65) 전체대원이 약 3백 명 정도였던 조선의용대원의 절대 다수는 조선민족혁명당원이었고,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던 일본인 반전 좌익인사인 鹿地亘·青山和夫 등과 공동항일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원이 적어 실제 군사작전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군사위원회 정치부에 예속되어, 대일심리작전, 일본군포로 심문, 대일정보 수집 및 일본군 내 한적 사병의 귀순독려 등 정치공작을 맡았다. 邵毓麟은 조선의용대가 맡았던 일과 이후 한국전쟁 때 중국정부가 동원한 군대의 역할이 비슷하다고 하였다. 邵毓麟, 『使韓回憶錄』, p.33.

66) 張季鸞은 중국혁명당인으로 일찍이 상해에서 한인과 교류하였고, 한국반일독립운동의 주요 결사인 新亞同濟社의 성원이었다. 당시 張季鸞의 『大公報』는 중한관계 및 한국독립운동의 소식은 1926년 12편, 1927년 41편, 1928년 59편, 1929년 36편, 1930년 23편, 1931년 148편 등 다른 언론의 보도숫자 보다 많았다. 邵毓麟, 『使韓回憶錄』, p.6.

67) 張季鸞이 1938년 초 邵毓麟을 蔣介石에 소개해 蔣介石이 그를 정보위원회 國際組 組長에 임명하였고, 張季鸞은 항전 필승과 승리후 한국이 반드시 독립할 것을 믿었으며, 邵毓麟에게 신규식이 쓴 『한국혼』을 주면서 신생독립국 한국대사로 가는 것이 패전국 일본에 대사로 가는 것보다 더욱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고 권하였다. 邵毓麟, 『使韓回憶錄』, p.41.

68) 邵毓麟은 자신이 한국과 관계를 맺게 된 배경은 네가지라고 한다. 첫째, 일본유학시기 한국동학과 교류하면서 일본제국주의 압박하의 약소민족이라는 동병상련의 반일정서를 갖게

1939년 1월 邵毓麟은 김구와 김약산에게 진정으로 합작하고 함께 대일항전에 전력을 다해 줄 것을 권고하였다. 蔣介石도 1939년 3월 朱家驊에게 재차 한국내부의 통일방법을 찾아보라는 지시를 하였고, 朱家驊의 적극적인 권고에 따라 임시정부가 1939년 8월 27일 ‘7당통일회의’를 개최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다. 이 결과에 대해 중국당국은 한국혁명진영의 진정한 합작이 불가능한 가장 큰 원인은 조직문제보다도 사상문제에 있다고 분석하였다.<sup>69)</sup> 반면 많은 선행연구는 국민당 정부 지원노선의 혼선과 경쟁이 한국측 독립운동의 분열의 배경이 되었음을 지적하였으며, 邵毓麟도 국민당정부의 정보공작의 계통이 다른 탓에 한국혁명진영 내부의 분규도 덩달아 격화되는 원치 않는 결과가 빚어지게 되었다고 하였다.<sup>70)</sup>

邵毓麟은 1940년 외교부 情報司長이 되어 국민당 정부의 對韓정책 업무에 본격적으로 참여하였다. 그에 의하면 당시 중한의 정보합작은 당과 군 두 갈래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중앙당부 조사통계국은 임시정부를, 군사위원회 조사통계국은 조선민족혁명당을 대상으로 대일정보공작을 진행하였다. 한편 다른 秘線이었던 군부는 정치작전과 정보방면의 책임자인 賀衷寒·鄧文儀·滕傑·康澤·戴笠 등이 조선민족혁명당과 조선의용대 책임자인 김약산과 황포군관학교 동문이라는 인연으로 연결되어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이에 더하여 군사위원회 산하의 국제문제연구소가 대일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한 필요에서 동시에 한국독립당 및 조선민족혁명당과 연계를 맺은 것도 한국혁명진영 내부의 분쟁을 심화시킨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한다. 당시 대일정보공작을 둘러싸고 국민당 정부 측의 계통이 엇갈린데다 공산당까지 합세하

---

된 것. 둘째, 1934년 四川대학 경제학과 교수 역임시, 한국독립운동 인사인 金奎植과 교류한 것, 셋째, 大公報 주필 張季鸞에게 받은 영향, 넷째 孫中山의 약소민족을 돕는 三民主義 사상이다. 邵毓麟, 『使韓回憶錄』, p.4. 邵毓麟, 『使韓回憶錄』, pp.1-4.

69) 당시 한국문제에 대한 장개석의 인식과 태도에 강한 영향을 미친 인물은 朱家驊였다. 그는 한국혁명진영의 통일문제에 대해 한국 각 당파의 자유로운 결정에 맡기지 말고,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태도를 취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제시하고 통일운동이 속히 실현되도록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김영신, 2016. p.265.

70) 그는 한국독립운동 관련하여 蔣介石 군사위원회 위원장 시종실에는 군사위원회 조사통계국·중앙당부 조사통계국·국제문제연구소·외교부 등 조사연구 기구의 보고가 접수되었는데, 군사부문 관련 사무는 군사위원회, 임시정부와 한인 각 당파의 활동은 중앙당부 비서처 및 중앙조직부, 임시정부의 대외활동은 외교부 등 유관기관의 보고가 접수되었다고 한다. 邵毓麟, 『使韓回憶錄』, p.41.

면서 복잡하게 전개된 사정은, 직접 그 일에 참여한 사람이 아니면 도저히 자세한 내막을 알 수 없는 요지경과도 같은 것이었다고 하였다.<sup>71)</sup>

邵毓麟은 당과 군을 통한 두 갈래 지원의 정책적 목표는 한국혁명역량과 연합하여 공동으로 분투하고 한국이 독립을 완성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점에서는 일치하였지만, 아쉽게도 당시 당과 군의 의견과 행동을 통일시킬 지휘기구가 존재하지 않은 탓에 상호 업무상의 연계가 부족하였고, 1942년 말에야 비로소 대한원조에 대한 통일방안이 마련되기까지 당과 군이 독자적인 행동을 진행한 것이 문제였다고 한탄하였다.<sup>72)</sup> 1942년 3월 2일 임시정부는 3·1독립운동 23주년 기념대회에서 ‘과거 혁명을 방해하였던 당파싸움이 앞으로 절대 없을 것이다. 이제 모든 혁명역량이 임시정부에 집중되었다’고 보고하였다.<sup>73)</sup> 1942년 12월, 중국 내 모든 한인 당과 영수들을 망라하여 장래 진로와 공작문제를 의논하였고, 1944년 4월 당시 임시정부 각료 가운데 조선민족혁명당이 4석, 해방동맹이 1석, 무정부주의자가 1석을 차지하고 김규식이 국무회의 부주석, 김약산이 군무부장을 맡는 등 당과 간 합작과 단결을 이루었다. 하지만邵毓麟은 이는 외부환경의 변화로 인한 표면적인 현상이었을 뿐, 내부적으로는 각 당파간의 분규와 모순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태였다면서 임시정부의 분규를 강조하였다.<sup>74)</sup> 반면 선행연구에 의하면, 주중 미국대사 가우스 (Edward Gauss)는 ‘국민당정권이 한국문제를 전통적인 중화중심주의적인 인물들(朱家驊 何應欽 吳鐵城)에게 맡겼지만, 이들 3자간의 협조조정 기능이 부재하였다. 3인은 한자리에 모이지 않고 의견의 일치를 보이지 않았으며, 임시정부가 자기와 단독으로 거래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 결과 임시정부는 이들 3인간의 불화에서 희생양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분석하

71) 邵毓麟, 『使韓回憶錄』, pp.27-28.

72) 1942년 7월 重慶에서 임시정부와의 교섭이 많아지면서 국민당 상무위원회에서 한국문제의 전체적 일을 처리하도록 戴傳賢·何應欽·王寵惠·陳果夫·朱家驊·吳鐵城·王世杰 등 7명의 전문소위원회를 조직하였고, 1944년 5월 朱家驊에 이어 국민당 조직부장이 된 吳鐵城이 한인독립운동 단체의 통일작업을 주관하는 체제로 바뀌었다. 한시준, 「해제」,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2권 대중국 외교활동』, p.xiii.

73) 賀耀組·馬超俊·董必武·黃少谷·陶行知·王芃生·邵毓麟·潘梓年 등 중국 측 인사들과 퍼거슨·로미노스키·맥도날드 등 중경에 주재하는 각국 외교사절도 참여하였다. 「국권회복을 위한 한인들의 단결된 모습(1942. 4. 3)」,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40권 중국보도기사 2』, pp.179-181.

74) 邵毓麟, 『使韓回憶錄』, p.30.

였다.<sup>75)</sup>

## 2. 임시정부의 건군과 참전노력

1940년 9월 17일 임시정부는 한국광복군을 창설하고 重慶 嘉陵賓館에서 한국광복군 성립기념식을 거행하였다.<sup>76)</sup> 한국광복군 성립은 중국국민정부의 정식 성립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거행하였지만, 이미 蔣介石이 원칙적 승인을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될 일은 없었으며, 성립기념식에 중국국민정부 인사가 다수 참석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sup>77)</sup> 邵毓麟도 중국과 외국 각계 인사들과 함께 초청되어 참석하였다.<sup>78)</sup> 邵毓麟은 한국광복군 사무를 관할하고 감독하는 실무조직은 군사위원회 판공청 군사처였으며 광복군 운영에 필요한 모든 군량과 장비를 중국군사위원회에서 발급하였고, 중국 군사당국이 볼 때 한국광복군은 머리와 몸뚱이만 있지 수족이라 할 수 있는 병사들의 원활한 공급이 부족하여 군사적 관점에서 전투력을 갖춘 부대로 성장하기에는 어려웠으며, 당초 중국 군사당국이 한국광복군 창설에 찬성한 이유는 정치적 목표에 따른 것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한국광복군 소속 청년 대원들이 전장에서 희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국군사당국은 한국광복군의 주된 임무를 심리전과 군대 내 정치공작에 국한시켰다. 하지만 한국광복군도 무장단체인 만큼 군정과 군령의 통일, 엄격한 통제가 없다면 분규와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없지 않았기에, 이런 이유로 중국군사당국이 1941년 11월 5일에 통보된 ‘韓國光復軍9個行動準繩’(9가지 행동규칙)을 규정하

75) 한상도, 2000, 『서설- 한인독립운동에 대한 중국국민당 정부의 시각과 중화주의』, 『한국독립운동과 국제환경-1930·40년대 중국지역을 중심으로』, 한울아카데미, p.16.

76) 국민정부 군정부 측에서 광복군의 임정소속을 반대하고 국민정부 군사위원회 소속으로 할 것을 주장하자 국민정부와의 협의없이 한국광복군 성립대회를 강행한 것이다. 韓詩俊, 1993, 『韓國光復軍研究』, 一潮閣, pp.89-98; 김광재, 2007, 『韓國光復軍』,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pp.103-110; 한시준, 1993, 『韓國光復軍과 中國軍事委員會와의 關係』, 『국사관논총』 47, 국사편찬위원회; 韓詩俊, 1996, 『大韓民國 臨時政府和 韓國光復軍』, 『한국정치외교사논총』 14, 등

77) ‘한국광복군총司令部成立典禮式內賓題名’에 서명한 인물의 수는 총 134명 정도이며, 중국 측 인사가 107명, 서양측 인사가 27명이었다. 107명의 중국측 인사 가운데 거의 절반이 중국 국민정부 인사에 해당했다. 조덕천, 2016, 『중일전쟁기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중화민국 국민정부의 지원』, 『東洋學』 62, pp.7-8.

78) 邵毓麟, 『使韓回憶錄』, p.30.

였다고 한다.<sup>79)</sup>

하지만 선행연구에 의하면, 邵毓麟의 해석과 달리 중국국민정부 군사위원회가 한국 광복군에 큰 제약을 가했음을 알 수 있다. 중국 국민정부 군사위원회가 요구한 ‘한국 광복군이 지켜야 할 9가지 행동규칙’에 의해 한국광복군은 중국국민정부 군사위원회에 직접 예속돼 통제를 받게 되었다. 중국측이 광복군을 군사위원회에 예속시키고 운영도 군사위원회에서 파견한 중국 장교들이 장악하도록 한 과정은 임시정부의 독자적 운영권 확보 노력과 중국측의 견제 및 통제정책을 잘 보여준다.<sup>80)</sup> ‘9가지 행동규칙’처럼, 한인독립운동이 독자적으로 기반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중국정부의 지원을 받는 만큼 지불해야 하는 반대급부 또한 적지 않았다.<sup>81)</sup> 한국광복군의 機構를 대폭 축소하였고, 중국군 장교들을 대거 파견해 한국광복군을 장악했으며,<sup>82)</sup> 중국국민정부 군사위원회가 조선의용대를 옹호함으로써 한국광복군과 조선의용대 인사 사이의 갈등은 더욱 확대되었다.<sup>83)</sup>

조선의용대와 관련하여 邵毓麟은 일본군에 대한 정치공작에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음은 인정하지만, 결국 한국광복군과 상호 대립하고 투쟁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말았다고 하였다. 그는 조선의용대의 행태는 임시정부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고, 중국 당·정·군 방면에서도 극히 골치 아픈 문제였다고 하였다.<sup>84)</sup> 합병 후 김약산은 한국광복군의 부총사령직을 맡았는데, 자신이 부대를 독자적으로 지

79) 邵毓麟, 『使韓回憶錄』, p.34.

80) 배경한, 2010, 「중일전쟁시기 蔣介石·國民政府의 對韓政策」, 『歷史學報』208집, pp.274-280.

81) 한상도, 「해제」,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5권 중국의 인식』, p.v.

82) 한국광복군의 총사령과 나중에 증설된 부사령에는 한국인이 선임됐지만, 참모장을 비롯해 각 處의 주요 간부는 대다수가 중국군 장교들로 구성됐다. 1945년 4월의 한국광복군 총사령부의 장교 현황을 살펴보면, 총 56명의 장교 가운데 한국인이 13명, 중국인이 43명이었다. 중국군 장교의 비율이 75퍼센트가 넘었다.

83) 조선민족혁명당은 1940년 말 임시정부로 통합됐지만 조선의용대는 한국광복군에 통합되지 않은 상태였다. 조선의용대가 1942년 7월 한국광복군에 통합되었지만, 중국국민정부 군사위원회가 압력을 행사해 기존 한국광복군 편제에 없던 부사령의 직제를 증설하고 조선의용대 대원들을 한국광복군 第1支隊에 편성하였다. 중국군사위원회가 이러한 명령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조선의용대와 광복군이 모두 그 관할 하에 있었기 때문이다. 한시준, 2009, 『대한민국임시정부III-중경시기』,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소, p.41.

84) 1941년 10월 蔣介石위원장은 참모총장 何應欽에게 한국광복군과 조선의용대를 군사위원회 직할로 예속시키고 참모총장이 두 부대의 운용권을 통일적으로 장악하도록 지시하였다. 邵毓麟, 『使韓回憶錄』, p.33.

휘할 수 있는 실권을 상실한데 대해 邵毓麟에게 여러차례 불만을 토로하였다고 한다.<sup>85)</sup> 당시 김약산이 이끌던 조선의용대원 일부는 국민정부의 대일온건정책에 불만을 품고 1941년 초 화북으로 떠나 화북지대를 편성하고 太行山 일대에서 항일전을 치루고 있었으나, 重慶에 있던 조선의용대 본부가 임시정부의 광복군 제1지대로 편입하자 화북지대는 본부 없는 지대가 되었다. 이와 관련 邵毓麟은 항전개시 후 국공합작하에서 군사위원회 정치부 부부장을 맡은 중공의 周恩來와 제3청 청장을 맡은 郭沫若이 김약산 일파를 공산당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공작을 진행하고 있었고, 후일 적지 않은 조선의용대원들이 대오를 임의로 이탈하고 연안으로 들어가 공산당에 참가한 것도 바로 이런 연유라고 언급하였다.<sup>86)</sup>

한편 관련 연구는, 국민당 정부의 대일 소극항전 노선이 젊은 대원들에게 미친 충격을 컸고, 중국국민정부 지역을 이탈하여 화북으로 이동하거나 남부에 있는 중국공산당의 신사군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1941년 1월 皖南사변의 발생과 뒤를 이은 국민정부의 압박이었다. 이는 조선의용대의 한인 대원들을 포함한 좌파 민족주의자들이 중국공산당 항일근거지로의 이동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끼쳤다.<sup>87)</sup>고 한다.

邵毓麟은 한국광복군이 대일심리작전과 군대 정치공작에 참여하였고, 한국독립운동과 중국의 대일항전을 하나로 연결시키면서 상당한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였다.<sup>88)</sup> 임시정부는 ‘9가지 행동규칙’을 수락한지 1년 후에 이의 폐지를 중국측에 제안하였고, 지속적 교섭을 통하여 중국정부로부터 1944년 8월 이를 폐기할 용의가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중국측은 ‘9가지 행동규칙’ 철폐가 긍정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판단하였으며,<sup>89)</sup> 1945년 4월 4일 협상이 타결되어 신탁정을 체결하여 광복군의 통수권이 중국 측으로부터 임시정부로 이관되었고 군사원조를 차관으로 변경하였다.<sup>90)</sup> 邵毓麟은

85) 邵毓麟, 『使韓回憶錄』, p.33.

86) 邵毓麟, 『使韓回憶錄』, p.29.

87) 강현사, 2014, 『중일전쟁시기 新四軍내 韓人の 활동양상』, 『사림』49권, p.260.

88) 邵毓麟, 『使韓回憶錄』, p.35.

89) 중국측은 이를 수정하거나 취소한다하여 중국항전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한국측의 바람에 부응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한국광복군행동준수9조의 규정에 관한 簽呈』(林蔚·陳布雷->蔣介石, 1944.8.10), 김영신 편역, 2011. pp.150-151.

90) 내용의 핵심은 한국광복군을 임시정부 소속으로 되돌려 주고, 한국광복군의 軍費를 한국임

‘9가지 행동규칙’을 둘러싼 잡음은 중한 두 나라의 전통적인 우의를 손상시킨 중대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지만, 다행히 중국최고영수의 현명한 판단과 영단으로 적시에 취소하고 1945년 2월 중한 쌍방의 동의하에 ‘援助韓國光復軍辦法’이 제정됨으로써 사태는 일단락되었다고 하였다.<sup>91)</sup>

반면 관련 연구는, 중국국민정부가 한국광복군에 대한 지원정책을 바꾸게 된 이유는 한국임시정부의 반발과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독립의 가능성이 더욱더 가시화됐기 때문이다.<sup>92)</sup> 1941년 12월 10일 대일 宣戰布告를 통하여 연합국의 일원으로서 국제법상 교전국의 지위를 확보하고자 했던 임시정부가, 1945년 중국과 체결한 신탁정을 바탕으로 광복군을 각지에 파견하였고 멀리는 미얀마와 인도까지 참전하여 영국군과 연합작전을 수행하게 된 것<sup>93)</sup>이라고 하였다. 邵毓麟은 새 규정에서 한국광복군이 중국 경내에서 작전행동을 전개할 때는 군령상 중국최고통수부의 지휘를 받지만, 군정상 한국광복군이 더 이상 중국군사위원회에 예속되지 않게 되었음을 명시하였고, 이점은 ‘사실상 임시정부를 승인했던 중국정부의 태도를 더욱 강화시켰다’는 의의가 있다고 강조하였다.<sup>94)</sup> 관련 연구도 1945년 3월 임시정부가 광복군을 직접 통제하고 관할할 수 있게 된 조처는 국민정부의 임시정부에 대한 사실상의 승인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sup>95)</sup>

---

시정부에 직접 제공한다는 것이었다. 한국임시정부가 중국 측에 제출했던 『中韓互助軍事協定草案』·『關於韓國光復軍換文草案』·『爲韓國光復軍當面要求條件』의 내용이 거의 그대로 반영됐다. 중국국민정부가 한국임시정부의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한국임시정부와 한국광복군은 자주성과 독립성을 온전히 되찾게 되었다.

91) ‘원조한국광복군판법’이 제정되던 때 나는 蔣 위원장의 시종실에 근무하고 있어 전후 사정을 잘 알고 있다. 당시 위원장은 “행동준승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더구나 ‘준승’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더없이 어리석은 결정이었다”고 분명하게 지시를 내리신 것을 기억하고 있다. 광복군사무를 담당했던 부하들의 ‘어리석음’이 중한 우의관계에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도 알 수 있는 것이다. 邵毓麟, 『使韓回憶錄』, pp.34-35.

92) 조덕천, 2016. p.11.

93) 李庸中, 2009. pp.121-122.; 인도주둔 영국군 당국은 1944년 한국광복군 대원 가운데 일부를 민간인자격으로 인도에 초청하여 영국군을 위해 복무할 수 있도록 청하였다. 이들 한인 청년들은 인도에 파견되어 영국군을 위해 군대 내 정치공작 및 일·한 포로 업무를 담당하였다. 邵毓麟, 『使韓回憶錄』, p.35.

94) 邵毓麟, 『使韓回憶錄』, p.35.

95) 오경평, 1996, p.64.

## IV. 임시정부 승인과 전후 독립을 위한 중한 외교문제

### 1. 임시정부 승인 외교

邵毓麟은 1940년 외교부 정보사 사장을 겸하게 된 뒤 임시정부요인과 직접적인 접촉을 갖고 한국문제에 깊이 관여하게 되었는데, 重慶의 임시정부가 외교적 승인을 얻지 못한 관계로, 임시정부와 관련한 국제사무를 대부분 정보사가 나서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sup>96)</sup> 임시정부는 승인을 위한 외교활동을 다양한 방법으로 전개하였다.<sup>97)</sup> 1940년 7월 ‘중국 국민정부가 우리 임시정부를 승인할 것을 갈망한다’는 글을 발표하여 임시정부 ‘승인’ 문제를 알린 이후, 이 문제는 상당히 긴 시간 한중간 중요 외교문제가 되었다.<sup>98)</sup> 임시정부 외무부는 1941년 중반부터 ‘한국임시정부 승인문제’를 국제사회에 정식으로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에서 임시정부 승인을 이행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sup>99)</sup> 朱家驊도 ‘한국 임시정부를 승인하는 문제는 郭泰祺 외무부 장관과 여러 차례 협의하여 각측의 찬동을 얻었으니 오래지 않아 실현될 것이다’고 하였다.<sup>100)</sup> 1942년 1월, 중국 외교부장 郭泰祺는 임시정부 지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임시정부를 승인할 뜻이 있으나 각 당파간의 합작과 단결이 전제되어야 하며, 다른 동맹국의 외교적 움직임도 고려되어야 한다<sup>101)</sup>고 하였고, 1942년 3월 22일

96) 邵毓麟은 당시 외교부 정보사가 임시정부와 중국정부간 비공식적인 통로 역할을 담당하였기에 자신을 한국문제 전문가로 여기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한다. 또 외교부기관지『英文自由西報(National Herald)』와『大公報』, 중앙통신사의 통신문 등에 한국독립운동 관련 소식과 주장을 발표하여, 한국독립운동 인사들이 수시로 방문하였다고 한다. 邵毓麟, 『使韓回憶錄』, p.42.

97) 『關於承認韓國臨時政府之節略』, 『備忘錄』 등의 문건을 제출하거나 임시정부 외무부장이 중국 각계의 인사들을 만나 요청하거나 중한문화협회의 강연회 등을 통해 임시정부 승인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한시준, 『해제』,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 22권 대중국 외교활동』, p.xiv.

98) 金九, 『中韓合作之我見』, 重慶『大公報』(1940.7.7), 오경평, 1996, p.63.

99) 1941년 11월 21일에 國策諮問機關인 國民參政會의 陶行知·胡秋原 등 21명의 參政員들이 한국임시정부 승인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중국국민정부에 공식 제출하였다. 『中國國民政府行政院 秘書處→中國國民政府 外交部(1942.02.14)』,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5』, pp.94~96.

100) 『朱家驊가 서은중에게 회답한 편지』(1941.11.23) 오경평, 1996. p.66.

국민정부 孫科 立法院長이 東方文化協會에서 주최한 강연회에서 임시정부 승인을 공개적으로 주장하였으며, 1942년 4월 6일에는 中國國民政府 國防最高委員會 常務會議에서 孫科의 제안으로, 한국임시정부 성립 23주년 기념일인 4월 11일에 맞추어 임시정부를 승인하자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기까지 했다.<sup>102)</sup> 邵毓麟은 蔣介石 위원이 1942년 12월 결정한 ‘扶助韓國復國運動指導方案’에서 중국정부가 “적당한 시기에 다른 나라에 앞서 임시정부를 승인한다.”고 명시한 것으로 볼 때 중국정부가 외교적으로 임시정부를 승인하려 했던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하였다. 중국정부는 카이로회의를 전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이를 임시정부에 전하였다고 하였다.<sup>103)</sup>

1943년 6월 임시정부 승인문제 교섭성과를 보고한 이승만도 于斌 주교, 魏道明 대사, 주러시아중국대사 蔣廷黻 등 중국의 인사들이 여러 방면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하였고,<sup>104)</sup> 1943년 7월 ‘지금도 임시정부를 승인할 적당한 시기’라는 중국내 보고도 있었다.<sup>105)</sup> 1943년 11월, 카이로회의에서 미·영·중 3국 영수가 전후 적당한 기간 내에 한국을 독립시키기로 선언하자, 임시정부는 당시의 국제정세를 이용해 임시정부 승인 요청을 강화하였다.<sup>106)</sup> 1944년 7월 중국국민당 중앙당부는 ‘한국임시정부 승인原則은 통과되었다’고 했고, 중국국민정부 국방최고위원회 王寵惠 비서장도 ‘법률상 승인은 영미의 동의와 법적 수속을 경과해야 되고, 사실상 승인은 이미 되었다’고 말

101) 邵毓麟, 『使韓回憶錄』, p.36.

102) 『국방최고위원회 상무회의에서 외교부로 하여금 한국임시정부를 승인할 준비를 갖추도록 하자는 결의안이 통과된 사정을 보고하는 簽呈』(王寵惠→蔣介石, 1942.4.6), 『국방최고위원회 상무회의에서 외교부로 하여금 한국임시정부를 승인할 준비를 갖추도록 하자는 결의안이 통과된 사정을 보고하는 代電』(王寵惠→蔣介石, 1942.4.7), 김영신 편역, 2011, 68~70 쪽.

103) 邵毓麟, 『使韓回憶錄』, pp.36-37.

104) 『정부승인문제에 관해 각 방면과의 교섭 결과를 전한 편지』,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6권 외무부』, p.131.

105) 지금 우리가 미국·영국과 협의하여 임시정부를 승인한다면 임시정부의 지위가 현저하게 상승되고 더불어 역량도 크게 강화될 것입니다. 장래의 중·한 관계를 위해서 임시정부를 승인할 적절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대한민국임시정부 승인 시기 문제』(楊雲竹→吳國禎, 1943. 7. 5).

106) 임시정부는 1944년 4월 완전한 ‘좌우연합정부’를 조직하고, 임시정부 승인을 요청하는 비망록을 5월 21일 개막된 ‘中國國民黨 第十二中全會’에, 6월에는 蔣介石과 중국국민정부 외교부에 제출하였다. 『5外務部六月份工作報告(1944.6.3)』,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6』, p.20; 『中國國民政府 外交部→蔣介石(1944.7.12)』,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5』, p.113.

했다.<sup>107)</sup>

그러나 국민당 정부는 지지와 유보라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면서 여러차례 정책을 번복하였다. 邵毓麟은 1944년 임시정부가 재차 중국이 단독으로 임시정부를 외교적으로 승인해 줄 것을 요청<sup>108)</sup>한데 대해 중국 외교부가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인 사정을 설명하였다. 소련이 아직 태평양전쟁에 참가하지 않고 일본에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영·미가 먼저 임시정부를 승인하면 소련의 오해를 살 수 있으며, 카이로선언 이후 중국정부가 단독으로 임시정부를 승인할 수 없다는 고충이 있고, 이에 더하여 한인 각 당파가 진정한 합작을 이루지 못하고 분규가 여전한 상황을 이유로, 임시정부에 대한 외교적 승인은 적당한 시기가 도래할 때까지 잠시 미루는 것이 좋겠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는 것이다.<sup>109)</sup> 임시정부는 1945년 8월 14일 蔣介石에게 보내는 ‘비망록’에서 중국정부가 다시금 임정승인 문제를 여러 동맹국에 제의할 것을 간청하였지만 중국 국민정부는 끝까지 승인하지 않았다.

한편 邵毓麟은 국민당 정부가 임시정부 승인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1942년 5월 1일 주중 미국대사 가우스가 중국외교부에 ‘미국정부는 현재 상황에서 어떠한 한국 단체도 즉각 승인할 뜻이 없다’고 표시하였고, 이유는 중국내 한인 각 단체들이 단결과 합작을 이루지 못하는데다 국내의 지지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며, 미국무부도 같은 입장’이라고 전한 사정을 애석해하였다.<sup>110)</sup> 그런데 관련 연구에 의하면, 중국국민정부 외교부는 당시 미국 측에 한국임시정부 승인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고 한다. 1942년 5월초 가우스가 미국 국무성을 대표하여 중국측

107) 『外務部七月份工作報告(1944.7.31)』·『外務部八月份工作報告(1944.08.31)』,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6』, p.75, p.78.

108) 1944년 6월 임시정부는 ‘비망록’ ‘성명서’ 김구의 서한을 중국정부와 重慶 주재 각 사절들에게도 송부, 임정을 승인하도록 결의할 것 요구하였고, 9월 5일 蔣介石와 회견한 김구는 여섯가지 요구의 ‘비망록’에서 중국정부가 임정을 합법적으로 승인하라고 요구하였으며, 장개석과의 면담은 이후에도 몇 차례 더 이루어졌다. 『接見韓國金九主席談話經過』(1944.9.20), 『總裁接見韓國臨時政府主席金九記錄』(1945. 9), 『總裁接見韓國臨時政府主席金九談話』(1945.10.29) 등.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 22권 대중국 외교활동』, pp.288-292.

109) 邵毓麟, 『使韓回憶錄』, p.38.

110) 1943년 5월 국무부의 주관 관원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승인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주미대사 魏道明에게 보낸 답변에서 ‘미국정부가 현재 고려하고 있는 문제는 전후 한국의 독립과 관련한 부분이다. 지금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승인문제를 잠시 거론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전하였다. 邵毓麟, 『使韓回憶錄』, p.37.

에 표명한 사항에는 임시정부 승인에 어느 정도 양해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이는 미국정부의 유일한, 최초의 양해 표시였다.<sup>111)</sup> 미국은 한국이 지리적, 인종적 이유로 미국보다 중국에 더 직접적인 관심사라는 점을 인정하고 중국이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되는 판단을 내리면 미국은 이를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덧붙였다.<sup>112)</sup> 이와 관련된 임시정부 승인문제에서 중국측 노력이 현저하게 부족했다는 연구가 있다. 1942년 5월 미국의 양보 기회를 중국 국민정부가 잡았다더라면 즉시 한국 임시정부를 승인할 수 있었을 것이나, 大國과 협조적 입장을 지녀야 한다고 생각한 지도적 사상의 잘못이 있다.<sup>113)</sup> 중화민국 국민정부가 임시정부를 지원하면서도 끝내 그에 대한 외교적 승인을 하지 않은 것은 국민정부의 중화주의적 大國외교와 일본 패망후 한국을 중국의 종주권 아래 두려는 욕망 때문<sup>114)</sup>이라는 것이다.

邵毓麟은 국민당정부가 임시정부를 승인하지 않은 최대 이유를 한인세력의 분열이라고 하였지만, 중국역시 국민당-공산당 간 대립과 분열에 당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시정부를 승인하지 않는 이유가 독립운동 단체들간의 분열문제라는 논리는 비판할 여지가 많으며, 趙素昂을 비롯한 독립 운동가들도 중국이 한인 단체들의 분열을 임정을 승인하지 않는 구실로 이용한다고 비판하였다.<sup>115)</sup> 한편 비록 중국 측이 한국임시

111) 오경평, 1996. pp.68-69.

112) 미국은 중국이 임시정부를 승인한다면 이 새로운 조치에 비추어 미국은 입장을 재검토하겠다고 하였으나, 중국은 蔣介石이 외교부장 宋子文과 논의하여 임정 승인은 유리한 시기가 도달할 때까지 미루며 앞으로 임정과는 半公式의인 입장에서 문제를 처리한다고 미국과 영국에 전달하였다. 구대열, 1995. p.753.

113) 『당장 한국임시정부를 승인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며, 이 문제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최소한 사전에 미국과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장개석의 의견』, (蔣介石->王寵惠, 1942.4.10), 김영신 편역, 2011, pp.64-65; 중국은 ‘大國’의 국제적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반드시 미국과 일치된 견해를 고수해야 한다고 보았는데, 이는 상당히 중국의 ‘승인’문제에 대한 행동을 제약하였다. 오경평, 1996. p.71.

114) 국민당 정부는 1941년 11월 아시아·태평양전쟁이 개시된 후 임정의 간곡한 승인요구를 거절한 채 중화주의적 대국외교의 길을 갔으며, 중국이 1942년 1월 4대국의 하나로 연합국 성명에 참여하고 이듬해 1월 미영과의 불평등조약을 폐지하는 신조약을 체결한 것이 대국외교를 뒷받침해준다. 重慶주재 미국대사가 1942-44년 본국에 보고한 문건도 국민정부가 임정을 승인하지 않는 것은 일본 패망 후 한국을 중국의 종주권 아래에 두려는 욕망 때문이라고 하였다. 유용태, 2012. pp.16-17.

115) 구대열, 1995, 『2차 대전 중 중국의 한국정책- 국민당 정권의 臨政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28, pp.755-756.

정부의 승인을 끝까지 유보했지만, 그것은 미국 측의 반대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이자 자체 역량의 부족 때문이며, 국민정부가 국제사회와 일반 여론에 한국임시정부의 존재와 중요성을 선전한 공도 적지 않았다는 지적<sup>116)</sup>, 重慶 임시정부측에 보면 승인외교가 좌절된 것이지만, 그 첫 번째 요인은 임정이 지녔던 내재적 취약성이나 한계 때문이 아니라, 전후 한국문제 처리를 둘러싼 연합국 열강의 서로 다른 입장과 태도 때문이었다는 해석<sup>117)</sup>도 있다.

당시 중국공산당은 임정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임정승인 문제에 대해서는 태도를 표명하지 않았다.<sup>118)</sup> 중국 공산당은 화북과 만주에서 활동하던 조선의용군을 비롯한 독립군의 확대에 적극적이었고, 공산당 역시 그 대가로 독립 후의 한국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였다.<sup>119)</sup>

## 2. 전후 독립을 위한 외교노력

1943년 1월 3일 邵毓麟은 『大公報』에 『어떻게 일본사건을 해결할 것인가?』라는 글에서 한국은 전후 즉각 독립해야 하며, 이는 대일작전을 진행하는 목표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비록 중한 쌍방이 힘을 합쳐 노력한 임시정부의 외교적 승인은 획득하지 못하였지만, 카이로회의 선언으로 한국독립운동의 기본목표 가운데 하나인 전후 한국의 독립 보증이라는 목표는 이룬 셈이라고 하였다.<sup>120)</sup>

邵毓麟은 1944년 1월 임시정부 지도자들과 전후 한국독립 쟁취와 임시정부 승인방법에 대해 두가지 논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카이로선언’에서 전후 한국의 독립을 보

116) 조덕천, 2016. pp.72-74.

117)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 관할구역, 소련 영내, 그리고 미국에는 각각 그들에게 우호적일 수 있는 한인독립운동세력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실 한국의 어떤 독립운동단체도 열강의 공식 승인을 획득하기가 어려웠다. 고정휴, 2009, 『중경시기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승인외교 실패원인에 대한 검토』, 『한국독립운동사연구』33, p.26.

118) 모준영, 2016, 『장제스(蔣介石)와 마오쩌둥(毛澤東)의 對한반도 정책 비교』,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p.75.

119) 장세운, 1995, 『항일전쟁기 중국공산당의 한국독립문제 인식과 대응』, 『한국독립운동사연구』9집, p.265; 김지훈, 2004, 『중일전쟁기 중국공산당의 한국인식』, 『역사학보』184집; 유용태, 2012. p.18.

120) 邵毓麟, 『使韓回憶錄』, pp.42-43.

증하였지만 처칠 수상의 주장으로 덧붙여진 ‘적당한 시기’ 구절로 인하여 변질될 수도 있다. 영·미 두 나라는 한국 독립문제를 소련과 거래할 가능성이 다분하므로, 중한 양국은 반드시 연합하여 한국의 독립을 방해할 막아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둘째, 전후 한국의 독립 보장은 重慶 임시정부에 대한 외교적 승인과 별개의 문제이다. 이 문제의 관건은 임시정부를 사실상 승인한 중국에 있지 않고, 영·미 정부가 임시정부 승인을 늦추고 있는 원인을 찾아 해소하는데 있다. 여기에는 외교적 노력뿐 아니라 임시정부 내외 각 당파의 단결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하였다. 덧붙여 그는 삼민주의야말로 다른 어떤 주의보다도 아시아인에게 가장 적합한 주의라고 강조하였다.<sup>121)</sup> 1944년 4월 邵毓麟은 임시정부로부터 명예고문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당시 중국정부는 임시정부를 정식으로 승인하지 않았기에 현직외교관인 그를 임시정부 고문직으로 승인할 수는 없었지만, 두 나라의 우호증진과 독립을 도우라며 지지하였다.<sup>122)</sup> 邵毓麟이 중국 정부의 묵인 아래, 국민당원 자격으로 임시정부의 중국인 고문으로 초빙된 것은 중한관계사에서 단 하나의 사례였다.<sup>123)</sup>

한편 邵毓麟은 1943년 11월 카이로회의 이후 중국의 국력이 차츰 쇠퇴해 갔고, 한국문제에 대한 중국의 발언권과 영향력이 점차 감소해가는 만큼 임시정부의 입장과 처지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음을 애통해하였다. 그는 중국정부는 최소한 한국독립운동 지원이라는 기본 정책을 단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1944년 9월말 미국무부는 중국정부에 “미국의 대한정책은 전후 미·영·중·소가 국제기구를 조직하여 한국을 신탁통치하지는 것이 핵심적이 내용이다. 영국과 소련도 동의하였다”고 알렸다. 중국정부는 전후 국제기구를 조직하여 한국을 공동관리하지는 영·미의 주장에 당연히 반대의 입장을 취하였다고 서술하였다.<sup>124)</sup>

邵毓麟은 1944년 12월 미국에서 열린 태평양회의에서 한국독립과 임시정부 외교승인 획득을 위한 활동을 펼쳤다.<sup>125)</sup> 邵毓麟은 영미 대표단이 주장한 ‘적당한 시기’ 동

121) 주이나 사상은 종교나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국경이 없는 것이며, 삼민주의가 한국에도 적합한 주의라면 한국도 가능한 이를 채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邵毓麟, 『使韓回憶錄』, pp.45-46.

122) 邵毓麟, 『使韓回憶錄』, p.48.

123) 「邵毓麟을 명예고문으로 초빙할 수 있도록 협조를 청하는 공함」,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2권 대중국 외교활동』; 石源華, 「邵毓麟: 民國首任駐韓大使」, 『世界知識』22, 2008, p.58

124) 邵毓麟, 『使韓回憶錄』, p.39.

안 한국이 국제공동관리를 거친 뒤에 독립 지위를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을 4가지로 반박하였다.<sup>126)</sup> 이어 샌프란시스코 회의에 참가한 邵毓麟은 신탁통치 이사회소조회의 출석하여, 연합국헌장 규정과 신탁통치이사회회의 최종목표는 약소국가의 ‘자치’가 아니고 ‘독립’ 획득이라면서 한국의 독립을 주장하였다.<sup>127)</sup> 邵毓麟은 1945년 2월 알타회담에서 영국과 미국은 미국과 소련이 남북한을 군사점령한다는 내용을 비밀리에 결정하였고, 중국에 통보하였다. 이는 소련의 환심을 사기 위해 중국을 배신한 것이며,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영·미의 희생물이 되었다고 하였다.<sup>128)</sup>

이와 관련 선행연구는 邵毓麟의 주장과 다르다. 카이로회담 초안 검토과정에서 蔣介石과 중국측 실무총책임자였던 王寵惠 모두 ‘적당한 시기’라는 전제조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미국측의 한국문제 처리방침인 국제 공동관리 주장을 중국측이 묵인하는 형태로 받아들인 것이다.<sup>129)</sup> 중국의 한국독립 제안은 자국 주도하의 친중정부를 수립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며, 국민정부의 대한정책은 중화주의적 경향과 소련의 팽창주의에 대한 경계에 의해 규정되었다.<sup>130)</sup> 1944년 초 이후 중국은 카이로회담에서 결정된 조건을 받아들이는 선에서 전후 한반도에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시작하였고, ‘항일을 위한 연대’도 양국의 우호보다 중국의 영향력 확보와 전후 아시아 국제질서에 대한 구상에 있었다.<sup>131)</sup> 중국이 일관되게 주장했던 ‘한국독립 승인’ 주장은 ‘임시정부 승인문제’와 마찬가지로 중국 측의 의도대로 이루

125) 邵毓麟, 『使韓回憶錄』, p.50; 邵毓麟은 태평양학회와 샌프란시스코 연합국회의에 출석한 경과를 『勝利前後』라는 책으로 출간했으며, 한국어와 일본어로도 번역되었다. 邵毓麟 著, 1969, 『勝利前後 : 抗日戰勝利後的 韓中側面史』, 민조사.

126) 신탁통치 이유는 한국에 행정을 관리할 인재가 부족하여 단기간에 효율적인 정부를 건립할 수 없다, 5년간의 신탁통치기간 동맹국이 한인들을 훈련시켜야 비로소 독립국가를 건설할 능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반박으로 첫째, 전후 한국의 독립을 보증한 카이로선언의 정신에 위배된다. 둘째, 전후 한국을 국제기구가 공동관리하는 것은 형식만 바뀔 뿐 실제로는 변화가 없는 것이다. 셋째, 행정 간부인재가 없다는 것은 한국인의 재능과 지혜를 무시하는 주장이다. 넷째, 한인들이 단결과 합작을 이루지 못한 것은 제국주의통치자의 의도이다. 여러 세력의 분규와 투쟁은 세계 각국의 보편적인 현상이며, 결코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라고 하였다. 邵毓麟, 『使韓回憶錄』, pp.52-54.

127) 石源華, 2008, p.58.

128) 邵毓麟, 『使韓回憶錄』, p.39. p.55.

129) 배경한, 2014, 『카이로회담에서의 한국문제와 蔣介石』, 『역사학보』224, pp.323-325.

130) 구대열, 1995. 윗글, p.750.

131) 배경한, 2010. 윗글.

어질 수가 없었다. 자체 역량이 미약했던 중국이 미·영의 협조와 동의 없이 ‘한국문제’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가기 어려웠기 때문이다.<sup>132)</sup> 중국은 신탁통치라는 미국주도의 방안에 동조함으로써, 임시정부에 대한 독자적인 승인 노력을 포기하였다. 미국이 임시정부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견지한 이면에는, 한반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용인하지 않으려는 입장이 들어있었다.<sup>133)</sup> 한국을 국제사회가 공동관리하는 데 蔣介石이 반대한 이유는 중국이 동북지역의 주권을 회복하는데 장애가 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945년 8월 소련이 대일전에 참전하여 미군과 소련군이 한반도를 분할점령하고 1945년 8월 14일 국민당정부와 소련간에 중소조약이 체결되면서 중국이 세웠던 한반도 계획은 실현될 수 없었다.<sup>134)</sup> 등이다.

### 3. 임시정부의 환국과 전후 한중 외교문제

종전후 임시정부는 동맹국들이 외교적 승인을 해 줄 것을 기대하며 정부자격으로 환국하기 위해 다방면의 활동을 전개하였다.<sup>135)</sup> 중국국민당 정부는 임시정부가 환국한 후 미래에 조직될 한국 정부의 기초가 되기를 바랐고, 邵毓麟은 1945년 9월 미국에서 돌아온 뒤 임시정부의 조속히 귀국할 것을 거듭 권유하였다.<sup>136)</sup> 1945년 11월 5일, 邵毓麟은 重慶에 머물던 모든 한인 혁명지도자들의 귀국을 배웅하였고, 비록 외교적인 승인을 얻지 못하였지만 한인들은 모두 임시정부를 독립운동의 중심기관으로 인정하였고, 이런 인식이 있었기에 1945년 11월 임시정부 주석과 기타 영수들이 부득이 개인자격으로 귀국한 뒤에도 존경과 환영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였다.<sup>137)</sup> 한편 관련 연구는, 1945년 8월 15일의 급작스런 종전은 임시정부는 물론이고 중국 측에게

132) 조덕천, 2016. p.78.

133) 배경한, 2016, 「식민지시기의 한중관계-1940년대 전반기 국민정부의 대한정책에 보이는 ‘중화제국질서’의 유산」, 『한중관계의 정치외교사적 탐구:근대와 탈근대의 변주』, 2016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하계학술대회 자료집, 2016. 8. p.33.

134) 김지훈, 2015, 「1945년 광복 전후 중국국민당정부의 한반도 구상과 한국」, 『군사』 제96호, p.67.

135) 蔣介石에게 보내는 ‘비망록’에서 중국정부가 다시금 임정승인문제를 여러 동맹국에 제의할 것을 간청하였고, 1945년 9월 26일 환국 후 전국적 선거를 거행함으로써 정식정부를 성립할 수 있도록 중국정부가 미국과 협의할 것을 희망한다고 마지막 부탁을 하였다. 최봉춘, 1997. p.246.

136) 邵毓麟, 『使韓回憶錄』, p.71.

137) 邵毓麟, 『使韓回憶錄』, p.39.

도 전후 한국문제 처리과정에 부분적으로라도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었으며, 1945년 11월 중순까지 이어진, 임시정부 요인들의 한국문제를 둘러싼 임시정부, 중국, 미국 측 사이의 지루한 협상과정에서 임시정부나 중국측은 거의 아무런 발언권을 얻지 못하고 있었다.<sup>138)</sup>고 한다.

蔣介石은 국민당 총재의 자격으로 임시정부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내외에 천명하였고,<sup>139)</sup> 중국정부는 귀환한 임시정부와 연락, 중국내 한인 교민사무를 처리할 기관이 된 임시정부 駐華代表團(단장 朴贊翊, 부단장 閔弼鎬)을 사실상 승인하고 외교기관과 같은 대우를 하였다.<sup>140)</sup> 邵毓麟은 重慶과 南京에서 주화대표단 인원들과 협력업무를 맡았다.<sup>141)</sup> 당시 중국 외교부에서 국제협력을 맡고 있던 蔣廷黻<sup>142)</sup>도 한국의 광복과 임시정부의 귀환을 축하하며, 이후 주화대표단을 통해 연락을 취하자는 서신을 김구 주석에게 보냈다.<sup>143)</sup> 임시정부 주화대표단은 임시정부 세력의 노선갈등으로 좌우연합의 틀이 깨지고 축소되면서 1947년 1월 ‘한국 주화대표단’으로 개칭<sup>144)</sup>되었지만, 국민정부는 계속 지원하였다. 이와 관련 주화대표단의 박찬익 등을 통해 임시정부의 김구에게 지원비가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언급되었다.<sup>145)</sup>

邵毓麟은 전후 미국정부는 신탁통치에 반대하는 한국과 중국의 주장에 동의하였고, 연합국대회의 결의를 거쳐 1948년 연합국의 감독하에 남한지역에 보선이 거행되어,

138) 배경한, 2016, p.33.

139) 국민정부가 임시정부를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원수의 자격이 아니었다.

140) 11월 1일 朴贊翊이 단장, 閔弼鎬, 李青天이 대표를 담당하였고, 비서처, 교무처, 군무처, 총무처 등의 조직이 있었다. 이 가운데 교무처와 군무처가 각각 교포 업무와 광복군 확군을 책임지고 있었다. 김정인, 1997, 『임정 주화대표단의 조직과 활동』, 『역사와현실』 제4호, 한국역사연구회, p.127.

141) 주화대표단 사무를 이끌었던 閔石麟 선생은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주타이페이 총영사에 임명되었고, 아들도 후일 주타이페이 대사관의 일등비서로 봉사하였으니 민선생의 집안이 야말로 대를 이어 혁명외교에 몸 바친 경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邵毓麟, 『使韓回憶錄』, p.21.

142) 蔣廷黻은 중국을 대표하여 유엔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943년 미국, 1944년 캐나다, 1945년 영국을 방문하였다. 1947년 여름 뉴욕에서 유엔 안보이사회에 중국대표로 참석하고, 9월 국제연합총회에 참석한 이후 중국측 UN 상임위원에 임명되었다. 蔣廷黻, 『蔣廷黻回憶錄』, 長沙: 岳麓書社, 2003. p.3.

143) 『駐華代表團을 통한 긴밀한 연계를 희망하는 편지』(1945. 11. 16),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2권 대중국 외교활동』, p.299.

144) 김정인, 1997. p.147.

145) 김지훈, 2015. p.56.

남한에 민주독립정부인 대한민국이 탄생하였다<sup>146)</sup>고 하였다. 그는 1945년 12월 蔣介石에게 『한국문제의 처리원칙』으로,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분할점령하고 있는 상황을 중국이 변화시킬 수는 없으나, 한국의 완전한 독립이 중국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 내 친중국세력 지원, 합법민주정부 수립과 한국의 건군과 행정간부 훈련, 카이로 선언의 ‘적당한 시기’가 언제인지 유엔에서 한국독립의 명확한 시간표를 제시하고, 미군과 소련군을 한반도에서 철군시키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sup>147)</sup>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국민정부가 임시정부와 한인 교포 및 조직을 적극 관리하여 앞으로 한국문제에서 주도적 위치를 확보하려 하였고, 여기서 전근대적 중화체제는 아닐지라도 중국 중심의 새로운 아시아질서를 모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sup>148)</sup>

1946년 5월 邵毓麟은 군사위원회 국제문제연구소대리소장과 군사위원회 주한대표에 임명되었다. 국민당 정부는 한국 실정을 파악하고 임시정부와 협력하기 위해 邵毓麟을 주한대표로 파견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sup>149)</sup> 1947년 4월 邵毓麟은 南京을 방문한 이승만을 맞이하였다.<sup>150)</sup> 이승만의 방중기간 蔣介石은 남한에서의 단독정부 수립을 지지하였고 이것은 이승만에게 힘이 되었다. 邵毓麟은 이승만 방중의 정치적 수확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으로, 하지(John Reed Hodge) 장군도 이승만을 달리 보게 되고 일반 국민의 그에 대한 반응도 달라졌다 하였다.<sup>151)</sup> 이

146) 연합국총회에서 중국대표들은 한국이 즉각 독립할 수 있도록 보선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고, 蔣 위원장도 1945년 11월 4일 한국의 즉각독립을 재차 공개적으로 주장하였다. 邵毓麟, 『使韓回憶錄』, p.55.

147) 그리고 마땅히 취해야할 조치로 중국 내에 남아있는 광복군을 미국과 협의하여 한국으로 귀환시켜 지방보안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며, 임시정부 인물들과 한인 교포들을 귀국시켜 친중국세력을 증강시키고, 한인 청년을 선발하여 중앙정치학교 등에 유학시켜 한국의 군대와 정부, 사회의 중견 인물로 양성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邵毓麟, 『한국문제의 대책』(1945.12),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5 중국의 인식』, p.140.

148) 배경한, 2016, pp.31-32; 이재령, 2006, 『20세기 중반 한중관계의 이해 - 한국독립에 관한 중화의식의 이중성-』, 『중국현대사연구』29, p.103.

149) 邵毓麟, 『使韓回憶錄』, pp.75-76.

150) 이승만이 남한 정부수립에 앞서 중국의 지지를 획득하고,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강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고, 김구와의 협력을 강조하였으며, 중국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하였다. 邵毓麟, 『使韓回憶錄』, p.92; 『이승만과 관련하여 각 방면에서 올린 보고와 簽呈』(邵毓麟, 1947. 4.3, 4.11), 김영신 편역, 2011, pp.192-193.

151) 邵毓麟은 1945년 11월 임시정부 환국 시, 김구의 경양과 이승만의 권력욕을 비교하여 삼국시대의 劉備와 曹操 같다고 하였다. 邵毓麟, 『使韓回憶錄』, p.74.

후 국민당정부는 이승만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시작하였다. 이와 관련 선행연구는 전후 한국에 重慶 임시정부 중심의 친중적인 통일정부를 수립하려던 국민당정부의 계획은 미·소 군정과 남북 분단으로 인하여 남한 단독정부 수립으로 전환된 것<sup>152)</sup>이라고 지적하였다.

중화민국은 내전의 와중에도 불구하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국제 승인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1948년 9월 파리에서 열린 제3차 유엔총회에 승인의교 대표단을 파견하였고 유엔은 비로소 대한민국의 독립을 승인하였다. 이때 중국대표 蔣廷黻이 먼저 소총회에 한국대표를 초청하고 한국독립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하여 통과시켰으며, 미국대표와 함께 이를 총회에 상정하여 통과시켰다. 중화민국은 1948년 한국정부 수립 직후인 9월 서울에 총영사관을 개설하였고, 1949년 1월 3일 중국과 한국이 상호승인하여 양국관계는 대사급 외교관계로 격상되었다.<sup>153)</sup>

邵毓麟은 1949년 1월 17일 초대 중화민국 특명전권 주한대사로 임명되었으나, 6개월만에 부임할 수 있게 되었다.<sup>154)</sup> 1949년 7월 부임한 邵毓麟은 京橋莊에 거처를 정하였다.<sup>155)</sup> 관련 선행연구는 중국정국의 급변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김구 주석의 고문을 맡았던 邵毓麟 개인에 대한 이승만의 기피 등으로 인해 김구가 암살당한 후인 7월 28일에서야 신임장을 제출하고 대사관을 개설하게 되었다<sup>156)</sup>고 지적하였다. 한편 전후 한중관계에 새로운 협력연대관계가 요구되었고, 蔣介石과 국민정부는 통일을 앞세운 김구보다 반공과 독립을 주장한 이승만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다.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이후 국민정부의 신속한 외교승인은 전후 양국의 현안이 된 반공문제를

152) 국민당정부는 1948년 4월 남한 단독선거에 반대하는 김구와 찬성하는 이승만 사이에서 한국주재 총영사를 통하여 중재를 시도하지만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 김지훈, 2015, p.63. p.68.

153) 1949년 한중수교는 먼저 유엔총회라는 국제사회가 한국독립을 승인한 후에 완성되었다는 절차와 형식면에서 특이하다. 유용태, 2012, pp.20-21.

154) 내전중 국민당이 南京에서 廣州로 이동하게 되고, 외교부장 또한 계속 바뀌었으며, 한국측 동의를 받는 수속이 오래걸렸다. 邵毓麟 자신이 6월에 이승만 대통령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임명수속을 해결하였다. 邵毓麟, 『使韓回憶錄』, pp.100-102.

155) 邵毓麟, 『使韓回憶錄』, p.106; 원래는 유엔중국대표 劉馮萬 박사가 살던 金華莊에 들어야 할 것인데, 金信씨가 경교장의 집세를 감당할 수 없어 옮기자 소유주 최창학씨가 邵毓麟 대사에게 대여하였다. 『조선일보』, 1949년 11월 16일.

156) 손준식, 2013, 『‘兄弟之邦’에서 ‘兇地之邦’으로- 대한민국과 중화민국의 외교관계 (1948-1992)』, 『中國近現代史研究』5, p.30.

통로로 蔣介石과 이승만의 연대가 이루어졌다는 지적<sup>157)</sup>도 있다. 邵毓麟 대사의 한국에서 使命의 하나는 대만-한국-필리핀의 遠東反共聯盟을 건설하고, 한국전쟁의 조기 폭발을 촉성하여 미국으로 하여금 다시 이 지역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다.<sup>158)</sup> 邵毓麟은 1949년 8월 중국국민당 총재 신분으로 진해를 방문한 蔣介石과 이승만 대통령의 회담은 과거 중한 抗日연합에서 중한 反共연합으로 나아가는 중한 양민족이 연합한 분투의 역사상 획기적인 회의라고 하였다. 원동반공연맹은 실현되지 않았으나, 진해회담의 결과 아시아를 넘어 ‘세계인민반공연맹’을 만들어냈다는 것이다.<sup>159)</sup>

## V. 1930-40년대 중한 외교문제 연구의 특징, 재평가, 과제

지금까지 蔣廷黻과 邵毓麟의 回憶錄의 배경이 되는 1930-40년대 중한 외교문제와 관련 연구현황을 살펴보았다. 邵毓麟은 임시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고, 護法정부의 임시정부 승인과 이후 蔣介石의 국민당 정부로의 계승성을 강조하였다. 반면 관련연구에 의하면 임시정부와 호법정부의 외교적 호조와 협력관계 내면에 한중 호조라는 긍정적 측면 외에 ‘중화주의와 사대주의의 교차’라고 하는 부정적 갈등적 측면이 공존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식민지 시기 한중관계는 처음부터 심각한 비대칭성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는 까닭에 한중외교 문제의 전모를 밝히는 작업은 결코 단선적일 수 없다.<sup>160)</sup> 관련 연구경향을 크게 두가지로 나누면 하나는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 아래 식민지 혹은 半식민지로 전락한 역사적 공동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연대와 협력의 관계를 강조하는 입장, 다른 하나는 전통적 중화주의의 유산 가운데 중국의 주변국에 대한 영향력 확보의도(중화주의)와 그에 대한 저항이라는 길항관계로 보는 입장이다. 국민당 정부의 한국정책과 임시정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많은 연구들이 축적되어 왔지만,<sup>161)</sup> 중국과 한국의 외교문제와 임시정부 외교활동의 실체를

157) 이재령, 2006. p.107. p.111.

158) 邵毓麟, 『使韓回憶錄』, pp.105-106; 石源華, 2008, p.59.

159) 邵毓麟, 『使韓回憶錄』, p.112. p.123.

160) 배경한, 2012; 배경한, 2016, p.34.

161) 胡春惠, 『中國與韓國臨時政府之關係』, 國立政治大學 博士學位論文, 1972; 추헌수, 『大韓民國臨時政府和 中國과의 關係』, 韓國史論10, 국사편찬위원회, 1981; 최봉춘, 1997; 장세윤,

밝히기 위해서는 더많은 자료 발굴과 다양한 접근방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蔣廷黻과 邵毓麟의 외교 관련 기록과 관련 연구는 새로운 시각의 재평가와 논쟁점, 연구 과제를 제공해주고 있다.

蔣廷黻은 일본의 동북침략에 전면항전을 반대하고 경제발전과 반공통일을 우선시하였기에, 중국 대륙에서 왜곡된 평가도 있었으나, 개혁개방 정책 이후 역사연구에서 ‘혁명사’와 ‘침략과 저항’의 논리 대신 민족주의, 경제발전이 중시되면서 그의 역할이 재평가되고 있다. 蔣廷黻의 주장은 1980년대 鄧小平의 韜光養晦<sup>162)</sup> 외교정책과 유사하다.<sup>163)</sup> 그가 추구한 統一주장은 國民政府의 항일민족통일전선의 건립으로 이어졌으며, 그가 蔣介石의 독재를 허용한 것은 국민 대상이 아닌 군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중국 국익에 유리하다, 그가 학자에서 정치가가 된 것은 학문을 포기하고 권력과 금전이 아닌, 민족과 국가를 위한 일을 하기 위함이었다.<sup>164)</sup> 그의 대일타협 노선은, 한 국가의 외교방침이란 종합 국력에 기초해 고려해야 하고, 현실주의 외교 원칙을 실현해야 한다는 원칙에 근거한 것으로, 굴종타협이나 일본을 이롭게 하는 논리와는 차이가 있다.<sup>165)</sup> 蔣廷黻이 9.18 사변이후 항전 건국을 준비하면서 발표한 사론은 역사학의 새로운 진보였고, 그의 중국 외교사와 근대사 방법은 협애한 민족주의적 대중정서를 따르지 않고, 국민을 세계적인 근대화의 절박한 추세를 인식하도록 각성시키기 위한 올바른 방법이었다. 그의 정책이 중국의 출로를 개혁 개방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현재 중국의 정책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蔣廷黻은 내외외환 시기에 중국 외교에 예리한 시각을 보여준 진정한 학자이자 통일론자, 애국주의자로 평가되며, 그의 반공 주장은 언급되지 않는다.

蔣廷黻의 동북연구 및 정치활동과 동북공정의 유사성이 언급되기도 한다.<sup>166)</sup> 하지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중국과의 관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80주년기념논문집 하』, 국가보훈처, 1999; 张玉红, 『中国国民政府与大韩民国临时政府关系研究』, 延边大学 博士学位论文, 2010. 등

162) 韜光養晦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은밀히 힘을 기른다는 뜻으로, 1980년대 중국의 대외정책을 일컫는 용어이며, 1980년대 鄧小平이 미국 등 강대국에 대한 자국의 외교정책을 韜光養晦 고사에 비유하였다.

163) 王金静, 2008, 『从蔣廷黻《中国近代史》看其“韜光养晦”策略』, 『井冈山学院学报』29-11.

164) 危兆盖, 2012, 『知者蔣廷黻的几个为什么』, 『博覽群書』, pp.106-108.

165) 张玉龙 钟昌火, 2009, 『寻求危机的转圜：蔣廷黻与东北问题述论』, 『東北史地』2, p.85.

166) 동북공정의 직접적인 목표가 ‘국가의 통일, 민족의 단결, 변강의 안정’에 있고 동북공정이

만 蔣廷黻의 근대 중국의 동북지역 ‘특수화’ 인식은 이후 동북공정의 원류로 일컬어지는 1930년대 傅斯年的 『東北史綱』의 논리와는 다르며, 오히려 蔣廷黻이 외몽골을 중화민족으로 간주하여 몽골인민공화국의 독립을 부인한 것을 중화제국주의라고 본 견해는 ‘반성적 민족주의’라고 높이 평가되었다.<sup>167)</sup> 蔣廷黻은 민족주의를 고취시키기 보다는 중화민족론에 기대어 소수민족의 독립과 민족자결권을 부인하는 것을 ‘중화제국주의’라고 비판한 선구,<sup>168)</sup> 중국 근현대 과정중에 잠류 혹은 伏流하고 있는 蔣廷黻 등의 ‘소민족주의론’에 대한 중요성과 전망이 지적되었다.<sup>169)</sup>

邵毓麟은 回憶錄에서 1937년 7월 7일 시작된 대일항전은 중한 두 나라의 상사존망을 결정지을 역사적인 시험무대였으며, 한국의 독립을 위한 분투와 중국의 원조협력을 (1) 정치적 단결을 위한 활동 (2) 건군과 참전 노력 (3) 외교적 승인의 쟁취 등 세 방면으로 나누어 경과를 서술하였다. 이 과정에서 邵毓麟은 임시정부 내부의 분열과 분파투쟁을 시종일관 강조하였고, 이는 중국 국민당정부가 임시정부 승인을 승인하지 못한 배경이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선행연구는 국민당정부의 원조정책과 노선의 혼선이 분열을 강화하였으며, 국민당정부의 한국 지원이 여러 갈래였던 이유는 한 인독립운동의 역량이 중국의 대일항전에 필요한 존재였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邵毓麟은 임시정부의 한국광복군 창설 및 전후 독립을 위한 중국 정부의 지원과 협력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선행연구는 그 ‘지원’의 내면에는 전후 한반도에 충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친중정부’의 수립과 그를 통한 중국의 영향력 확보라는 목표가 들어있었다. 중국측의 입장과 정책은, ‘중화제국질서’의 유산이라는 뿌리가 얼마나 강

---

‘순수한 학술연구가 아니라 국가이익을 위해 복무하는 학술연구’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박선영, 2004, 「정체성 게임 시대의 중국과의 역사전쟁 - 동북 프로젝트를 통해서 본 ‘동북’의 의미」, 『역사학보』182; 윤휘탁, 2005, 「중국의 동북변강정책·‘동북진흥전략’을 중심으로」, 『중국근현대사연구』27; 윤휘탁, 2008, 「‘포스트(Post) 동북공정’ : 중국 동북변강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역사학보』197.

167) 陳儀深, 1994, 「二十世紀上半葉中國民族主義的發展」, 『認同與國家:近代中西歷史的比較』, 臺北,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168) 중화민족론은 ‘현재 중국 경내의 모든 민족은 중화민족’이라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 모든 민족의 역사는 모두 중국사이다’는 역사인식이며, 중화민족주의는 국가가 강성해질 때 쉽게 제국주의로 변모하게 된다. 유용태, 2006, 『환호속의 경종-동아시아 역사인식과 역사교육의 성찰』, 휴머니스트, p.226.

169) 유용태, 2005, 「중화민족론과 동북지정학」, 『동양사학연구』93; 손승희, 2006, 「“금구(禁區)”에 대한 도전- 중국 현대사연구의 새로운 지평」, 『역사학보』191, p.342.

고하게 남아있었던지, 그리고 ‘중화제국질서’에 대한 회복노력 또한 계속되고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고 한다.

중국 국민당정부가 행한 주요한 한국정책은 최고 영수가 결정자였지만, 각 관련 부문 책임자들도 무시할 수 없는 작용과 정책건의를 하였다. 邵毓麟의 사례에서 보듯이, 인식과 실제 정책결정은 반드시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중한관계의 외교문제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 과정의 구조를 더욱 면밀히 추적하는 작업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국민당 정부와 임시정부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많으나, 임시정부의 활동에만 주력한 결과 상대 세력이나 정권의 입장을 편의적으로 해석하여 결과적으로 임시정부의 활동을 정확하게 기술하지 못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임시정부가 邵毓麟을 고문으로 요청한 이유와 성과는 무엇인지, 국민정부의 한국정책과 정책결정자의 성향을 파악한 수준, 예컨대 임정승인에 찬성하는 국민정부내 외교가 집단에 대한 조소앙의 평가와 邵毓麟이 임시정부에 孫文의 三民主義 채용을 건의한 데 대한 해석, 국민당 정부내 임시정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지속성과 극복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최근 중국학계는 항일전쟁의 국제적 위상, 세계사적 의의를 국제학계에 널리 알리고 국제사회에서 주목받고자, 한중 공동 항일전쟁사 연구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한다. 중국공산당과 연계된 조선의용군도 포함한 유기적이고 전반적이 연구의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다. 우리 학계도 중국측의 자료도움이 필요하므로, 공동연구를 기대하고 있다. 중국과 교류 협력을 통해 시각 확대와 다양한 접근방법으로 지금까지 한국학계에서 연구되지 않은 분야에 새로운 연구성과가 기대된다.

중국의 외교정책과 관련하여 부활하는 중화주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국 학계가 蔣廷黻을 재평가하는 이유, 한국과 공동항일투쟁을 강조하는 이유도 중국의 중화주의 우려의 목소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와 관련, 중일전쟁 시기와 국공내전 시기를 통한 역사의 연속과 단절 문제 역시 1949년 이후의 연속과 단절문제와 동일한 관심과 비중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sup>170)</sup>이며, 연속과 계승의 내용은 무엇이고 단절된 내용은 무엇인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탐구하는 작업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170) 김지환, 2016, pp.263-264.

## 중일전쟁 시기 조선화교의 항일활동

李正熙\*

- I. 서론
- II. 중일전쟁 전반기(1937-1941년) 중국 영사관과 화교의 항일활동
- III. 중일전쟁 후반기(1942-1945년)의 화교의 항일활동
- IV. 결론

### I. 서론

중일전쟁 시기 조선화교는 교향(僑鄉)인 산둥성과 하북성이 일본군의 점령을 받은 후 친일괴뢰 北平(북경) 중화민국임시정부(中華民國臨時政府) 및 남경국민정부가 수립된 후, ‘우호국의 국민’의 처우를 받으며 조선총독부 및 영사관이 추진하는 각종의 행사 및 헌금 운동에 동참한 이른바 ‘친일활동’에 대해서는 楊韻平(2007), 菊池一隆(2007·2011), 이정희(2007)에 의해 어느 정도 밝혀졌다.<sup>1)</sup>

반면 조선화교의 항일활동에 관한 연구는 일부 연구에 의해 단편적으로 언급되기는 했지만 항일활동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거의 없었다. 그 이유는 화교의 항일활동이 비밀리에 이뤄졌고 조선총독부 당국도 이런 사건을 1급 비밀로 다루었기 때문에 그 실체에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李盈慧(2003)는 중일전쟁

\* 仁川大 中國學術院

1) 楊韻平, 『汪政權與朝鮮華僑(1940-1945): 東亞秩序之一研究』, 稻鄉, 2007年, 175-182쪽. 이정희, 『중일전쟁과 조선화교: 조선의 화교소학교를 중심으로』, 『중국근현대사연구』39, 2007년, 125-126쪽. 菊池一隆, 『戰爭と華僑』, 汲古書院, 2011年, 298-309쪽.

시기 동아시아지역 화교를 ‘抗日’과 ‘附日’로 나뉘었을 때 조선화교는 일본화교, 대만화교와 함께 ‘항일’의 정도가 가장 낮은 지역의 화교로 분류했다.<sup>2)</sup>

楊昭全·孫玉梅(1991)은 신의주화교소학의 교사에 의한 항일교육, 신의주 화교 청년 10명이 본국에 귀국하여 중공팔로군에 참가했으며 그 가운데 李小虎, 汪慶恩이 전사했다는 것을 밝혀냈다.<sup>3)</sup> 菊池一隆(2011)은 일본 東洋文庫 소장의 『汪政權大使館檔案』, 外交史料館 소장의 『京城駐在中國總領事ノ動靜ニ關スル件』의 사료를 활용하여 조선화교의 항일활동이 예상보다 격렬히 전개되었다는 것을 소개했지만, 항일활동만을 전문적으로 다룬 논고는 아니었다.<sup>4)</sup>

한편, 세계 화교사 연구에서 중일전쟁 시기 화교의 항일활동에 관한 연구는 매우 빈약한 편이다. 중국에서 발행되는 화교 전문학술지 『華僑華人歷史研究』에 1981-2015년에 게재된 논문 가운데 화교의 항일활동에 관한 논문은 33편이며, 이들 연구 성과는 전문적인 주제의 실증연구가 비교적 적고 대상 지역도 동남아시아의 화교에 집중되어 있다.<sup>5)</sup>

본고는 상기의 菊池一隆씨가 활용한 사료에다 朝鮮總督府高等法院檢事局과 警務局이 중일전쟁 시기 발행한 『朝鮮檢察要報』, 『高等警察月報』, 『思想彙報』, 그리고 汪精衛 친일괴뢰정권의 僑務委員會와 外交部 그리고 주일대사관의 檔案을 활용하여 조선화교의 항일활동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朝鮮總督府高等法院檢事局思想部는 『思想彙報』를 발행했는데 그 가운데는 외국인의 항일활동에 대한 내용이 게재되어 있다. 중일전쟁 시기 『思想彙報』는 중일전쟁 발발 이후부터 1939년까지 발행되었다. 朝鮮總督府警務局은 『高等警察月報』를 발행했다. 이 월보는 중일전쟁 시기인 1939-1940년에 발행된 것이 확인되며, 이 월보에 조선화교의 항일활동이 게재된 것이 있다. 중일전쟁 시기 후반부, 특히 1944년 이후의 항일활동은 거의 밝혀지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朝鮮總督府高等法院檢事局思想部가 발행

2) 李盈慧, 『抗日餘附日: 華僑, 國民政府, 汪政權』, 水牛出版社, 2003, 278쪽. 그는 ‘항일’의 정도가 강한 국가 및 지역을 필리핀, 말레이시아, 버마, 인도네시아, 홍콩, 마카오, 태국, 일본·조선·대만의 순으로 분류했다.

3) 楊昭全·孫玉梅, 『朝鮮華僑史』, 中國華僑出版公司, 1991年, 300-301쪽.

4) 菊池一隆, 『戰爭と華僑』, 汲古書院, 2011年, 309-317쪽.

5) 張秀明, 『從“大抗戰史觀”看華僑與抗日戰爭研究: 基于《抗日戰爭研究》雜誌的思考』, 『華僑華人歷史研究』2015年9月第3期, 40-41쪽.

한 『朝鮮檢察要報』(1944-1945)는 화교의 항일활동 관련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또한 조선총독부 警務局과 法務局이 중일전쟁 시기 帝國議會에 보고한 자료에 조선화교의 항일활동이 소개되어 있다.

이처럼 기존의 연구가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던 자료를 활용하여 조선화교의 항일활동을 중일전쟁 전반기(1937-1941)와 후반기(1942-1945)로 나눠 검토하여 李盈慧(2003)가 주장한대로 조선화교가 ‘항일’의 정도가 정말로 제일 낮았는지 살펴볼 것이다.

## II. 중일전쟁 전반기(1937-1941년) 중국 영사관과 화교의 항일활동

### 1. 청천백일기 강제 환기사건

중일전쟁 발발 후 중화민국중경정부가 정식으로 일본공사관 및 경성총영사관 그리고 臺北總領事館 등 일본제국내 모든 영사관을 공식적으로 폐쇄한 것은 1938년에 들어서였다. 중경국민정부는 1월 24일 門司辦事處, 2월 5일 橫濱總領事館과 長崎領事館, 2월 7일 神戶領事館, 6월 1일 東京의 日本大使館을 각각 폐쇄했다.<sup>6)</sup> 그리고 대만의 臺北總領事館은 2월 5일 폐쇄되었으며, 조선의 京城總領事館, 仁川辦事處 및 鎭南浦辦事處, 新義州領事館, 釜山領事館, 元山領事館은 이보다 빠른 1월 20일 공식적으로 폐쇄되었다.<sup>7)</sup>

그런데 조선의 각 영사관은 중경국민정부에 의해 폐쇄되기 약 3주전인 1937년 12월말 중경국민정부의 국기인 青天白日旗 대신 北平(北京) 中華民國臨時政府의 五色旗로 換旗되는 기이한 양상이 전개되었다. 이 환기사건의 중심인물은 范漢生 경성총영사였다.

6) 出口晴久, 『日中戰爭期における神戶華僑の實態と動向』, 『東洋史論』 第9號, 1996年, 36쪽. 한편, 북평 중화민국임시정부의 공관은 1938년 3월 3일 函館, 4월 12일 東京, 8월 1일 神戶, 12월 24일 長崎, 1939년 4월 5일 橫濱에 각각 설치되었다.

7) 安井三吉, 『帝國日本と華僑: 日本・臺灣・朝鮮』, 青木書店, 2005年, 241쪽.

范 총영사는 盧溝橋事件 발발 직후 화교 및 화교재산 보호에 진력을 다했다. 7월 13일 南次郎(1874-1955) 조선총독부 총독과 경무국장, 경기도지사를 방문하여 화교의 보호를 요청했다. 이어 조선내 각 영사관과 중화상회에 “신문의 과대보도에 편승하여 필요이상의 행동을 하지마라”며 본국 귀국을 하지 말도록 지시했다.<sup>8)</sup> 그러나 盧溝橋事件이 전면전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范漢生 총영사는 8월 7일 화교의 등기수속 독려와 화교 소유 부동산의 조사를 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화교의 귀국을 지원하는 활동을 추진, 盧溝橋事件 이후부터 10월 말까지 본국에 귀국한 화교는 3만 2,727명, 잔류 화교는 3만 4,645명으로 약 절반이 귀국했다. 范漢生 총영사는 이러한 격무로 인해 8월 28일 뇌일혈로 쓰러져 병상에 눕는 불행을 겪게 된다. 10월 10일 경성총영사관에서 개최된 국경절 기념식을 주최하지만 오른손목이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으며 심한 건망증 증상을 보였다.<sup>9)</sup>

그러던 12월 17일 范漢生 총영사는 조선총독부와 조선군사령부를 방문하고 北平 中華民國臨時政府 참가를 표명했다. 12월 17일 조선일보 1면 기사에 의하면, 范漢生 총영사 “오랫동안 중일제휴공작을 하려했지만 (그럴)시기가 없었는데 다행히 지금 북방신정권탄생에 이르러 이 시기가 중일제휴를 다할 시기라고 생각하여, 南 총독 및 小杉 군사령관에 간청하여 (임시정부 요인의)소개를 받고 금번 북평에 가는 것은 소개를 성공시키는데 있다”고 말했다.<sup>10)</sup> 여기서 북방신정권은 일본의 北支那方面軍이 화북지역을 점령하고 점령지에 王克敏(1873-1945)을 위원장으로 하는 친일괴뢰 임시정부를 12월 14일 북평에 수립한 것을 말한다. 이 선언 직후 范漢生 총영사는 18일 북평을 방문, 寺內壽一(1879-1946) 北支那方面軍司令官과 임시정부 요인과 회담을 하고 경성에 돌아온 것은 27일이었다.<sup>11)</sup>

范漢生 총영사가 경성총영사관의 청천백일기를 오색기로 환기하는 사건은 그의 경성 도착 직후부터 시작됐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28일 청천백일기가 오색기로 간단히 바뀌 게양되었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강제로 환기하려는 范漢生 지지파와 일본 관헌, 그리고 강제 환기를 반대하는 반대파 간의 대립과 충돌이 격렬하게 전개

8)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 帝國議會說明資料 第1卷』 (復刻板), 不二出版, 1994年, 1088-1089쪽.

9)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 帝國議會說明資料 第1卷』 (復刻板), 不二出版, 1994年, 1091-1094쪽.

10) 『朝鮮日報』, 1937년12월17일.

11) 安井三吉, 『帝國日本と華僑: 日本・臺灣・朝鮮』, 青木書店, 2005年, 251쪽.

되었다.

환기사건 당시의 양상을 잘 보여주는 자료가 발견되었다. 당시 청천백일기의 강제 下旗에 강력히 저항하다 일본 헌병대에 체포되어 구금된 澎運泰가 漢口에 귀국하여 쓴 수기가 바로 그것이다. 澎運泰는 1936년 9월 9일 경성총영사관의 관내에 있는 漢城華僑學校에 부임한 교원이었다.<sup>12)</sup> 이 수기는 澎運泰가 1938년 4월 30일 漢口에서 발행되는 반월간 잡지 『華僑動員』 제3·4호에 게재한 ‘朝鮮의 護旗奮闘經過’이다. 이 수기는 조선총독부가 입수하여 번역, 조선총독부경무국이 발행하는 『朝鮮出版警察月報』에 게재했다.<sup>13)</sup> 필자는 아직 원본을 입수하지 못하고 번역본만 입수했다. 이 번역본 수기를 중심으로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范漢生 총영사의 임시정부 지지선언이 『조선일보』에 보도된 후, 경성의 화교사회는 혼란에 빠졌다. 17일 저녁 경성총영사관에 돌아온 范漢生 총영사는 그를 기다리고 있던 총영사관의 관원과 한성화교학교 교원에게 신문보도의 기사는 오보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그들에게 오색기를 게양하라고 요구했다. 일부 관원은 重慶國民政府 일본대사관에 전보로 “이것은 范漢生 개인의 행동이지 영사관과는 관계없다”는 뜻을 전했다. 중경국민정부는 일본대사관을 통해 20일(혹은 24일) 부산영사로 당시 일본에 체류중이던 陳祖備를 대리총영사로 임명하고, 총영사관은 조선 주재 각국 영사관 및 朝鮮總督府外務部에 그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일본 당국과 조선총독부는 陳祖備 대리총영사의 부산 상륙을 허가하지 않아 일본으로 되돌아가지 않을 수 없었다.<sup>14)</sup> 즉, 착임하지 못한 것인데 그 이유는 조선총독부가 임시정부를 지지한 范漢生 총영사를 지원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면 范漢生 총영사가 어떤 인물이며, 일본 및 조선총독부와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추적해보자. 徐友春 主編의 『民國人物大辭典 增訂版』에 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12) 漢城華僑學校는 인천화교학교(1902년)에 이어 1910년 설립되었다. 1942년 재학생 수는 420명에 달했다. 仁川華僑學校은 179명이었다. 1941년 6월 제23회 졸업식이 거행되었다. 졸업생 수는 16명이었다.(漢城華僑學校, 『漢城華僑學校概況』, 1941년7월. 이정희(2007년), 6-8쪽.

13) 澎運泰·朝鮮總督府警務局譯, 『朝鮮二於ケル護旗奮闘經過』, 『朝鮮出版警察月報』, 1938년(원래는 『華僑動員』 第3·4號, 1938年, 漢口發行에 게재된 것임).

14) 菊池一隆, 『戰爭と華僑』, 汲古書院, 2011年, 293-294쪽.

“名은 厚澤, 子는 漢生. 安徽省黟縣 출신. 1882년 출생. 일본 法政大學 졸업. 귀국 후 奉天 學務公所編輯長, 延吉邊務公署外交課一等翻譯官, 吉林交涉使署東文正翻譯官, 湖北都督府外交顧問. 1918년 吉林交涉署顧問 겸 日文 비서로 임명됨. 그 뒤 國民政府外交部總務司科長, 情報司第四科科长. 1934년 10월 대리 경성(조선 한성)총영사로 파견됨. 1935년 2월 총영사로 임명됨. 1938년 3월 일본에 투항한 것을 이유로 파면 처리됨. 1940년 9월 汪偽 외교부 주 일본동경총영사에 임명됨. 1941년 11월 汪偽 외교부 주일본 神戶영사로 임명됨.”<sup>15)</sup>

范漢生 총영사에 관한 사실에는 약간의 착오가 있다. 일본의 문헌에는 법정대학이 아니라 明治大學을 졸업했다고 나와 있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대로 그가 파면된 것은 1937년 12월 말로 1938년 3월에 파면된 것은 사실과 다르다. 또한 그가 1940년 9월 東京總領事に 임명된 사실은 없고 1941년 12월 26일 神戶總領事로 부임하기 위해 이임할 때까지 경성총영사관에서 근무했다. 어쨌든 范漢生 총영사는 『民國人物大辭典 增訂版』을 통해 1934년 경성총영사로 부임하기 이전 동북3성 지역, 남경국민정부 외교부에서 주로 일본 관계의 업무를 담당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경성총영사로 부임하기 직전, 그는 情報司第四科科长으로 있었는데 第四科는 일본을 담당하는 부서로 ‘日本科長’의 다름 아니었다.

그는 일본과장으로 근무한 만큼 일본의 외교관 가운데 지인이 많았으며, 그가 경성총영사로 부임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그를 잘 부탁한다는 공문이 조선총독부에 도착했다. 다른 경성총영사가 부임할 때 이러한 일은 거의 없는 일이었다.

堀内謙介(1886-1979) 中華民國上海公使館書記官은 1934년 11월 6일 田中武雄 朝鮮總督府官房外事課長에게 “(范漢生)氏は 오랫동안 남경 외교부에 근무하고 그 사이 과장 및 국장으로서 우리 공사관 기타 일본측과 접촉 연락을 담당해온 일본통입니다. 동씨 착임 시는 편의의 제공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라는 공문을 보냈다.<sup>16)</sup>

또 日高信六郎(1893-1976) 外務大臣官房人事課長은 1934년 11월 8일 田中武雄 朝鮮總督府官房外事課長에게 “范漢生氏は…일본 관계 사무에 종사하여 事變 때도 오로지 피차의 연락의 중심에 있었으며, 그 후에도 늘 양국 간의 친선에 노력하고 있는 인물로 저와는 매우 친근한 관계에 있습니다. 貴地에는 지인도 적습니다. 금후 서

15) 徐友春主編, 『民國人物大辭典 增訂版 上』, 河北人民出版社, 2007年, 849쪽.

16) 1934년 11월 6일, 堀内謙介 中華民國上海公使館書記官이 田中武雄 朝鮮總督府官房外事課長에 보낸 공문, 『昭和九年 外事課 領事館往復綴(各國)』 (한국 국가기록원 소장).

로 친하게 지낼 것을 부탁드리며 소개해드리니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공문을 보냈다.<sup>17)</sup>

한편, 范漢生 총영사는 경성 착임 직후인 1934년 12월 17일 조신히에서 宇垣一成(1868-1956)총독을 초청한 만찬에서 “중일의 친선은 즉 동양평화의 근본기초이기 때문에 반드시 중일의 친선을 도모해야 한다. 금후 나는 이 방침으로 나아가려 한다.”고 말했다. 范漢生 총영사의 인사말에 대해 宇垣一成 총독은 “지금 范 총영사는 열심히 중일의 친선을 강조하셨다. 나도 지극히 동감하는 바다. …다만 양국민은 관용과 활달한 정신으로 서로 반성하고 서로 양보하여 더욱더 친선을 도모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화답했다. 이러한 경위로 둘 사이의 관계는 매우 친밀했다.<sup>18)</sup> 조선총독부는 范漢生 총영사에 대해 “그 태도 매우 친일적으로 일본정부 요인 및 本府(조선총독부)에도 자주 접촉, 밀접한 연락을 취했다”고 평가할 만큼 ‘친일’적인 총영사였던 것은 분명하다.<sup>19)</sup>

남경국민정부 외교부는 范漢生 총영사의 ‘친일’적인 태도를 경계하여 1936년 6월 그와 완전히 반대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일본의 函館領事인 凌曼壽를 경성총영사관의 영사로 파견했다. 그의 영사 착임 후 둘 사이의 의견은 늘 충돌하여 화합이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중일전쟁 발발 직후 화교 귀국을 둘러싼 양자 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凌曼壽 영사는 8월 18일 본국으로 귀국했다.<sup>20)</sup>

范漢生 총영사가 12월 17일 임시정부 참가를 선언한 것은 14일 임시정부 수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그 이전에 이미 ‘친일’의 경향뿐 아니라 反共의 경향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은 사면 발발 이래 재조선 중국인의 귀국에 관해 만전의 대책을 기했지만 중국국민정부의 容共抗日政策 채택 이래 자신이 생각하는 主義와 맞지

17) 1934년11월8일, 日高信六郎 外務大臣官房人事課長이 田中武雄 朝鮮總督府官房外事課長에 보낸 공문, 『昭和九年 外事課 領事館往復綴(各國)』(한국 국가기록원 소장).

18) 一記者, 『中華民國范總領事の披露宴に於ける范總領事と宇垣總督の應酬』, 『朝鮮及滿洲』326號, 1935年1月號, 48쪽. 이 기사에서 범한생 총영사를 明治大學 출신으로 기재했다.

19)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 帝國議會說明資料 第1卷』(復刻板), 不二出版, 1994年, 1094쪽.

20)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 帝國議會說明資料 第1卷』(復刻板), 不二出版, 1994年, 1095쪽. 그는 1920년대 후반 경성총영사관 부영사로 근무한 적이 있다. 특히, 그는 1927년 12월 발생한 조선배화사건 때 화교의 피해지 조사와 보고서 작성을 담당했다.(이정희, 『1927년 조선화교배척사건의 경위와 실태-인천화교배척사건을 중심으로』, 『동양사학연구』 제135집, 2016)

않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이를 반대하게 되었다”고 밝혔다.<sup>21)</sup>

그러면 다시 강제 환기사건으로 돌아가자. 范漢生 총영사가 18일 北平으로 출발한 이후 매일 일본 헌병 7-8명이 총영사관에 와서 “청천백일기는 공산당의 깃발이라든지 지금은 중일전쟁중이어서 인민이 이 깃발을 보면 매우 분개하여 영사관원의 생명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빨리 오색기를 게양하여 중일제휴를 실행하고 反共노선으로 진입해야한다”고 말하면서 오색기 게양을 강요했지만, 관원은 국제적인 공의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그것을 수용하지 않았다.<sup>22)</sup>

范漢生 총영사가 북평에서 경성에 도착한 것은 12월 27일 오후 3시였다. 그는 南次郎 총독 관저를 방문하고 그곳에서 총영사관에 전화로 청천백일기를 하강하고 오색기를 게양하도록 지시를 내렸다. 이때 범 총영사의 친척이 되는 吳某씨가 주도하여 오색기로 환기했지만 곧바로 蘇馭軍 부영사, 팽운태 등 20여명이 다시 오색기를 내리고 청천백일기를 게양하고 중화민국만세, 청천백일기만세를 소리높이 외쳤다.

오후 4시 范漢生 총영사의 측근으로 그의 北平行에 동행했던 경성총영사관 서기 袁毓棠이 총영사관으로 돌아와 청천백일기를 내릴 것을 요구했지만 그들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저녁 7시 范漢生 총영사가 일본 헌병 2명을 데리고 입관하여 환기할 것을 강요했지만 蘇馭軍 부영사가 “우리들은 중국인의 괴뢰가 된 사람의 노예가 될 수 없다. 만약 국기를 환기하면 우리들은 생명을 걸고 반항할 것이다”라고 완강히 저항했다.

28일 아침 7시 范漢生 총영사는 헌병 2명을 데리고 입관하여 청천백일기를 내리고 오색기를 게양했다. 그러나 반대파는 즉시 오색기를 내리고 청천백일기를 게양하자, 范漢生 총영사는 “마음대로 해라”고 말하고 가버렸다. 오후 1시 20분경 范漢生 총영사와 헌병 20여명(조선인 깡패를 가장)이 권총을 지니고 관내에 진입, 오색기를 강제로 게양했다. 반대파는 이것을 목도하고 국기게양대로 달려가 그곳을 지키고 있던 2명의 헌병을 묶어 환기하려 했다. 바로 그때 范漢生 총영사는 무장한 일본 헌병 30여명을 대동하고 관내에 진입, 蘇馭軍 부영사, 葉俊愷 主事, 澎運泰, 董長志, 梁玉芝, 林學農 등 6명을 체포했다. 6명은 바로 헌병사령부로 이송되어 조사를 받았다. 이들 6

21)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 帝國議會說明資料 第1卷』(復刻板), 不二出版, 1994年, 1094쪽.

22) 澎運泰, 『朝鮮ニ於ケル護旗奮闘經過』, 『朝鮮出版警察月報』, 1938年.

명은 심문과정에서 당국이 청천백일기를 내리고 오색기를 강제적으로 게양한 것은 국제적 공의에 어긋난 것이라고 그 부당성을 계속해서 주장했다. 이들 6명은 馬永發 元山領事와 周愼九 京城中華商會長의 노력으로 31일 오후 전원 석방되어, 이 사건은 일 단락되었다.<sup>23)</sup>

范漢生 총영사는 경성총영사관에 오색기 게양을 성공시킨 후 29일 아침 각 영사관과 辦事處에 오색기 게양을 지시했다. 이때 진남포영사 張義信과 원산영사 馬永發은 范漢生 총영사의 지시에 따라 오색기를 게양했지만, 부산영사 陳祖備, 신의주영사 金祖惠, 인천판사처 주임 曾廣勛은 이에 반대했다.<sup>24)</sup> 그러나 이들 영사관도 范漢生 총영사가 다른 관원에 지시, 오색기가 게양되었다. 따라서 29일까지 조선의 각 영사관과 판사처는 모두 오색기를 게양, 중경국민정부의 공관은 모두 폐쇄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范漢生 총영사는 오색기 게양을 실현하자 전국의 각 중화상회에 임시정부지지 선언을 하도록 강요, 京城中華商會와 仁川華商會를 필두로 1938년 1월말까지는 임시정부 지지를 모두 선언하게 된다.<sup>25)</sup> 조선총독부는 임시정부 지지에 소극적인 화교나 단체에 대해 ‘抗日容共政權의 走狗’로 몰아붙여 임시정부를 지지하지 않을 수 없게 했다.<sup>26)</sup> 范漢生 총영사는 1938년 2월 3일 전국의 각 중화상회 대표 22명을 소집하여 화교단체대표자회의를 개최, 임시정부의 和平反共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旅鮮中華商會聯合會를 조직했다. 회장은 周愼九 京城中華商會長, 부회장에는 孫景三 仁川華商會會長이 선출되었다.<sup>27)</sup>

## 2. 각 영사관의 저항과 첩보활동

조선의 각 영사관 가운데 가장 范漢生 총영사에 반항적인 곳은 新義州領事館이었

23) 澎運泰, 『朝鮮ニ於ケル護旗奮闘經過』, 『朝鮮出版警察月報』, 1938年.

24) 安井三吉, 『帝國日本と華僑: 日本・臺灣・朝鮮』, 青木書店, 2005年, 251쪽.

25) 1937년12월28일, 京畿道警察部長이 警務局長에게 보낸 전화보고문, 『在仁川華僑團體ノ動靜ニ關スル件』 (한국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26) 『東亞日報』, 1938년1월7일.

27) 1938년2월3일, <新政權歸屬 後에 있어서의 中國人の 動靜>, 『治安狀況(昭和十三年)』, 『京城地方法院檢事局文書』 (한국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다. 朝鮮總督府警務局은 盧溝橋事件 이래 金祖惠(40) 신의주영사의 언동을 매우 주의 깊게 조사했다. 警務局의 보고에 따르면, 金祖惠 영사는 “이번 사건 발생 시 누차 不勤愼의 언동을 보여 소재지 헌병대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을 정도였다.<sup>28)</sup>

金祖惠 영사는 7월 중순 신의주영사관의 小使 秦福山(25)에게 일본 군대의 수송 정황을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秦福山은 지령에 따라 단독 혹은 陳芳林(32·신의주중화상회의 小使)와 공모하여 新義州府綠町安東街道 등지서 비밀리에 통과하는 군용열차의 차량 대수 및 수송인원, 말, 병기의 수량을 조사 탐지한 정보를 金祖惠 영사에게 보고했다. 金祖惠 영사는 영문암호로 이를 본국 외교부에 통보했다. 또한 李殿升(22·식당조리사)는 군사비밀을 신의주영사관 서기인 楊柳溪에게 보고했으며, 郭玉亭은 군사비밀을 秦福山에게 보고했다. 李乃琦(29·교사)는 군사상의 비밀을 金祖惠 영사에게 보고했다. 이들은 경찰에 체포되어 재판을 받았으며 군기보호범위반으로 구형을 받았다. 陳芳林은 징역 2년, 秦福山은 징역 2년 6개월의 구형을 받았다. 李殿升, 郭玉亭, 李乃琦는 모두 무혐의로 불기소 처리되었다.<sup>29)</sup>

이 사건에 뒤이어 10월 23일 新義州中華商會의 王政維 書記가 같은 군기보호범위반으로 신의주경찰서에 검거되었다. 이로 인해 신의주중화상회의 업무는 거의 마비되어 화교에 대한 연락업무는 영사관에서 취급했을 뿐 아니라 동 상회의 회원은 王政維 書記가 검거된 이후 경찰로부터 의혹을 사지 않기 위해 영사관 출입은 물론 상회의 사무도 전연 관여하지 않으려 했다.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이 줄어들면서 사실상 동 상회는 해산상태에 빠졌다. 신의주영사관은 동 상회 회장 趙介宸으로하여금 정식으로 정리 폐쇄하도록 조치했다.<sup>30)</sup> 그러나 실제로 신의주중화상회가 폐쇄되지는 않았다. 한편, 金祖惠 영사는 본국 외교부의 명령으로 귀국했다.

신의주영사관 다음으로 조선총독부경무국의 경계를 받았던 곳은 주경성총영사관 鎮南浦辦事處였다. 張義信(38) 진남포관사처 主事는 “일본의 신문은 자국의 입장을 유리하게 유도하기 위해 과장된 보도를 하고 있어 믿기 어렵다”고 보고 있었으며, “上

28)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 帝國議會說明資料 第1卷』(復刻板), 不二出版, 1994年, 1095쪽.

29) 高等法院檢事局思想部, 『支那事變以降に於ける鮮内滿洲國人, 中華民國人の時局關係犯罪に關する調査』, 『思想彙報』 제20호, 1939년9월

30) 1937年12月10日, <支那人ノ動靜 1. 新義州中華商會ノ解散>, 『治安狀況』, 『京城地方法院檢事局文書』(한국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海戰에서는 수개월을 경과했지만 어떠한 진전도 없고, 특히 南京 空爆은 전후 수십 차례에 걸쳐 이뤄졌지만 중국정부는 미동도 하지 않은 것을 보면, 事變은 장기전에 돌입할 것을 각오해야 한다.”는 인식을 했다.<sup>31)</sup>

張義信 主事は 盧溝橋事件 직후 楊兆泰(30·요리점직원)에게 군사기밀을 탐지 수집 하라는 지령을 내렸다. 楊兆泰는 지령에 따라 7월16일 平壤의 일본 군대의 철도수송 수량, 화북으로 출동하는 비행기가 15대라는 정보를 관사처에 보고했다. 吳松齡(31·중화상회통역·山東省掖縣出身·평양부거주), 楊雲珣(45·하숙집·登州府·진남포부거주), 楊春亭(31·노동자·登州府), 王學政(33·목수·文登縣·평양부거주), 李光華(32·직공·河北省交河縣·평양부거주), 楊瑞興(32·交河縣·철공소 노동자)는 공모하여 노구교사건 발발 당시 평양부내에서 약 10차례에 걸쳐 평양비행제6연대 소속 비행기의 출동상황 및 군대수송 상황 등을 탐지하여 張義信 主事에게 제보했다. 또한 平文學(25·노동자·奉天省·평양부거주·滿洲國국적), 孫殿約(45·하숙집), 劉鑑章(57·인부감독), 黃受寬(56·농업), 兪和成(35·만두제조직공)은 楊春亭이 군사기밀을 수집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를 수차례에 걸쳐 자택에 숨겨주었다. 이 군사기밀 제보와 범인 은닉으로 그들은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았다. 吳松齡과 楊雲珣는 징역 5년, 楊春亭은 징역 3년, 王學政과 李光華는 징역 2년 6개월, 平文學은 징역 2년이 각각 언도되었다.<sup>32)</sup> 그러나 이러한 군사기밀사건의 중심에 있던 張義信 主事は 12월 19일 임시정부 지지를 표명했다.<sup>33)</sup>

重慶國民政府가 정식으로 총영사대리로 임명했던 陳祖儷(46)이 근무하던 부산영사관의 통역 楊運智는 부산시가의 지도를 입수하기 위해 부산부 瀛州町의 문방구점 天命堂에 잡지주문을 했지만, 당지의 경찰서가 이를 사전에 탐지하고 방지했다.<sup>34)</sup> 한편, 인천관사처주임 曾廣勛(34)은 범한생 총영사의 환기 요구에 응하지 않았지만 특별히 군사정보를 수집한 활동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본국으로 귀국했다.

范漢生 총영사의 임시정부 지지와 상기의 군사기밀사건으로 조선의 총영사관과 영

31)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 帝國議會說明資料 第1卷』(復刻板), 不二出版, 1994年, 1095쪽.

32) 高等法院檢事局思想部, 『支那事變以降に於ける鮮内滿洲國人, 中華民國人の時局關係犯罪に關する調査』, 『思想彙報』第20號, 1939年9月. 47-48쪽.

33) 安井三吉, 『帝國日本と華僑: 日本・臺灣・朝鮮』, 青木書店, 2005年, 251쪽.

34)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 帝國議會說明資料 第1卷』(復刻板), 不二出版, 1994年, 1095쪽.

사관은 큰 재판을 겪었다. 중경국민정부를 지지하는 영사관원은 본국으로 귀국하고 范漢生 총영사와 임시정부를 지지하는 영사관원은 잔류를 선택했다. 范漢生 총영사가 1938년 1월 17일 朝鮮總督府外事部에 제출한 영사관원의 명단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경성총영사관은 총영사 范漢生, 부영사 季達(부재), 수습영사 揚嘯鶴, 주사 葉俊愷, 주사 葉永靑이었다. 앞에서 살펴본 국기환기사건 때 저항하여 체포되었던 葉俊愷가 主事로 임명된 것이 흥미롭다. 인천관사처주사는 王永晉, 진남포관사처주사는 王建功이 각각 임명되었다. 신의주영사관은 이전 원산부영사관의 영사로 근무하던 馬永發이 신임 영사로 임명되었고 主事는 馮文雄이 각각 임명되었다. 원산영사관 영사는 이전 진남포관사처주사로 근무했던 張義信이 임명되었으며 주사는 揚紹權이 각각 임명되었다. 부산영사관의 신임 영사는 范漢生 총영사의 측근인 袁毓棠 전 경성총영사관 서기였다.<sup>35)</sup> 이렇게 볼 때 조선의 영사관원은 范漢生 총영사의 임시정부 참가를 지지했거나 이전 그에 반대했지만 동조자로 돌아선 葉俊愷, 張義信 등으로 구성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들 영사관원 가운데 부인이 일본인 여성이 상당히 많다는 점이다. 1942년 1월 1일 현재 부산영사인 袁毓棠(47)의 부인은 이시다 치요코(石田千代子·28)였다. 張義信(43) 원산영사의 부인은 아라이 토미(荒井トミ·43)였다. 인천관사처주임인 王建功(35)의 부인은 왕다키코(王多喜子·33)였다.<sup>36)</sup> 이러한 결혼관계도 그들이 임시정부를 지지하게 만들고 조선의 임시정부 영사관에 잔류하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중일전쟁 발발 초기라 할 수 있는 1937년 7월부터 1939년 7월 6일까지의 2년 사이 시국 관계 牒報의 범죄로 검거되어 송치된 화교는 42명(이 가운데 3명은 만주국 국적)이었다. 위반 범죄별 인원은 군기보호범위반이 2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3명은 外患罪를 함께 범했다. 사건 발생 장소는 평양, 신의주, 청진의 3개소에 한정되어 있었다. 이 3개 지역은 군사상 중요한 지리적 위치에 있었다는 점, 가까운 지역에 중화민국 영사관이 위치해 있는 것이 작용했다.

35) 1938年1月17日, 范漢生 京城總領事가 朝鮮總督府官房外務部長 松澤龍雄에 보낸 공문, 『外務部 昭和十三年 領事館關係綴』(한국 국가기록원 소장), 688-689쪽.

36) 1942年, 『領事表關係綴』, 『外務課 昭和十七年 領事館表關係』(한국 국가기록원 소장), 1028-1037쪽.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은 陸海軍刑法違反의 造言飛語罪로 13명이었다. 이 범죄의 대부분은 일본군의 승리를 부정하고 중화민국군의 승리를 주장하는 것으로 발생지역은 경성, 함흥, 평양, 신의주, 부산, 전주 등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었다. 전주에서 만두 제조를 하는 賈維均(55)은 1938년 이번의 징집으로 수백, 수천 명의 군인이 출정하지 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일본군이 상해를 점령했다고 하지만 2개월 후에는 3명의 중국인 장교가 상해를 탈환하여 통치할 것이며, 일본의 군사 관련 신문기사는 믿을 것이 못된다고 말했다. 賈維均은 육군형법 제99조 造言飛語罪 위반으로 禁錮 10개월의 처분을 받았다.<sup>37)</sup>

부산 거주의 劉文學(36·야채행상)은 중국의 비행기 19대가 일본 九州와 東京을 습격하여 다수의 일본인이 사망했다는 사실무근의 거짓말을 유포, 같은 위반으로 금고 6개월의 처벌을 받았다. 경기도 거주 張文有(22·행상)은 漢口放送局이 한구 부근 양자강 위에서 일본의 대형 기선 및 선박 110척이 중국 비행기의 폭격을 받고 침몰했다고 보도했다는 사실무근의 거짓말을 유포, 해군형법 제100조 위반으로 금고 6개월의 처분을 받았다.<sup>38)</sup> 藍淑楨(30·농업)은 현재 일본과 중국은 전쟁중이기 때문에 중국인이 조선에 거주하면 위협하며 우리들은 빨리 귀국하지 않으면 안 되고, 중국군은 지금 대승리를 거두어 일본군에 큰 손해를 주고 있다는 거짓말을 유포하여 육군형법 제99조 위반으로 금고 4개월의 처분을 받았다.<sup>39)</sup>

1939년 9월 이후에도 이와 같은 造言飛語의 유포로 체포되는 화교가 잇따랐다. 忠州 거주의 丁文華는 1939년 9월 일본은 물자의 결핍으로 당연히 패전할 것이며 현재 일본이 연전연승하고 있다는 신문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여 체포되었다.<sup>40)</sup> 1940년 3월 汪精衛 南京國民政府가 수립된 직후인 5월 郝春海는 현재의 신문보도의 절반 이상이 거짓이며 장개석이 항복하여 화평이 실현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며 현재

37) 高等法院檢事局思想部, 「支那事變以降に於ける鮮内滿洲國人, 中華民國人の時局關係犯罪に關する調査」, 『思想彙報』 第20號, 1939年9月, 52쪽.

38) 高等法院檢事局思想部, 「支那事變以降に於ける鮮内滿洲國人, 中華民國人の時局關係犯罪に關する調査」, 『思想彙報』 第20號, 1939年9月, 46쪽.

39) 高等法院檢事局思想部, 「支那事變以降に於ける鮮内滿洲國人, 中華民國人の時局關係犯罪に關する調査」, 『思想彙報』 第20號, 1939年9月, 49쪽.

40) 朝鮮總督府警務局保安課, 『高等外事月報』 第4號 (昭和十四年十月分)(宮田節子編·解説, 『高等外事月報』(復刻版), 不二出版, 1988年, 182쪽).

중국에서 일본군의 세력이 미치는 곳은 점령지역뿐이고 중국을 원조하는 영국, 미국, 소련은 쉽게 항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불온언동’을 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sup>41)</sup> 이외에 治安維持法違反 1명(만주국 국적), 무고죄 1명, 범인은닉죄 4명이었다.

한편, 조선총독부는 화교의 시국사범이 42명인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혔다. “거주자의 총수에 비해 의외로 소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원인으로 항일의식이 강열한 분자는 대체로 사변 발발 당시 본국으로 귀국했으며, 친일적 색채가 강한 분자, 또는 민족적 정치적 의식을 가지지 못한 분자만이 잔류하고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지만, 그 주요한 원인은 역시 관계 당국의 엄밀한 사찰과 정탐의 강화가 그들에게 망동의 여지를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봐야 한다.”<sup>42)</sup> 1938년 12월 말 현재 조선 거주 화교의 인구는 9,983호, 4만1,339명으로 이 가운데 화교 시국사범은 42명에 불과하다는 것은 조선총독부의 지적대로 매우 적다고 할 수 있다. 조선총독부는 그 원인을 항일의식이 강한 화교가 귀국했다는 점, 치안 당국의 철저한 사찰에 있다고 보았지만, 이러한 상황은 중일전쟁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항일활동이 보다 격렬해지고 조직화 되는 양상으로 바뀌게 된다.

### III. 중일전쟁 후반기(1942-1945년)의 화교의 항일활동

조선총독부 치안당국에 검거된 시국사범 가운데 화교의 인원은 1941년 6명(가운데 2명은 中共八路軍관계), 1942년 26명(23명), 1943년 43명(42명), 1944년1월-9월 61명(1-5월 中共八路軍관계 25명)이었다.<sup>43)</sup> 이로 볼 때 화교의 항일활동은 1942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中共八路軍이 관계하는 시국 사건이 대부분을 차지한

41) 朝鮮總督府警務局保安課, 『高等外事月報』 第12號 (昭和十五年七月分)(宮田節子編·解説, 『高等外事月報』(復刻板), 不二出版, 1988年, 441쪽).

42) 高等法院檢事局思想部, 『支那事變以降に於ける鮮内滿洲國人, 中華民國人の時局關係犯罪に關する調査』, 『思想彙報』 第20號, 1939年9月, 42-43쪽.

43) 『第86回 (昭和十九年十二月) 官房·學務·法務·警務 帝國議會說明資料』, 『朝鮮總督府 帝國議會說明資料 第10卷』(復刻板), 不二出版, 1994年, 80쪽. 팔호안의 중공팔로군 관계 검거자 수는 高等法院檢事局, 『朝鮮檢察要報』 第4號, 1944年6月, 17쪽을 참고했음.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1은 1944년 5월 1일 현재 화교의 각 도별 인구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화교는 주로 조선의 북부지역인 평북(전체의 40%), 함북(15.3%), 평남(11.9%), 함남(10.0%), 황해(5.2%)에 거주했으며, 남부지역은 경기(10.2%) 이외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다. 그러나 화교의 항일사건은 이러한 인구 분포와 비례하는 것은 아니었다.

표1 1944년 5월 1일 현재 조선화교의 각 도별 인구 (단위: 명)

도별	남자	여자	합계	비중(%)	도별	남자	여자	합계	비중(%)
경기	4,842	2,486	7,328	10.2	황해	2,309	1,401	3,710	5.2
충북	244	139	383	0.5	평남	5,554	2,964	8,518	11.9
충남	586	322	908	1.3	평북	18,559	10,100	28,659	40.0
전북	633	344	977	1.4	강원	837	191	1,028	1.4
전남	458	163	621	0.9	함남	4,906	2,231	7,137	10.0
경북	326	163	489	0.7	함북	7,961	3,006	10,967	15.3
경남	726	122	848	1.2	총계	47,941	23,632	71,573	100.0

출처: 朝鮮總督府, 『昭和十九年五月一日 人口調査結果報告 其ノ一』, 1-15쪽을 근거로 작성.

주: 상기의 인구는 외국인 전체의 인구가지만 그 대부분이 화교였기 때문에 화교 인구로 간주해도 큰 문제는 없음.

### 1. 自起團事件과 中國青年團事件

함북 淸津府를 중심으로 활동한 화교 항일조직 自起團의 활동은 조선총독부가 제국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대표적인 항일활동으로 소개될 만큼 그 규모나 활동이 매우 광범위 했다. 화북지역 중공팔로군 소속 대원이 조선에 잠입하여 화교 장년과 노동자를 규합, 1938년 7월경 함경북도 淸津을 중심으로 自起團을 조직했다. 自起團은 청진 을 중심으로 군사정보의 제보, 방화 모략 및 철도 파괴 그리고 평양, 부산지방의 군사정보의 제보를 감행했다. 군사정보 제보는 1938년 7월부터 1941년 11월말까지 15 건에 달했다. 제보 내용은 淸津港, 羅津港, 釜山港에 상륙하는 육군부대의 수송상황, 羅南, 會寧, 平壤 등의 병영 및 비행장 등을 촬영하여 이를 화북의 중공팔로군에 통 보했다.

自起團에 의한 방화사건은 1938년 12월 20일경부터 1942년 2월까지 15건에 달했다. 自起團은 화약 등의 원료로 스스로 폭발하도록 제조한 ‘自來火’(일종의 다이너마이트)를 淸津 소재 大同百貨店 양복 진열대 등의 장소에 설치하여 동 백화점을 전소시켰다. 또한 청진, 羅南의 회사, 공장, 창고, 공설시장을 방화했다. 철도파괴사건은 1941년 7월 淸津에서 2건을 감행했다. 그중의 1건은 철도노선 곡선부의 捻釘(고정못)을 뽑아내어 열차전복을 기도했다. 또 다른 1건은 화차 車軸函내에 자갈을 투입, 차축을 불태워버리려 했다. 1943년까지 판명된 관계자는 총 41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33명이 체포되었다. 체포된 화교 가운데 15명에 대해서는 예심을 구형하고 18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예심을 청구한 15명은 1943년 8월 29일 및 10월 5일 공소 기각된 1명(사망)을 제외한 14명에 대해서는 免訴(공소권이 없어지고 기소를 면하는 것)의 예심종결판결이 내려져 검사가 항고 신청을 했다. 이 가운데 1명은 항고 기각의 결정을 확정하고, 13명은 京城覆審法院에서 심리중에 있었다.<sup>44)</sup>

다음은 中國青年團事件에 대해 살펴보자. 仁川府 중화요리점 松竹樓의 종업원인 譚文元(25·牟平縣), 평양부 거주 가구상인 劉開經(40·文登縣), 평양부에서 만두집을 경영하는 王雲章(33·文登縣)은 화교 劉穆齊, 鄭春成, 王之鴻과 1940년 12월 평양부 내에서 회합·협약하여 중공팔로군에 조선내의 재정, 경제, 기타에 관한 정보 및 군사상의 비밀을 탐지 제보할 목적으로 無名の 첩보단(그 뒤 中國青年團으로 호칭)을 조직했다. 중국청년단의 단장에는 劉穆齊, 부단장에는 鄭春成을 추대했다. 그 나머지 인원인 鞠慶良(43·榮城縣·평양거주·요리점영업), 曲光州(27·榮城縣·평양거주·요리점영업), 劉傳傑(25·榮城縣·평양거주·요리점조리사), 干芝蘭(38·文登縣·평양거주·야채재배), 王之榮(29·榮城縣·海州郡거주·조리사), 吳道財(37·關東州·평양거주·요리점경영), 祝心儀(31·牟平縣·평양거주·농업)은 각각 中國青年團에 가입했다. 중국청년단은 평양을 중심으로 경제 및 기타에 관한 정보 및 군사상의 비밀을 탐지했다. 祝心儀를 제외한 인원은 전원 1944년 2월 15일 예심이 구형될 예정이었다. 또한 錢鴻珍은 조선내의 군사 및 경제 기타 정보를 탐지 수집하여 중공팔로군에 제공할 목적으로 중국청년단에 가입, 일본군 출정부대의 이동정황, 물자의 생산 및 배급

44) 『第84回(昭和十八年十二月) 法務局 帝國議會說明資料』, 『朝鮮總督府 帝國議會說明資料 第8卷』(復刻板), 不二出版, 1994年, 109-110쪽.

정황 등을 탐지 수집하다 체포되었다. 錢鴻珍의 예심은 1944년 3월 17일에 열렸다.<sup>45)</sup>

## 2. 日東會事件

먼저 ‘日東會’가 조직된 경위는 高等法院檢事局 자료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1940년 2월 중공팔로군 유격대 소속 張世元으로부터 다액의 보수를 받는다는 약속 하에, 인천부에 거주하는 산동성 출신자 21명이 항일단체 ‘日東會’를 조직했다. 일동회는 1940년 2월 22일부터 1943년 4월 24일까지 약 3년 동안 방화 12건, 군의 첩보 제보 2건을 감행했다. 日東會의 방화로 초래된 재산손해는 약 68만원, 사망자는 2명이 발생했다. 1943년 12월까지 체포된 15명 가운데 9명은 外患, 放火, 군기보호범위반, 국방보안범위반의 죄로 京城地方法院의 예심이 1943년 10월 18일 청구되었다.<sup>46)</sup> 1944년 9월에는 9명의 피고의 예심종결결정서가 완료되어 이 결정서는 汪精衛政權 日本大使館에 송부되었다.<sup>47)</sup> 豫審終結決定書는 현재 일본 동경의 東洋文庫에 소장되어 있으며 필자가 가지고 있는 것은 결정서의 중국어 번역본을 필사한 것이다.

豫審終結決定書를 근거로 日東會事件을 보면 사건의 양상은 조금 다르게 나타난다. 史恒樂(34·登州府蓬萊縣)은 18세 때 산동성에서 중학을 졸업한 후, 1920년대 중반 부친 史祝三이 거주하던 인천부로 이주했다.<sup>48)</sup> 史祝三이 1936년 사망하자 그는 부친의 가업인 인천부 彌生町(구 지나정)에 위치한 復成棧(여관 겸 잡화점)을 경영하게 된

45) 高等法院檢事局, 『國防保安法第十六條に規正する犯罪調』, 『朝鮮檢察要報』 第4號, 1944년 6월, 9-11쪽.

46) 『第84回(昭和十八年十二月) 法務局 帝國議會說明資料』, 『朝鮮總督府 帝國議會說明資料 第8卷』(復刻板), 不二出版, 1994년, 110쪽.

47) 이 최종결정문은 1944년 5월 27일 경성지방법원 豫審係 조선총독부 판사 三幣直治가 쓴 것을 경성총영사관에 송부한 것이며, 다시 경성총영사 陳輝가 최종결정문을 일본대사관의 蔡 大使에게 송부한 것이다. 京城總領事館, 1944년 9월, <仁川僑案豫審終結決定書>, 『大使館所管領事館工作報告』, 『汪政權大使館檔案』(東洋文庫所藏, 22744-12-43). 菊池一隆(2011, 312-314쪽)은 이 자료를 활용하여 이 사건을 다루었다. 그는 이 사건을 ‘인천사건’으로 명명하고 사건 발생순으로 논의를 전개했지만 필자는 피고 순으로 배치하여 논의를 전개했다.

48) 史恒樂은 1942년 발행된 『華僑領取小麥粉詳細表』에 등장한다. 그는 彌生町11番地에 거주하고 가족은 10명이었다. 밀가루 배급량은 4포대였다.(仁川華商會, 『華僑領取小麥粉詳細表』, 中川勝美堂, 1942년 4월, 배성수씨 발표자료에서 인용).

다.<sup>49)</sup> 1939년 12월경 復成棧의 점원 孫德進의 권유로 산동성 牟平縣에 귀국중에 산동성 중공팔로군 유격대원 柳鐘田의 권유로 해당 부대의 于忠瑞 부대에 가입하고 비밀지령을 받았다. 비밀지령은 인천에서 同志의 획득, 군사비밀 및 재정경제상의 정보 탐지, 방화과괴공작의 실행, 이를 통해 일본후방지역의 혼란과 일본의 전력을 약화시켜 패전에 이르게 하라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지령을 받은 史恒樂은 먼저 同志의 획득에 나섰다.

1939년 12월 復成棧에서 점원 孫德進, 王培國<sup>50)</sup>과 모의하고 인천항 부근 군사상의 정보를 탐지하기 위해 無名團體 (뒤에 日東會)를 조직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고 준비하는데 그쳤다. 그때부터 1941년 9월까지 史恒樂은 孫德進, 王培國 2명과 협력하여 일본의 국방상의 이익을 방해할 목적으로 인천부내 재정경제의 상황에 관한 정보, 식량부족의 정보를 산동성과 연락하는 기선 平安丸의 선원 張鴻龢을 통해 상기의 于忠瑞에게 수차례에 걸쳐 전달했다.

史恒樂은 孫德進, 王培國과 함께 1940년 2월 22일 오후 1시 50분 직접 제조한 다이너마이트 4개를 인천부 港町 소재의 인천세관 구내 제1창고에 경비원, 인부 등이 부주의한 틈을 타 다이너마이트를 화물 가운데 투입했다. 그 결과 화재가 발생했으며 창고와 화물 전부가 전소, 약 12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史恒樂은 彌生町 거주 孫建治(25·牟平縣·和聚昌점원)와 공모, 本町3丁目4番地에 위치한 岡田時計店 부근의 상점 등을 방화했다. 그는 1943년 4월 20일 밤 12시경, 彌生町2番地 거주 方世能(44·榮城縣·농업)<sup>51)</sup>이 제조한 다이너마이트 1개를 孫建治에게 건넸다. 孫建治는

49) 復成棧은 여관 겸 상품판매 중개업을 겸업하는 이른바 行棧이었으며 세관 통관업도 담당했다. 復成棧의 1923년의 매상액은 3,400원으로 인천의 행잔 가운데서는 4번째로 규모가 컸다.(朝鮮總督府, 『朝鮮に於ける支那人』, 1924年, 107쪽) 또한 1928년의 매상액은 8,200원으로 1923년에 비해 많이 증가했다.(京城商業會議所, 『朝鮮に於ける外國人の經濟力』, 『朝鮮經濟雜誌』159號, 1929年3月, 34쪽). 사건 발생 당시 復成棧의 주소는 彌生町11番地였다. 일본의 신용조사기관인 商業興信所 조사에 復成棧은 1920년대부터 경영주 史祝三의 이름으로 1936년까지 등장한다.(이정희·송승석, 『근대인천화교의 사회와 경제-인천화교소장자료를 중심으로』, 2015년, 303-305쪽)

50) 王培國은 彌生町52番地에 거주하고 직업은 점원이며 가족은 3명, 밀가루 배급량은 4포대였다.(仁川華商會, 『華僑領取小麥粉詳細表』, 中川勝美堂, 1942年4月)

51) 方世能은 1942년에는 彌生町1番地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직업은 점원이었다. 그 후 동 2번지로 이사를 가고 농업으로 전직한 것으로 보인다. 가족은 2명이었으며 밀가루 배급량은 0.5포대였다.(仁川華商會, 『華僑領取小麥粉詳細表』, 中川勝美堂, 1942年4月)

다이너마이트를 岡田時計店 서쪽에 이웃한 共益社와 梅田常博의 주택 남쪽 골목쪽으로 다이너마이트를 던져 방화했다. 투척된 다이너마이트는 梅田常博, 岡田辰市, 樋野榮의 주택으로 들어가 폭발, 약 3만3천원의 재산손해를 발생시켰다.

이어 史恒樂은 孫建治와 공모하여 1943년 4월 23일 밤 8-9시경 집에서 다이너마이트 1개를 제조하고 이를 孫建治에게 건넸다. 심야 12시 지난 후 두 사람은 시내를 산보하여 新町29番地에 있는 ‘인천키네마’ 인근의 다방 ‘桃園고토’의 ‘若山’의 집에 이르렀다. 方世能은 망을 보고 孫建治는 ‘若山’의 주택 창고에 다이너마이트를 투입, 방화했다. 이 방화로 ‘若山’의 주택이 전소하고 이웃한 福田萬治郎, 脇坂, 岩崎久治, 瀬戸의 창고가 불타 3만수천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또 孫建治는 孫德進과 공모하여 1940년 5월 14일 밤 10시경 花町1丁目37-1番地에 있는 金山應, 金城鶴 소유의 4평 면적의 松枝堆에 孫德進이 건넨 다이너마이트를 던져 방화했다.

方世賢(37·榮成縣·농업)은 1934년경 경기도 安城邑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한 후, 3년 뒤 인천부로 이사, 日之出町에서 채소농사를 짓고 있었다. 1940년 8월 日之出町의 자택에서 方世能, 王志信(50·萊陽縣·농업)의 권유로 日東會에 가입했다. 1941년 2월 23일 밤 方世賢은 王志信, 王秉經(43·牟平縣·충북陰城郡거주)과 공모, 鶴翼町507番地の 御多福棉株式會社 소유의 위생재료공장에 침입, 方世賢이 제조한 다이너마이트를 면화에 투입, 화재가 발생, 약 4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王志信과 方世能은 1941년 11월 28일 밤 10시경 花町1丁目34番地 河村宗人 경영의 정미소에 자체 제조한 다이너마이트를 던져 방화, 공장 및 창고 각 2칸, 관리인 숙사 1칸, 그리고 이웃한 杉野精米所의 일부를 불태워, 약 35만원의 손해를 발생시켰다.

方世英(34·榮城縣)은 1936년 인천부 朱安町에 이주하여 야채재배를 했다. 1941년 6월 方世賢의 주택에서 方世能으로부터 중국인의 행복과 일본 타도를 위해 日東會 참가를 권유받고 참가했다. 그는 方世能, 같은 朱安町 거주 方崇學(34·榮城縣·농업)과 조선 거주 산동성 출신 화교는 산동성에서 일본군과 교전중인 중공팔로군을 돕기 위해 군사비밀과 경제재정 관련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정보 수집을 공모했지만 구체적인 행동에 이르지 못했다.

王秉經은 16세 때 조선으로 이주, 충북 음성군에서 만두집을 열었다. 1942년 6월 1

일 산동성 귀국시 芝罘(煙臺)에서 孫建治를 만나 그의 권유로 日東會에 가입하고, 그 후 군사비밀 수집을 의도했으나 구체적인 행동에 이르지 못했다.

王志信(50·萊陽縣·농업)은 24세 때 조선에 이주 함경남도 興南邑에서 약 3년간 농업에 종사한 후, 인천으로 이주하여 야채재배를 하고 있었다. 1940년 6-7월 日之出町의 方世賢의 주택에서 方世能의 권유로 日東會에 가입했다. 1942년 7월 王志信의 주택에서 吳振梅(44·牟平縣)와 모의하여 인천 부근의 군사상의 정보 및 재정경제 관련 정보수집을 모의했지만, 구체적인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 吳振梅는 16세 때 인천에 이주, 松岷町에 거주하며 야채재배 농사를 짓고 있었다. 1942년 7월 王志信의 주택에서 그의 권유로 日東會에 가입, 군사상의 정보를 수집하려 했지만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sup>52)</sup>

위에서 검토한 결과, 高等法院檢事局(1943년)과 豫審終結決定書(1944년)의 日東會事件의 기술 내용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高等法院檢事局(1943년)은 日東會의 활동에 의해 2명이 살해되었다고 나와 있지만 豫審終結決定書(1944년)에는 없다. 또한 高等法院檢事局(1943년)에 등장하는 1940년 5월 인천항의 군 관련 선박의 출입에 의거한 병탄물자의 수송상황을 탐지하여 유격대원 張世元을 통해 중공팔로군에 제공했다는 사실도 豫審終結決定書(1944년)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高等法院檢事局(1943년)에 나오는 인천화물역플랫폼, 운송점 창고 방화의 사실은 豫審終結決定書(1944년)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豫審終結決定書(1944년)가 상대적으로 뒤에 나온 판결서인 만큼 훨씬 신빙성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한편, 상기 피고에 대한 예심종결 결정에 따르면, 피고 史恒樂, 方世能, 孫建治, 王志信은 外患軍機保護法, 國防治安法 위반으로, 피고 方世英, 王秉經, 方崇學, 吳振梅는 외환군기보호법 및 국방치안 위반으로, 피고 方世能, 孫建治, 方世賢은 혐의가 있어 경성지방법원의 공판에 회부되었으며, 피고 史恒樂, 王志信, 方崇學, 吳振梅는 공소 기각되었고, 피고 方世英, 王秉經은 혐의 불충분으로 免訴되었다.

그런데 피고 史恒樂, 王志信, 方崇學, 吳振梅가 공소 기각된 것은 이들이 형무소에

52) 京城總領事館, 1944년9월, ‘仁川僑案豫審終結決定書’, 『大使館所管領事館工作報告』, 『汪政權大使館檔案』 (일본 東洋文庫所藏, 22744-12-43).

서 사망했기 때문이다. 日東會事件의 주동자인 史恒樂은 1944년 2월 20일 수감중이던 경성의 西大門刑務所에서 사망했다. 王志信은 1944년 1월 8일, 方崇學은 1월 12일, 吳振梅는 같은 西大門刑務所에서 각각 사망했다.<sup>53)</sup> 이들 4명이 같은 형무소에서 비슷한 시기에 사망한 것은 가혹한 고문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西大門刑務所는 조선의 많은 독립운동가가 고문을 이기지 못해 옥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동 형무소에서 이렇게 외국인인 4명의 화교가 항일활동하다 고문으로 인해 옥사한 것은 매우 새로운 사실이다.

### 3. 각 지역별 화교의 항일활동

#### 1) 부산·대구·전주지역

부산은 화교 인구에 비해 화교의 항일활동이 상당히 활발한 지역이었다.(표1 참조) 釜山府 富平町3丁目78番地에 거주하는 許作棋(23·蓬萊縣·요리사)과 草梁町571番地 거주 房毓芝(23·蓬萊縣·요리점회계)는 1941년 5월 京城府에서 화교 干文柱(26·蓬萊縣·회사통역)의 권유로 중공팔로군을 위해 경성, 인천, 부산의 일본군 군사비밀을 탐지하고 부산의 마키노시마(牧之島)에 위치한 朝鮮重工業株式會社 및 기타 몇 개소의 산업시설에 방화를 했다. 許作棋와 房毓芝는 경찰에 체포되어 1943년 12월 17일 釜山地方法院에 사건·접수되었다.<sup>54)</sup>

干文柱는 상기의 사건 이외에 許作棋와 房毓芝와 공모하여 부산 제2부두 소재 육군창고 이외 부산 타 3개 시설, 경성 및 인천의 4개 시설을 방화했다. 게다가 釜山大

53) 서대문형무소는 統監府에 의해 1908년 당시 西大門峴底洞(현 서울시 西大門區 義州路 247번지) 獨立門 근처의 京城監獄으로 개설되었고, 일제강점 직후인 1912년에는 西大門監獄, 1923년에는 서대문형무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서대문형무소는 전국 28개소의 형무소 및 지소 가운데 가장 많은 직원이 배치되었으며 1937년에는 총 343명의 직원이 근무했다. 수감 인원도 가장 많았다. 한국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인 柳寬順, 安昌浩, 金九, 呂運亨, 韓龍雲, 洪命憲, 金三龍 등이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다. 서대문형무소는 해방 직후인 1945년 11월 서울형무소, 1967년 서울구치소, 1987년 서울구치소가 경기도 의왕시로 이전된 후, 1998년 서대문형무소역사관으로 개관했다.(서대문구편, 『독립과 민주의 현장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2010년).

54) 高等法院檢事局, 『國防保安法第十六條に規正する犯罪調』, 『朝鮮檢察要報』 第4號, 1944年6月, 11쪽.

橋 이외 몇 개 시설을 파괴하기 위해 朝鮮火藥株式會社 火藥貯藏庫의 화약을 절취하려했으나 미수로 끝났다. 또한 조선총독부 南次郎 총독의 암살을 모의하여 이를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했다. 穆廣田(31·榮城縣·요리사)은 許作棋 등과 함께 부산부의 朝鮮重工業株式會社의 방화를 감행했다. 王可田(24)은 1943년 10월 중순경 許作棋로부터 “자신이 가까운 시일에 支那에 귀국하여 공산팔로군의 대원이 되기 때문에 부산의 군사 수송의 상황, 병영 등의 신설 개수와 소재지 등을 통보해줄 것”을 부탁받자, 이를 응낙했다. 또한 王可田은 같은 해 12월 상순경 미리 입수한 휘발유 가운데 약 1승을 방화용으로 許作棋에게 제공했다. 干文柱, 穆廣田, 王可田은 당국에 체포되어 1944년 3월 부산지방법원에 사건·접수되었다.<sup>55)</sup>

산동성 即墨縣 거주의 선원인 蘇蘭亭(34), 韓見都(40), 蘇雀芝(25), 趙子先(38), 王丕贊(45), 李仁智(25), 呂正盛(25)은 군용 정크선에 승선하여 1944년 8월 4일, 5일, 7일의 3일간에 걸쳐 蔚山港의 수심을 조사하다 蔚山憲兵分隊에 발각되어 체포되었다. 韓見都는 重慶國民政府 소속 山東第1軍第1旅長 姜力天의 부하로 3년간 근무하여 제대한 후, 고향 即墨縣에 귀향한 이후에도 姜力天과 연락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姜力天이 1943년(원문은 1933년) 음력 7월 10일(양력 8월 10일) 韓見都에게 蘇蘭亭과 蘇雀芝를 자신에게 데려올 것을 지령, 그는 두 명을 데리고 8월 12일 姜力天이 활동하던 산동성 膠縣石嶺屯을 방문했다. 그곳에서 姜力天은 다음과 같은 지령을 하달했다. (1) 선박의 약탈, (2) 정박하는 항구의 시설 상황 조사, (3) 각지의 중요항만 시설에 대한 방화, (4) 각지의 항로 상황 조사, (5) 중요한 생산 공장의 조사. 이들 3명은 靑島에서 선원 4명(趙子先, 王丕贊, 李仁智, 呂正盛)을 동지로 획득하고 大連으로 건너가 安東에서 제59호 安東丸에 승선, 大連에서 군용 양말을 선적하고, 1944년 4월 2일 일본 佐賀縣 唐津항을 출발, 17일 전라남도 羅老島에 기항, 다시 6월 4일 唐津항에 입항, 그곳에서 군용 목재를 적재하고 부산항으로 출항, 도중 폭풍을 만나 8월 3일 蔚山에 표착, 울산항 부근의 수심을 탐사하다 체포되었다.<sup>56)</sup>

한편, 이외에도 1943년 겨울 부산부에서 ‘平和樓事件’이 발생했다. 富平町 소재 중

55) 高等法院檢事局, 『國防保安法第十六條に規正する犯罪調』, 『朝鮮檢察要報』 第4號, 1944년 6월, 12-13쪽.

56) 高等法院檢事局, 『重京政權系の陰謀員檢舉(釜山檢事正報告)』, 『朝鮮檢察要報』 第8號, 1944년 10월.

화요리점 平和樓에서 화교 몇 명이 마작을 하고 귀가하던 王氏가 거주지인 影島로 귀가하던 도중, 영도다리에서 부산헌병대의 검문을 받았다. 당일 부산의 田中造船所에서 방화사건이 발생, 부산헌병대가 삼엄한 검문을 펼치고 있었다. 부산헌병대는 王氏를 비롯한 화교 20여명을 혐의자로 지목, 이들을 심문조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고문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고 나머지 화교도 1개월-1년간 투옥되었다.<sup>57)</sup> 그러나 이 ‘平和樓事件’에 대해서는 조선총독부 자료에서 이를 입증할 근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단정할 수는 없다.

다음은 대구화교의 항일활동. 大邱府 거주 趙錫九<sup>58)</sup>(40·河北省交河縣·雙和永支配人)<sup>59)</sup>, 李鳳瑞(33·河北省交河縣·음식점경영)<sup>60)</sup>, 張淸貴(24·河北省交河縣·음식점경영)는 대구부의 일본군 군사비밀의 탐지와 제보를 했다. 趙錫九는 본적지 귀가 중 중공팔로군으로부터 대구지방의 情勢에 관해 審問을 받자 이에 대해 주둔병력, 동원 상황, 병력수송상황, 인구, 주요기관 등의 정보를 제공했다. 조선에 돌아온 후에도 趙錫九는 일본군의 동정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의 탐사·보고의 지령을 받고 李鳳瑞, 張淸貴와 공모, 수차례에 걸쳐 일본군의 병력동원 및 수송상황을 탐지하여 제보했다. 李鳳瑞는 趙錫九 등과 별도로 1939년 6월부터 9월까지 본적지에 귀국했을 때 중공팔로군으로부터 일본군의 동정탐지, 군사비밀의 사진 입수, 관청과 학교 등의 중요 건

57) 조세현, 『부산화교의 역사』, 산지니, 2013년, 109-110쪽.

58) 1942년 당시 趙錫九는 大邱中華商會의 常務委員이며 화교의 대표적인 제조공장인 雙和永의 지배인으로 대구 화교사회의 지도자의 한 명이였다. 河北省 交河縣 출신으로 중국에서 소학교를 졸업했다.(1942年, <大邱中華商會職員履歷表>, 『駐釜山領事館轄境各中華商會備案及其章程等』, 『汪偽僑務委員會檔案』(中國第二歷史檔案館所藏, 2088-385))

59) 雙和永 주물공장은 1923년 11월 자본금 5천원으로 구 전매청 주차장 근처 100평의 부지에 설치되었다. 주로 술과 난로를 제조했다. 1920년대와 1930년대의 지배인은 賈廣發이었고 그는 河北省 交河縣 출신이었다.(이정희, 『20세기 전반기 대구지역 화교의 경제적 활동(1905-1955년)』, 『大丘史學』 第80輯, 2005년, 95-100쪽) 당시 京城의 雙和祥, 平壤의 雙和利와 같은 계열의 주물공장이었으며, 본사는 중국 安東(현 丹東)에 있는 福聚成(1919년 설립, 지배인은 宋亮明)이었다. 일제강점기 화교의 주물공장의 지배인과 직공은 거의 대부분이 河北省 交河縣(현 泊頭市) 출신이었다. 화교의 주물업에 대해서는 李正熙, 『近代朝鮮華僑製造業研究-以鑄造業爲中心』, 『華僑華人歷史研究』2009年第I期·總第85期을 참조 바람.

60) 1942년 大邱中華商會의 執行委員이며 당시는 雙和永의 회계로 근무하고 있었다. 전쟁말기에 접어들어 선철 부족이 심각 雙和永이 가동을 중단, 음식점경영으로 전직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 私塾 졸업.(1942年, <大邱中華商會職員履歷表>, 『駐釜山領事館轄境各中華商會備案及其章程等』, 『汪偽僑務委員會檔案』(中國第二歷史檔案館所藏, 2088-385))

조물 방화 등의 지령을 받아 활동했다. 이들 3명은 당국에 체포된 후 1944년 5월 13일 대구지방법원에 사건·접수되었다.<sup>61)</sup>

그런데 이 항일사건은 당시 대구에 거주했던 徐國勳에 의해서도 확인되었다.<sup>62)</sup> 徐國勳은 1921년 산동성 牟平縣에서 태어나 이 사건이 터지기 직전인 1943년 대구에 이주했다. 그는 대구화교학교에서 교원, 교장으로 오래 동안 근무하다 1983년 미국 미시건주로 재이주를 했다. 그는 2005년 蕭相瑗 대구화교협회장에게 보낸 편지 속에 이 사건을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1944년(저자 주: 1943년의 잘못) 겨울 몇 명의 교포가 雙和永의 탁자 위에서 마작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당시 雙和永은 원료 결핍으로 공장이 가동 중지된 상태였음) 어느 날 저녁 몇 명의 사복 헌병경찰이 마작을 하고 있던 이들을 대구헌병대로 체포하여 모진 고문을 했다. 그들 가운데 雙和永의 財務經理(저자 주: 李鳳瑞)는 모진 고문으로 몇 차례나 자살을 기도했다. 후일 여러 날의 고문에도 범죄의 증거가 나오지 않자 체포된 사람 대부분은 석방되었다. 다만 趙老(저자 주: 趙錫九) 한 사람은 재판을 받아 투옥되었다. (상세한 죄명은 모름) 일제 투항 직후인 1945년 8월 趙老는 출옥했다. 그는 연로한 몸이 쇠약해지고 오랜 수감생활의 고통으로 출옥 얼마 되지 않아 서거했다.<sup>63)</sup>

전라도 지역은 화교의 인구가 적은 지역인 관계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항일활동이 적었다. 전라북도 錦山郡 금산읍 中島里 496번지 거주 李延枚(19·牟平縣·전북錦山 거주·요리점)는 일시 귀국중이던 1943년 4월 11일 산동성 주둔 중공팔로군 소대장 張仲平에게 조선내 군대수송상황 및 해군기지, 군함의 동향을 제보했다. 그는 중공팔로군의 정보원으로서 조선으로 돌아온 이후 일본에서 사용중인 無線符號, 식량사정, 열차 및 기선의 운항 상황, 비행장과 비행기 대수, 군대소재지, 병력 인원을 탐지했다. 또한 李延枚는 조선인에게 중국은 장래 조선을 일본의 질곡으로부터 해방·독립

61) 高等法院檢事局, 『國防保安法第十六條に規正する犯罪調』, 『朝鮮檢察要報』 第4號, 1944년 6월, 16-17쪽.

62) 徐國勳씨는 2016년 2월 28일 미국 미시건주 자택에서 노환으로 서거했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63) 원문은 다음과 같다. “在一九四四年的冬天, 有幾位僑胞經常在雙和永的櫃上打麻將作消遣(那時雙和永已因原料缺乏而停工). 忽然有一天晚上來了幾位便衣憲警, 將這幾位打麻將的人提到大邱憲兵隊, 用嚴刑拷打. 其中雙和永的財務經理, 因為受刑太重自殺數次. 後來經過多日的拷問也問不出犯罪證據. 被提的人大部分釋放, 只有趙老一人被判入獄(不詳細是什麼罪名), 直到日帝投降後, 於一九四五年八月趙老出獄. 終因年老體衰, 經過多日的監獄折磨, 出獄不久即告逝去.”

시켜줄 용의가 있다는 뜻을 선전하고 철도 및 교량의 파괴, 주요한 건물의 방화를 모의했다. 그는 탐지한 첩보를 京城府鐘路5丁目에 있는 永春泰의 王德綽에게 제보했다. 王德綽은 귀국중이어서 당국에 체포되지 않았다. 李延枚은 당국에 체포된 후 1944년 5월 2일 전주지방법원에 사건·접수되었다.<sup>64)</sup>

표2 조선의 각 지방법원에 사건·접수된 화교 시국 사범 일람(1944년)

接受年月	接受法院	성명·연령·출신지·직업·거주지	혐의 내용
1944	신의주	畢可賤(53·榮城縣·新華堂경영) 畢漢淸(63·榮城縣·鴻增源경영) 劉崇欽(21·榮城縣·義興園직원)	援蔣物資獲得資金提供
1944.1	함흥	성명 미상	군사정보 탐지 모의
1944.5	청진	孫登亨(27·萊州府·함북회령거주·농업)	군사정보 탐지
1943.12	해주	錢鴻珍	군사정보및물자생산·배급정황 탐지, 중국청년단원
1944.1		田希豊	군사정부 탐지 및 제보
1944.2		許寶善	군사정보·관청정보 탐사
1944.3	대전	孫建功(32·牟平縣·만두집경영) 杜昭敏(32·德盛興점원·인천거주) 釗仁忠(38·인천거주) 李某(35) 杜仰周(33·포목상·인천거주)	군사정보 탐지 및 방화
1944.4	경성	周振璞(31·牟平縣·무직·인천거주) 周振擊(27·牟平縣·무직·인천거주)	군사정보 탐지 및 제보
1944.5		張泰瑞(43·文登縣·요리업)	군사정보 탐지 및 제보
		王本芝(여성·27·文登縣·무직)	
		張本榮(25·榮城縣·요리업) 張慕氏(19·張本榮의 처)	
1943.12	부산	許作棋(23·蓬萊縣·요리사) 房毓芝(23·蓬萊縣·요리점회계)	군사비밀 탐지 및 방화
1944.4		干文柱(26·蓬萊縣·회사통역·충북단양)	군사정보 탐지 및 방화
		穆廣田(31·榮城縣·요리사)	
		王可田(24)	
1944		蘇蘭亭(34·卽墨縣거주·선원) 韓見都(40·卽墨縣거주·선원) 蘇雀芝(25·상동·선원)	군사정보 탐지

64) 高等法院檢事局, 『國防保安法第十六條に規正する犯罪調』, 『朝鮮檢察要報』 第4號, 1944年6月, 15-16쪽.

		趙子先(38 · 상동 · 선원) 王丕贊(45 · 상동 · 선원) 李仁智(25 · 상동 · 선원) 呂正盛(25 · 濟南縣 · 선원)	
1944.5	대구	趙錫九(40 · 河北省交河縣 · 雙和永支配人) 李鳳瑞(33 · 河北省交河縣 · 음식점경영) 張清貴(24 · 河北省交河縣 · 음식점경영)	군사정보 탐지 및 제보
1944.5	전주	李延枚(19 · 牟平縣 · 요리점 · 전북錦山)	군사정보 탐지 및 제보

출처: 高等法院檢事局, 『援蔣物資獲得資金提供(新義州檢事正報告)』, 『朝鮮檢察要報』 第3號, 1944年5月, 27-28쪽. 高等法院檢事局, 『國防保安法第十六條に規正にする犯罪調』, 『朝鮮檢察要報』 第4號, 1944年6月, 9-17쪽을 근거로 작성.

## 2) 경성 · 인천 · 대전지역

인천부 花町2丁目14番地 거주의 周振璞(31 · 牟平縣 · 무직)과 仁川府京町232番地 거주의 周振聲(27 · 牟平縣 · 무직)은 형제 관계로 그들의 부친인 周永芳은 산동성에서 중공팔로군 유격대 본부의 副官, 그들의 형인 周致臣은 周永芳의 보좌역을 담당하고 있었다. 周振璞은 1941년 7월 중순 귀향했을 때 周致臣의 권유로 중공팔로군에 가입하고 牟平縣 奎容山の 牛占廟에서 1주일간 교관 周元紹로부터 군사훈련과 선전첩보의 훈련을 받았다. 또한 周振璞은 7월 20일경 고향 牟平縣南岷村東塞의 자택에서 周永芳에게 京城方面의 식량상황, 항공 병력의 현황, 치안상황과 민심의 동향 그리고 京城으로부터 華北방면으로 이동하는 군대의 출병상황을 제보했다. 같은 해 9월 하순 조선에 돌아온 그는 周永芳과 유격대 副司官인 相玉亭으로부터 조선내 군대의 이동상황, 항공 병력, 징병실시의 상황, 그리고 식량상황을 탐지하여 제보하라는 명령을 받고 1944년 1월 중순경까지 경성, 인천방면에서 각종의 군사기밀을 탐지하여 전후 5회에 걸쳐 相玉亭에게 제보했다.

한편, 周振聲은 1943년 2월 중순 귀국시 周振璞과 같은 방식으로 중공팔로군에 가입했다. 그때 부친 周永芳에게 仁川方面의 식량배급의 상황, 치안상황, 민심의 동향, 병력 인원과 병력이동 상황, 그리고 항공병력의 현황 등을 제보했다. 4월 상순 조선에 돌아와서는 周永芳으로부터 조선내의 군대이동 상황, 항공 병력의 현황, 징병, 식량 등의 주요 사항에 관한 정황의 제보지시를 받고 1944년 2월 상순까지 인천방면의 각종 군사기밀을 탐지하여 전후 5회에 걸쳐 相玉亭에게 제보했다. 周振璞과 周振聲은

당국에 체포되어 1944년 4월 28일 경성지방법원에 사건·접수되었다.<sup>65)</sup>

京城府 거주 張泰瑞(43·文登縣·요리업), 王本芝(여성·27·文登縣·무직), 張本榮(25·榮城縣·요리업), 張慕氏(19·張本榮의 처)는 중공팔로군 관계자의 지령을 받아 1943년 6월경부터 1944년 1월 중순까지 京城府 기타 각지의 군대동원상황, 지원병제 도상황, 식량문제 등의 군사기밀 및 경제정보를 탐지하여 이를 중공팔로군 점령하의 산동성 본적지 부락의 村長에게 제보했다. 4명은 1944년 5월 5일 경성지방법원에 사건·접수되었다.<sup>66)</sup>

충북 丹陽郡 단양면 下坊里 거주 孫建功(32·牟平縣·만두집경영)은 1942년 5월 초순 고향인 산동성 牟平縣에 귀향중 중공팔로군 소속 田育章 외 2명의 강요에 의해 동 군대에 입대했다. 같은 해 6월 하순경 동 군대로부터 조선에 돌아가서 군 관계 창고, 大家屋, 관청, 철도를 방화하거나 파괴할 것과, 군 관계 및 지방 식량 사정 등을 탐지 제보할 것 등의 지령을 받아 조선에 돌아왔다. 그 후 孫建功은 5월 말경 같은 지령을 받고 조선에 돌아 온 杜昭敏(32·德盛興점원), 釗仁忠(38), 杜仰周(33·포목상), 거주지 미상의 李모(35)와 모의하여 같은 해 9월 24일 오전 1시경 丹陽郡 北下里 소재의 西原武容 외 1명이 공동으로 경영하는 정미소 1개 棟을 방화했다. 이들 5명의 화교는 당국에 체포되어 1944년 3월 9일 대전지방법원에 사건·접수되었다.<sup>67)</sup>

### 3) 신의주·청진·해주지역

畢可賤(53·榮城縣)은 新義州常盤町9丁目1番地에서 중국식 과자점 新華堂, 畢漢清(63·榮城縣)은 잡화점 鴻增源을 각각 경영하고, 劉崇欽(21·榮城縣)은 평북 朔州郡九曲面新安洞의 요리점 義興園의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畢可賤은 1943년 음력 8월 초순경(양력 9월초) 滿洲國 安東市縣前街四道橋子 소재의 여관에서 산동성 文登縣 중공팔로군의 지도적인 지위에 있는 共產黨第八路區 文登縣 第5區委員 王某의 지령으로 중국을 위한 물자 획득을 위해 음력 6월 상순(양력 7월 상순) 안동시에 潛入했다. 동

65) 高等法院檢事局, 『國防保安法第十六條に規正する犯罪調』, 『朝鮮檢察要報』 第4號, 1944년 6월, 15쪽.

66) 高等法院檢事局, 『國防保安法第十六條に規正する犯罪調』, 『朝鮮檢察要報』 第4號, 1944년 6월, 16쪽.

67) 高等法院檢事局, 『國防保安法第十六條に規正する犯罪調』, 『朝鮮檢察要報』 第4號, 1944년 6월, 12-13쪽.

제5구 李東昌의 書記인 孫福均은 畢可賤에게 安東市에서 비료 및 기타의 물자를 구입하여 정크선으로 산동성으로 운반, 文登縣 주둔의 중공팔로군에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선박의 구입자금을 중국에 송금하도록 지시했다. 畢可賤은 이를 승낙하고 같은 해 9월 초순 및 10월 초순 두 차례에 걸쳐 孫福均에게 총 1,500원을 교부했다. 畢漢淸은 같은 해 9월 19일경 安東市 縣前街 汲水屋에서 孫福均으로부터 자금지원을 중용받고 같은 해 10월경 孫福均에게 2천원을 교부했다. 劉崇欽은 7월경 근무지인 요리점 義興園에서 李東昌의 지령을 받았다. 또한 그는 그때쯤 朔州郡내에 잠입한 孫福神으로부터 자금지원의 중용을 받고 孫福神에게 100원을 교부했다. 李東昌의 지령으로 安東市에 잠입한 孫福均은 安東憲兵隊에 의해 검거되었다. 이 사건은 1944년 3월 12일 신의주지방법원에 공판·청구되었다.<sup>68)</sup>

咸鏡北道會寧郡甫乙面遊仙洞 거주 孫登亭(27·萊州府·농업)은 1941년 12월말 산동성 귀향중 중공팔로군 유격대원에게 滿洲國 新京 거주 시 우연히 알게 된 비행장의 개수 및 위치, 兵舍의 위치 및 兵種과 병력 등의 군사상의 비밀사항을 제보했다. 그 후 1943년 3월 하순 동 유격대원의 지령을 받아 新京 방면의 군사정보를 탐지하기 위해 만주국에 들어가려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 사건은 1944년 5월 15일 淸津地方法院에 사건·접수되었다.<sup>69)</sup>

田希豐(산동성출신·요리점경영)은 중공팔로군에 제보할 목적으로 吳道財를 敎唆, 평양부 대동강 호반 소재 육군비행장의 비행기 대수, 평양부 瑞氣山 소재의 방위부대의 병력수를 탐지하게 하고 제보를 받았다. 이 사건은 1944년 1월 19일 해주지방법원에 사건·접수되었다.<sup>70)</sup>

許寶善은 1941년 음력 3월 상순경(양력 3월 말경) 산동성 榮城縣 裡島에 주둔중인 중공팔로군 부대 司令 王興仁으로부터 조선에 입국하여 조선내 주요 관청의 위치, 군대의 소재지, 동정 등을 조사하여 제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는 이러한 지령을 받고 조선에 입국, 두 차례에 걸쳐 활동자금 300여원의 송금을 받아 평양부 瑞氣山에 방위

68) 高等法院檢事局, 『援蔣物資獲得資金提供(新義州檢事正報告)』, 『朝鮮檢察要報』 第3號, 1944年5月, 27-28쪽.

69) 高等法院檢事局, 『國防保安法第十六條に規正にする犯罪調』, 『朝鮮檢察要報』 第4號, 1944年6月, 17쪽.

70) 高等法院檢事局, 『國防保安法第十六條に規正にする犯罪調』, 『朝鮮檢察要報』 第4號, 1944年6月, 11쪽.

부대의 정보, 평안남도 도청, 평양부청, 평양지방법원 등 주요 관청의 위치를 탐사하는 첩보활동을 했다. 이 사건은 1944년 2월 3일 해주지방법원에 사건·접수되었다.<sup>71)</sup>

姓名未詳의 화교 1인은 1942년 9월 동경 池袋警察署 유치장내에서 조선인 李村信吉과 함경남도 興南지방의 군수공장의 생산효율, 기타 정보를 탐지하여 重慶國民政府에 제보를 모의하다 체포되었다. 이 사건이 咸興地方法院에 사건·접수된 것은 1944년 1월 10일이었다.

한편, 중일전쟁 후반기에 들어 친일괴뢰정권의 ‘우호국의 국민’이던 화교의 항일활동이 보다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펼쳐짐에 따라 조선총독부의 화교에 대한 인식에도 변화가 생겼다. 즉, “중국인은 표면상 친일적 태도를 보이지만 내면 깊숙이 抗日的民族感情을 견지, 蔣介石을 조국의 영웅으로 볼 뿐 아니라 특히, 조선 거주 중국인의 9할은 산동성 출신자로 대체로 八路軍 점령지대의 거주자인 관계상 중국 거주 가족의 생명, 재산은 그들의 수중에 있기 때문에 일시 귀국자 또는 이전 조선 거주 중국인을 협박 혹은 회유하여 첩보모략의 지령을 부여, 파견했다. 혹은 조선에 돌아가게 하여 우리군의 정보 및 기타 각 정보를 첩보·제보하게 하고 있다.”<sup>72)</sup>

이전 조선총독부는 조선화교에 대해 “그들의 대부분은 하등의 학식을 지니지 못한 농민, 상인 그리고 기타 어떤 업도 없이 다만 돈 버는 데 급급한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sup>73)</sup>, 중일전쟁 전반기 화교의 항일활동이 저조한 것은 항일적인 화교의 귀국과 조선총독부 당국의 철저한 사찰과 경계에 두며 자신만만했지만, 그러한 조선총독부의 태도는 화교의 활발한 항일활동으로 인해 완전히 바뀐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IV. 결론

이상에서 우리는 중일전쟁 시기 조선화교의 항일활동을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 다

71) 高等法院檢事局, 『國防保安法第十六條に規正にする犯罪調』, 『朝鮮檢察要報』 第4號, 1944年 6月, 12쪽.

72) 警務局保安課, 『昭和十九年十一月 鮮内ニ發生セル牒報謀略事件ノ概況及今後對策如何』, 『第八六回(昭和十九年十二月)官房·學務·法務·警務 帝國議會說明資料 三冊ノ内一』(『朝鮮總督府 帝國議會說明資料 第10卷』, 不二出版, 1994年, 128쪽).

73) 慶尙北道警察部, 『高等警察要史』, 1934.3, 170-171쪽.

양한 각도에서 검토했다.

조선화교는 친일괴뢰의 중화민국임시정부, 남경국민정부의 신민으로서 양 정부가 표방하는 ‘和平反共’의 노선을 추종해야 하는 입장에 있었다. 물론 경성총영사관과 여선중화상회연합회 주도로 이뤄진 ‘친일’활동에 화교는 참가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교의 항일활동은 전반기의 각 영사관의 첩보활동, 국기환기 저항활동, 그리고 조연비어 유포와 같은 소극적 저항에서 후반기에는 自起團, 中國青年會, 日東會처럼 항일 조직을 만들어 각종 첩보, 시설물 방화 및 파괴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후반기에는 전국 각지에서 화교의 항일활동이 광범위하게 펼쳐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항일활동에 참가한 화교는 거의 산동성 및 하북성에서 활동하는 중공팔로군과 밀접한 관련 속에서 첩보, 방화, 파괴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산동성과 하북성은 조선화교의 僑鄉으로 일본군의 점령지이지만 일본군이 실질적으로 점령한 것은 도시부뿐이었다. 그 이외의 농촌지역은 중공팔로군이 할거하여 일본군의 점령 행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중공팔로군 참가자 가운데는 조선화교 교향의 친인척이나 친구가 참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화교의 일시 귀향 시 그들과 접촉할 기회가 많았다. 조선총독부는 산동성의 중공팔로군과 연계된 화교의 항일활동이 예상 이상으로 강력하게 전개되자, ‘우호국의 국민’으로 보던 시각에서 ‘적국의 국민’으로 보는 시각으로 바뀌어 갔다.

이에 따라 조선총독부는 조선화교의 교향과의 이동, 조선내 이동을 엄격하게 제한하게 되고 화교에 대한 査察을 강화했다. 또한 아무 혐의 없는 화교에게 죄를 덮어씌우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으며 체포된 화교에게 모진 고문으로 무리한 자백을 강요하다 사망하는 사건이 많았다. 특히, 이번 논의에서 서대문형무소에서 日東會事件의 혐의자 4명이 고문으로 사망한 것이 확인되었다.

서론에서 언급한대로 李盈慧(2003)는 중일전쟁 시기 동아시아지역 화교 가운데 조선화교는 항일의 정도가 가장 낮았다고 평가했지만, 위의 논의를 종합해볼 때 그렇게 간단히 단언할 수 없는 것은 아닌지 문제를 제기해 본다.

## 참고문헌

### 1. 저서 및 논문

#### 1) 한국어 문헌 (발표연도순)

- 이정희, 『20세기 전반기 대구지역 화교의 경제적 활동(1905-1955년)』, 『大丘史學』 第80輯, 2005
- 이정희, 『중일전쟁과 조선화교: 조선의 화교소학교를 중심으로』, 『중국근현대사연구』39, 2007
- 이정희, 『해방초기 인천화교의 경제활동에 관한 연구』, 『인천학연구』9, 2008
- 서대문구편, 『독립과 민주의 현장 서대문형무소역사관』, 2010
- 이정희·송승석, 『근대 인천화교의 사회와 경제-인천화교소장자료를 중심으로』, 2015
- 이정희, 『1927년 조선화교배척사건의 경위와 실태-인천화교배척사건을 중심으로』, 『동양사학 연구』 제135집, 2016

#### 2) 중국어 문헌 (발표연도순)

- 漢城華僑學校, 『漢城華僑學校概況』, 1941.7
- 楊昭全·孫玉梅, 『朝鮮華僑史』, 中國華僑出版公司, 1991
- 李盈慧, 『抗日餘附日: 華僑, 國民政府, 汪政權』, 水牛出版社, 2003
- 安井三吉, 『帝國日本と華僑: 日本·臺灣·朝鮮』, 青木書店, 2005
- 楊韻平, 『汪政權與朝鮮華僑(1940-1945): 東亞秩序之一研究』, 稻鄉, 2007
- 徐友春主編, 『民國人物大辭典 增訂版 上』, 河北人民出版社, 2007
- 李正熙, 『近代朝鮮華僑製造業研究-以鑄造業爲中心』, 『華僑華人歷史研究』2009年第I期·總第85期
- 張秀明, 『從“大抗戰史觀”看華僑與抗日戰爭研究: 基于《抗日戰爭研究》雜誌的思考』, 『華僑華人歷史研究』2015年9月第3期

#### 3) 일본어 문헌 (발표연도순)

- 出口晴久, 『日中戰爭期における神戸華僑の實態と動向』, 『東洋史論』 第9號, 1996
- 菊池一隆, 『抗日戰爭時期における朝鮮華僑の動態と構造』, 『近きに在りて』 51, 2007
- 菊池一隆, 『戰爭と華僑』, 汲古書院, 2011

李正熙, 『朝鮮華僑と近代東アジア』, 京都大學學術出版會, 2012

## 2. 사료

### 1) 일본어 사료

朝鮮總督府, 『朝鮮に於ける支那人』, 1924

京城商業會議所, 『朝鮮に於ける外國人の經濟力』, 『朝鮮經濟雜誌』159號, 1929.3

慶尙北道警察部, 『高等警察要史』, 1934.3

澎運泰·朝鮮總督府警務局譯, 『朝鮮ニ於ケル護旗奮闘經過』, 『朝鮮出版警察月報』, 1938年

朝鮮總督府外事課, 『昭和九年 外事課 領事館往復綴(各國)』 (한국 국가기록원 소장)

朝鮮總督府外務部, 『外務部 昭和十三年 領事館關係綴』 (한국 국가기록원 소장)

朝鮮總督府外務課, 『外務課 昭和十七年 領事館表關係』 (한국 국가기록원 소장)

朝鮮總督府高等法院檢事局思想部, 『思想彙報』13·14·20, 1937-1939

朝鮮總督府高等法院檢事局, 『朝鮮檢察要報』3·4·13, 1944-1945

朝鮮總督府警務局保安課, 『高等警察月報』4·6·9·12, 1939-1940

仁川華商商會, 『華僑領取小麥粉詳細表』, 中川勝美堂, 1942.4

朝鮮總督府, 『帝國議會說明資料』, 不二出版, 1994

잡지: 『朝鮮及滿洲』

신문: 『동아일보』(조선어), 『조선일보』(조선어)

### 2) 중국어 사료

『第二次領事會議記錄 1943年』, 『中華民國國民政府(汪精衛政權)駐日大使館檔案』 (日本 東洋文庫  
所藏)

『汪偽僑務委員會檔案』 (中國第二歷史檔案館所藏)

『汪偽外交部檔案』 (中國第二歷史檔案館所藏)

【제4발표】

## 충격과 혼돈:

한국전쟁에 대한 중국사회의 반응과 동향

서 상 문\*

들어가는 말

- I. 미군과병을 선언한 트루먼 대통령 성명발표 후 :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 II. “미군기의 중국영공침범” 보도 후 :  
주식폭락과 금값 상승세 지속
  - III. 인천상륙작전 성공과 周恩來의 대미 경고 후 :  
혼란의 고조
  - IV. 북한군의 38도선 이북 패퇴 : 날개 돋친 ‘變天사상’
  - V. 중국인민해방군의 참전 : 淸美심리와 勝美심리의 혼재
  - VI. 휴전협정 체결 전후 :  
전쟁으로부터의 해방감과 새희망심리의 표출
- 맺음말

## 들어가는 말

한국전쟁은 전세계가 경악한 충격적인 뉴스였다. 같은 시기 중국사회 내부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전쟁도발을 위한 毛澤東, 김일성, 스탈린의 사전 전쟁모의에서부터 중국군의 참전결정과정, 전쟁수행과 휴전에 이르는 중국공산당(이하 ‘중공’으로 약칭

---

\* 고려대학교 한국전쟁 아카이브

함) 수뇌급 인물들의 동선은 대략적인 윤곽이 밝혀진지 오래다. 그러나 전쟁기간 동안 중국 국내 일반 중국인들의 동향에 대해선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 당시 중국내부의 사회 분위기와 동향을 알려주는 자료가 공개되지도 않았거니와 관련 주제의 연구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sup>1)</sup>

본고의 목적은 그 동안 공개된 바 없는 『內部參考』에 근거해 전쟁발발에서부터 휴전에 이르는 동안 중국내부의 동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內部參考』는 1949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후부터 전국 각지 중공 지국에서 중공 상급기관에 올린 보고서들을 ‘新華社參考消息組’가 엮은 중국 국내외 정세 소식지다. 『內部參考』는 중국공산당의 “내부 발행” 문건인데, 그간 학계에서 참고된 바 없는 자료다. 『內部參考』는 중국공산당 중앙이 각지의 당 중앙 산하에 조직한 ‘新華社參考消息組’에서 전국 각지에서 보고돼 올라오거나 혹은 국내외의 각종 신문이 보도한 ‘소식’들을 모아 편집한 종합 ‘소식지’다. 소식지의 배포 목적은 중공 고위간부들에게 당시 국내외 혁명정세, 사회, 정치, 경제 등에 관한 상황을 전국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內部參考』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발행됐으며, 한 달 단위로 페이지를 붙여져 있다. 중공은 건국 직전인 1949년 9월 22일에 제1호를 내기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도 『內部參考』를 지속적으로 발행해오고 있다.<sup>2)</sup>

이 보고서는 매일 毛澤東에까지 보고된 것으로서 중국의 한국전쟁 개입을 정치적, 사회적, 군사적, 경제적 측면에서 총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유용할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 전쟁이 중국사회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는데도 상당히 유용한 자료다. 수도 北京을 비롯해 上海, 天津, 無錫, 瀋陽, 哈爾濱, 長春, 大連, 旅順, 吉林, 石家莊, 濟南, 靑島, 西安, 南京, 武漢, 長沙, 廣州, 重慶, 成都 등 전체 중국의 주요 도시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는 물론, 당, 정, 군 간부들의 동향들까지 매일 자세히 보고돼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전국 각지의 노동자, 학생, 상인, 제조업자, 무역업자, 농민, 교사 및 교수, 변호사, 신부 그리고 당시 중국에 거주하고 있던 외국인(종교인 포함)들의 동향까지 상세히 파악돼 있다. 『內部參考』는 건국 후 毛澤東이 중공 각 지국의 간부들에게 필

1) 현재 중국학계에서 볼 수 있는 이 주제에 관한 연구는 아주 극소수다. 侯松濤, 『全能政治 : 抗美援朝運動中的社會動員』(北京 : 中央文獻出版社, 2012年)이 거의 유일하다.

2) 徐相文, 『毛澤東與韓戰 : 介入背景、決策過程和動機』(臺灣國立政治大學歷史研究所博士學位卒業論文, 2006年7月31日), 10쪽.

독을 지시했을 정도로 사료 가치가 높다. 현재 중국사회 내에서도 중공이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문건이 아니다.

본고에서는 중국내부 반응과 동향을 크게 전쟁의 추이에 따라 ①트루먼 미 대통령의 성명 발표, ②미군기의 중국영공 침범, ③한국군과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 ④북한군의 38도선 이북 후퇴, ⑤중국군 참전, ⑥휴전협정체결 등 여섯 단계로 나눠 살펴본다. 이 여섯 단계는 전쟁을 지속시킨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상위 개념의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대주제를 좀 더 세분하면, 한국군과 유엔군의 ‘1·4후퇴 및 재반격, 포로교환 등에 관한 것도 대주제에 넣어 논의할 수 있다. 또한 매 주제 마다 중공지도부가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관해서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다만 본고에서는 한국군과 유엔군의 ‘1·4후퇴 및 재반격, 포로교환에 관한 논의 그리고 중공지도부의 대응에 관한 논고는 주어진 시간 내에 다 소화하기에는 자료들이 지나치게 많아 부득이 하게 다음 과제로 남겨놓겠다.

## I. 미군파병을 선언한 트루먼 대통령 성명발표 후 :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북한군은 38도선 전선에 걸쳐 전면 남침공격을 개시했다. 남침 3일 만에 서울 함락이 목전에 두게 된 1950년 6월 27일,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미국의 한국전쟁 참전을 선언했다. 그에 따른 군사적 초동조치로 미 제7함대를 臺灣해협으로 급파시키는 등 중요한 세 가지 명령을 내렸다. 대만해협을 사이에 두고 대결을 벌이고 있던 毛澤東과 蔣介石의 상호 군사도발을 방지하고, 인도차이나반도 지역에 대한 프랑스의 군사행동을 지원하면서 필리핀, 월남에서의 반공세력을 지원하도록 한 것이다.<sup>3)</sup>

이에 대해 중공 주석 毛澤東과 중국정부의 정무원 총리 겸 외교부장 周恩來 등 중공 수뇌부는 트루먼의 조치는 중국을 포위하고 중국영토인 臺灣을 침략한 것으로 규

<sup>3)</sup> Harry S. Truman, *Memoirs* (Garden City, New York : Double day & Co., 1956), Vol. II, p.337, p.339.

정했으며, 周恩來가 중국을 대표해 공식 논평을 통해 중국영토에 대한 침략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같은 시각에서 한국전쟁에 대해서도 트루먼이 남한의 “이승만 괴로정부”를 교사해 일으킨 것이라고 주장했다.<sup>4)</sup> 북한의 남침과 미 제7함대의 臺灣 진주 관련 뉴스가 전해지자 중국 전역이 요동치면서 온갖 풍문들이 난무했다. 예컨대 “남한이 미국의 사주로 북한을 침공했다”거나, 미국의 지원을 받는 蔣介石은 이미 9개 兵團(한국군의 야전군에 해당됨)에게 남한으로 상륙하라고 명령했다는 소문도 돌고 있었다. 한국군을 지원하기 위해 臺灣의 중국국민당 白崇禧군과 일본군까지 참전한 상태라는 유언비어도 퍼져 있었다.<sup>5)</sup>

위 두 가지 반응은 사실이 아닌 그야말로 유언비어였다. 대만의 경우 蔣介石이 한국전쟁에 국민당 정규군을 파병하기 위해 미국행정부와 이승만 대통령에 의사를 타진했지만 모두 거절당해 결국 한반도에는 군을 보내지 못했다. 또 白崇禧군은 물론, 일본군은 각기 남한으로 들어갈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았다.

두 번째로 중국 전역이 술렁거린 때는 周恩來가 중국정부를 대표해서 미국의 개입을 臺灣과 한반도에 대한 침략이라고 규정한 성명을 발표한 직후였다. 실제 미군이 한반도에 첫발을 디디게 된 시점은 1950년 7월 초였다. 그런데 이미 그 전에 미국이 개입하게 된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 내 중공을 비롯해 공상업계 등 각계각층에서 나타난 반응은 다양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하나 같이 목전의 상황을 세계대전의 전조로 여기거나 혹은 세계대전이 발발한 것으로 크게 동요한 점이 특이하다. 예를 들면, “미 제국주의는 너무 강경하다. 우리의 周恩來 외교부장의 성명도 강경하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식으로 대응하면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말 것”이라는 말들이 무성했다.<sup>6)</sup> 또 만약 소련이 나서서 북한을 지원한다면 세계대전은 피할 수 없다는 얘기도 있었다. 즉, 적지 않은 시민들이 제3차 세계대전이 발생했다거나 혹은 이 전쟁을 제3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으로 인식하면서 세상이 망할 거라는 중국 전통의 ‘變天’이 나타난 징조로 봤다.<sup>7)</sup>

4) 서상문, 『毛澤東과 6·25전쟁 : 파병결정과정과 개입동기』(서울 :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6년), 38~39쪽.

5) 『南京各階層對時局,調整公私關係與減租繳租問題的反映』『內部參考』, 1950年第185號(7月24日), 83쪽.

6) 『上海工人,學生,教授對杜魯門聲明的反映』『內部參考』, 第172號(1950年7月4日), 7쪽.

7) 『無錫無錫幹部,工敝勞動者,學生對目前時局的反映』『內部參考』, 第176號(1950年7月11日),

上海의 공장노동자, 교수, 학생의 반응을 보면, 공장노동자들은 “미 제국주의 너무 강경하다. 우리 주은래 외교부장의 성명도 강경하다”, “강경과 강경이 부딪치면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이다.” 만약 중국이 臺灣을 차지 못하면 미국은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며, 모두 단결해 미국을 타파할 준비를 하라는 毛澤東의 호소를 바로 臺灣을 치라는 소리로 이해하기도 했다. “모주석의 말은 틀릴 수가 없다, 전쟁이 다시 시작되면 우리들은 후방생산 활동으로 해방군을 지원할 것이다.” 또 어떤 이는 “제일 좋은 것은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또 미국은 ‘空大砲’와 ‘노인병(老爺兵)’으로 묘사하면서 臺灣을 해방하는 건 문제없는 것으로 인식했다. 일부 교수와 학생들 사이에는 제3차 세계대전의 발발가능성에 대해 의견이 양분됐다. 또한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 상해는 바로 원자탄의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했으며, 진보적 성향의 학생들은 트루먼성명에 대해 분개하면서 毛澤東의 호소와 周恩來의 성명 및 북한의 서울 함락 및 진격에 흥분하고 고무됐다. 반면 무관심한 학생이 있었는데 어떤 여타 국제적인 다툼이 발생할 것이라고 염려한 학생도 있었다.<sup>8)</sup>

沈陽에 거주하는 어떤 천주교 신부는 실제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던 대로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했다. 즉 “조선사건은 소련이 일찍부터 사주한 결과이며, 북한은 도발계획에 따라 감행한 침략”이라고 했다. 그리고 “천주교에 가입하면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도 겁나지 않는다”고 외치면서 천주교 교세확장의 기회로 삼은 경우도 있었다.<sup>9)</sup> 어디서든 안정을 바라는 상인들의 특성상 상인들은 대다수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희망했다. 상인들 간엔 미국뿐만 아니라 대만으로 물러난 蔣介石이 다시 중국 대륙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이용해 양식과 생활용품을 사재 후 미군과 蔣介石군을 대상으로 한 대목 보겠다는 발상이 보편화 돼 있었다.

이러한 민심의 동요는 중국의 실물경제에 그대로 반영됐다. 먼저 금값을 앙등케 만들었으며, 啓新 주식가격이 폭락했다. 사회동향에 가장 민감하게 반영되는 것이 금과 주식이라는 사실이 증명된 것인데, 중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 뿐만 아니라 물가에도 직접 악영향을 미쳐 경제가 크게 흔들렸다. 또 연쇄적으로 시중 자금유통 사정을 악화시켜 이자율을 상승케 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수도 北京의 금값은 투기자의 매

32쪽.

8) 『上海工人, 學生, 教授對杜魯門聲明的反映』『內部參考』, 第172號(1950年7月4日), 8쪽.

9) 『瀋陽各界層對朝鮮戰爭的反映』『內部參考』, 1950年第178號(7月13日), 40~41쪽.

점으로 전쟁 발발 전날인 6월 24일 1량(단위 확인요망) 117만 위안 하던 것이 6월 30일에는 135만 위안으로 폭등했다. 또한 130만에서 150만으로 오른 곳(無錫)도 있었고, 팔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 주가는 6월 24일 153만 위안에서 6월 28일 97만 6,000 위안으로 폭락했다. 또한 上海 인민은행의 개인 예금은 110억 위안이 감소했고, 6월 28일부터 上海 인민은행에 예금된 외국인들의 외환이 대량으로 빠져나갔다. 예컨대 6월 28일에 6억, 29일에 19억 달러가 한꺼번에 인출됐다. 이 수치는 6월 27일 이전 하루 평균 인출액인 6,000~7,000만 달러에 비하면 현저히 증가한 것이었다. 이로 인해 자금유통이 경색되어 암달러 시장의 이자는 달러당 9위안 이상이었다. 최고치였을 때는 14위안에서 15위안으로까지 올랐다.<sup>10)</sup>

중국인의 주식인 쌀은 한 근에 6,000위안에서 1만 위안으로 뛰었고, 페니실린은 1만 500위안에서 1만 4,000위안으로 폭등했다. 이뿐만 아니라 건자재, 고무, 기름, 양약과 같은 수입품 가격도 치솟았다. 물가 양등은 8월 중순 들어 차츰 떨어졌지만 8월 하순까지도 6월 하순 물가 보다 높았다.<sup>11)</sup>

1950년 6월 29일, 중국정부의 중앙재정위원회는 트루먼성명 후 중국 전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난 물가양등, 물건사재기 등에 대한 대책으로 ‘금후 금융물가 안정지시에 대하여’를 발표하고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한 결과 안정시켰다고 중국은 평가한다.<sup>12)</sup>

## II. “미군기의 중국영공침범” 보도 후 : 주식폭락과 금값 상승세 지속

한국전쟁 동안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역에 대한 미 극동 공군의 폭격은 빈발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미군 전폭기나 전투기의 중국영토에 대한 공격 및 폭격은 금지돼 있었다. 이것은 미국 행정부가 특별히 강조한 사항이었다. 하지만

10) 『杜魯門聲明發表後上海市場情況』『內部參考』, 1950年第171號(7月1日), 1~2쪽.

11) 『美帝侵略朝鮮後首都市場動態』『內部參考』, 第188號(1950年7月28日), 97~98쪽.

12) 房維中主編, 『中華人民共和國經濟大事記(1949-1980)』(北京 :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4年), 28쪽.

전쟁을 종결시키려면 북한군의 후방 병참지원지가 된 중국 東北지역에 대한 폭격이 필수적이라고 믿은 맥아더 원수의 의욕에 앞서 미 공군기는 심심치 않게 압록강 대안의 丹東 등 지역을 넘어 공격하는 일이 잦았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1950년 8월 28일, 北京의 신문들은 일제히 미군기가 영공을 침범해 압록강 우안 기차역 부근 주민들에게 기총사격을 가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는 중국정부가 보인 최초의 반응이었다. 이 보도 후 北京 상공업계가 또 한 번 크게 출렁거렸다. 미 공군기의 압록강 대안 지역의 공격은 이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수도 北京, 天津, 上海 등지에도 출몰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발동됐다. 이러한 심리는 즉각 실물경제에 반영됐는데, 가장 민감하게 나타난 것은 역시 주식이었다.

이는 사실상 毛澤東 등 중공 수뇌부의 상황판단과 일치한 반응이기도 했다. 이를 뒤인 8월 30일의 보고에 의하면, 이 뉴스가 나가자 이 여파로 北京의 주가는 바로 85만 위안에서 77만 위안(최저치는 71만 위안)까지 떨어졌다. 반대로 황금가격은 129만 위안에서 131만 위안으로 올랐으며, 곡식, 밀가루 등의 식량 및 식품 거래량은 늘어나 평소 71만여 근에서 100만 근으로까지 육박했다. 미국산 유기는 20만 위안으로 상승했고, 백설탕은 2,000원으로 폭등했다. 이 같은 시장의 파동에 대해 北京시정부는 중국국민당 정부의 간첩들의 유언비어 유포활동과 간상들의 교활한 행위들을 예방하려고 했다. 거래량이 많아지는 등 등 시장의 파동이 일어났다.<sup>13)</sup>

어디서나 상인들은 민첩하다. 중국상인들은 어쩌면 더 민첩할지도 모른다. 한국전쟁을 제3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으로 인식한 중국 상인들에게 미 공군기의 압록강 너머 중국 東北 영공 침범은 미군이 東北의 다른 지역에도 폭탄을 투하하기 위한 사전 정찰로 여겨졌다. 그래서 그들은 물건을 내다 팔고 금을 사재기하기를 시작했다. 전쟁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수출입업자들은 국제정세의 추이만 지켜보고 있었다. 인력거 운행자(車夫), 노무자 등 하층 민중들은 자포자기 상태로 할테면 하라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

경제파동을 불러일으킨 것은 전쟁이 유일한 원인이 아니라는 증거는 다른 도시의 물가가 급등했는데도 天津市의 경우 물가가 하락하고 외환시세도 하락한 예를 들 수 있다. 물가가 하락한 이래 天津市 소매회사의 업무는 바로 거래가 끊기고 한산해졌다.

13) 『美機侵犯我領空後首都市場略有波動』『內部參考』, 第210號(1950年8月28日), 101~102쪽.

지금도 여전히 迄今仍無起色. 현재 이 회사는 매일 식량 6~7만근을 팔았을 뿐(물가가 안정적이었을 때 매일 2~30만근을 팔았다). 4~6월 간의 3개월 동안 약 2억 이상 밀렸으며, 밀지게 된 주된 원인은 첫째, 소매점이 적고, 대리점의 대리이윤이 적어 대리점의 관심이 높지 않았던 데에 있다. 둘째, 합작사가격이 소매상 보다 낮아 소매업의 영업수입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셋째, 국영공사가 제때에 상품을 제공하지 않아 판매량에 크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sup>14)</sup> 天津市의 외환시세 하락의 경우 7월 한 달 동안 3차례나 조정을 했는데, 매번 가격을 내렸다. 天津市 상인들 사이에는 미, 영 제국주의 국가에서 통화가 팽창되고 화폐가치가 내렸지만, 중국은 재정이 통일된 후 부터는 통화긴축, 물가안정, 외환가의 저하가 자연적 현상일뿐, 다른 원인이 있을 것 이라거나 또 외환가의 저하는 정부의 외환정책과 맞지 않고, 국제정세가 긴장국면으 로 치달은 결과라고 판단했고, 외환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국제시세가 긴장했기 때문 이라는 등 추측이 분분했다. 시장에 충분한 물자를 공급하기 위해 미 제국주의가 나 중에 우리의 항구를 봉쇄하는 것을 방지하고, 외환의 유입을 완화하는 게 실정에 맞 는 정책이다.<sup>15)</sup>

1950년 8월 하순부터 중국정부는 계속적으로 미국정부와 유엔에 미군기의 東北 영 공 침범에 항의함과 동시에 중국 국민들을 상대로 ‘반침략선전운동’을 전개했다. 일부 애국적 상인들은 “미제의 침략본성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그럴수록 평화적 인민의 힘 은 강해진다”거나 “미제가 우리에게 도발할 뜻이 있어 폭탄을 퍼부어도 사람을 겁나 게 하지 못할 것”이며, “미국은 북한을 이길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sup>16)</sup>

나중에 중국이 군대를 보내고 난 뒤인 11월에 들어서면 애초부터 미군이 臺灣의 국민당군을 앞세워 중국을 침략할 것이라는 의구심을 가져온 毛澤東은 순망치한적 관 점에 입각해 한국전쟁에 개입한 미군의 최종목적이 북한의 점령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 진출이라고 믿었다.<sup>17)</sup> 그가 미군의 공격에 신경을 곤두세운 이유였다. 나중에 다시 한 번 언급하겠지만 그의 지시로 중국정부는 수도 北京과 天津은 물론, 한반도

14) 『天津市零售公司虧損甚鉅』『內部參考』, 第189號(1950年7月29日), 102쪽.

15) 『天津市外匯牌價降低後商界人士推測紛紛』『內部參考』, 第193號(1950年8月3日), 10~11쪽.

16) 『江西工商界等對朝鮮戰爭顧慮重重』『內部參考』, 第227號(1950年9月20日), 112쪽.

17)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서상문, 『6·25전쟁 : 공산진영의 전쟁지도와 전투수행』(서울 :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16년), 上卷, 제4장을 참조하라.

와 가까운 東北지역과 上海, 浙江성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미 공군기의 폭격에 대비한 방공망을 구축하고 이 지역의 산업시설들을 뜯어 내지로 옮기기도 했다.

미 공군기의 중국영공 침범 후 중공당국은 민심동요, 시장파동에 대응하고자 국민을 상대로 ‘반침략선전운동’을 진행했다. 그리고 스스로 그 효과가 드러났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미군 비행기가 우리 동북영공을 침범한 후 鎮江 군중의 반응. 반침략선전운동을 전개한 결과 군중의 사상은 이전보다 높아졌는데, 이번 미 제국주의의 전쟁도발의 본질에 대해 비교적 확실한 인식을 가지게 됐다는 것이다. 또 개명된 상인들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미제의 침략본성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이렇게 하면 할수록 평화적 인민의 힘은 강해진다.” 혹은 “미제가 우리에게 도발할 뜻이 있어 폭탄을 퍼부어도 사람을 겁나게 하지 못할 것이다.” “미국은 북한을 이길 수 없다.<sup>18)</sup> 하지만 이러한 대응이 궁극적으로 전국적 차원에서 민심의 동요나 시장의 파동을 가라앉혀 안정시켰는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로 보이는데, 이에 관한 결론을 내리려면 좀 더 자세한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 Ⅲ. 인천상륙작전 성공과 周恩來의 대미 경고 후 : 혼란의 고조

맥아더 원수가 주도한 한미 연합군의 인천상륙작전은 전쟁을 완전히 역전시킨 쾌거였다. 이 작전은 북한군에게 직접적으로 크게 괴멸 수준으로 타격을 입히기도 했지만, 동시에 毛澤東을 위시한 중국수뇌부에게 위기의식을 느끼게 만들어 한반도에 파병을 하기로 결심한 중대한 사건이기도 했다.<sup>19)</sup>

9월 15일 한·미연합군의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여 9월 28일 수도 서울을 수복함으로써 남부의 북한군주력이 고립되었다. 연합국측의 군 병력은 9월 30일 현재 미국의 6개 사단 약 11만 3,000명 그리고 한국군 및 기타 유엔군 병력 약 23만 명을 합해 34여만 명이 동원되었다.<sup>20)</sup>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했다는 소식이 중국 내에 전해지

18) 『江西工商界等對朝鮮戰爭顧慮重重』『內部參考』, 第227號(1950年9月20日), 112쪽.

19) 서상문, 『毛澤東과 6·25전쟁 : 파병결정과정과 개입동기』(서울 :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6년), 131~146쪽.

자 폭등했던 암시장의 금값이 1950년 9월 18일부터 21일 사이 단 3일만에 112만 위안에서 140만 위안으로 또 한 바탕 뛰었다. 9월 30일 周恩來가 미군이 북진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뒤 이어 10월 1일 맥아더도 김일성을 겨냥해 대북 항복권고 방송을 내보냈다. 하루 이틀 사이에 이처럼 급박하게 상황이 전개되자 많은 중국인들은 전쟁이 중국과 미국의 대결로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농민, 노동자, 일반근로자, 학생 등 모든 국민들 사이에 혼란과 두려움이 급속도로 확산됐다. 이를 염려한 중국 내 상공업계도 예외 없이 심리적으로 커다란 혼란에 휩싸였다. 無錫의 상공업계의 경우 상인들 중 일부는 매일 ‘臺灣 라디오’, ‘미국의 소리’(the Voice of America)를 들으면서 상황이 호전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중공의 관방 보도기관인 新華社의 뉴스는 아예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sup>21)</sup>

한편, 영업을 확대해 가을 추수기 대목을 맞이하려고 계획한 北京, 天津, 上海 등 대도시 소재 백화점들은 대부분 한반도 전황의 추이를 관망하는 태도를 보였다. 한국군과 유엔군의 북진이 임박한 9월 하순 국외 자본가들은 사태만 지켜볼 뿐 경제행위에는 손을 놓은 상태였다. 이로 인해 그들이 중국에 투자를 하지 않아 홍콩을 통해 중국으로 들어가던 해외자본 유입이 현저하게 둔화됐다. 한미 연합군의 북진이 개시된 후인 10월 중순에도 금값은 여전히 135만 위안 정도였다.<sup>22)</sup> 주식가격은 급락한데 비해 금값은 전쟁 내내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다.

반면, 宋江省의 경우처럼 일부 지역의 중공 당 간부들 가운데는 중국지도부의 영도를 신뢰하고 지방정부가 실시하는 생산노력에 적극 참여하면서 지역별 중공 조직이 주관하는 ‘시사학습’에도 열성을 보이는 등 애국적 행동을 행하는 이들도 있었다.<sup>23)</sup> 북진 개시 후 미 공군기는 북한지역 뿐만 아니라 황해상의 중국 도서지역까지 작전 범위를 넓히려려고 했다. 그 여파로 東北지역 공업시설의 중국 관내 이전계획에 따라 9월부터 개시된 東北의 鞍山지역 제강공장의 거대한 용광로들이 1950년 말경 華東 연

20) 두 차례에 걸친 북한인민군의 대공세에 동원된 병력 및 가용도와 한·미 양군의 투입병력에 관해선 Roy E. Appleman,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Department of the Army, Washington, D.C.: GPO, 1961), p.264, pp.198~210, pp.545~546, pp.605~606을 참조하라.

21) 『美軍在仁川上陸作戰後無錫工商界思想混亂黃金暴漲』, 『內部參考』, 第246號(1950年10月13), 93쪽.

22) 『美軍在仁川上陸作戰後無錫工商界思想混亂黃金暴漲』, 『內部參考』, 第246號(1950年10月13), 93쪽.

23) 『內部參考』, 第281號(1950年11月30), 157~161쪽.

해지역의 물자 및 공장기계들과 함께 중국내륙의 깊숙한 곳으로 옮겨졌다.<sup>24)</sup> 중국정부의 산업시설 이전은 일반 시민들의 불안 심리를 더욱 부채질 하게 만든 결과를 낳았다.

#### IV. 북한군의 38도선 이북 패퇴 : 날개 돋친 ‘變天사상’

미 합참은 중소와의 충돌을 피한다는 조건부로 9월 27일 맥아더에게 38선을 넘어 북진하라는 군사작전 지침을 하달했다. 미 제8군 제1기병사단이 10월 9일 38선을 돌파함으로써 미국의 북한정권에 대한 소거는 본격화되기 시작했다.<sup>25)</sup> 이 때 합참은 1. 맥아더에게 소련과 중공군의 개입여부에 관심촉구. 2. 중소국경을 넘지 말고, 이 국경 인접지역의 공략은 한국군만 투입할 것, 3. 맥아더에게 북한 지역에서의 군사작전을 합참에 제출토록 함. 합참이 승인한 맥아더의 작전계획은 북한을 동서 두 지역으로 나누어 작전하는 것으로서 예컨대 미 제8군은 서울에서 평양에 이르는 서부지역, 미 제10군단은 원산으로 상륙하여 동부의 함경도지역을 장악하는 것이었다. 즉 중소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예방조치로써 유엔군이 중소 국경을 넘지 말 것이며, 국경지대 가까이에는 한국군만을 작전에 투입시킬 것을 지시하면서 맥아더가 북한 지역에서 행할 군사작전 계획을 합참에 제출토록 했다.<sup>26)</sup>

미 합참이 승인한 맥아더의 군사작전 계획에 따르면 북진은 두 지역을 축선으로 진행하게 되어 있었다. 미 제8군은 서울-평양에 이르는 서부전선을 맡고 미 제10군단은 원산에서 상륙작전을 시도하여 북한인민군의 퇴로를 차단하여 동북부의 함경도일대를 장악할 계획이었다.<sup>27)</sup> 한국군 제3사단이 먼저 10월 1일 동해안에서 북진을 개

24) Chow, Ching-Wen. *The Years of Storm : The True Story of the Communist Regime in China*, translated and edited by Lai Ming (New York : Holt, Rinehart and Winston, 1960), 116~117.

25) Roy E. Appleman,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623.

26) 김영호, 『한국전쟁의 기원과 전개과정』(서울 : 두레, 1998년), 269쪽.

27) 위 주와 같은 책, 268~269쪽.

시한데 이어 10월 7일 미군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도 서부전선에서 북진을 시작했다. 1차 목표는 평양 탈환이었고, 한국군도 경쟁적으로 평양탈환 작전의 대오에 합류했다.

이 보다 조금 먼저 1950년 9월 하순에서 10월 초 사이 북한군 주력부대들은 유엔군과 한국군의 반격에 밀려 38도선 이북으로 후퇴했다. 이에 대한 중국 젊은 층의 반응은 세 가지 부류로 나타났다. 첫째, ‘세계평화 역량’(즉 공산권 국가들)의 강대함을 맹목적으로 믿으며, 승리는 결국 ‘평화민주진영’(즉 소련, 중국, 북한 측)의 것이라고 판단한 부류다. 둘째, 소련은 왜 한국전쟁에 군대를 파병시키지 않느냐고 비난하는가 하면, 周恩來 외교부장은 왜 항의만 하느냐, 또 중국이 침략자를 물리칠 힘이 있다면 침략자들을 물리쳐야 하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인 부류다. 그들은 학교별로 각종 반미운동 단체의 발기인 서명을 받았는가 하면, 중앙정부에게 한국전쟁에 개입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셋째 부류는 제3차 세계대전 발발이 두려워 청년단을 탈퇴한 자들도 있었다.<sup>28)</sup>

한편, 각지에서 ‘항미원조운동’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중국군의 승전소식이 전해지기 직전 일부 상인들은 크게 위기의식을 느꼈다. 어떤 상인은 자신의 집 지하에 방공호를 뚫을 정도였다.<sup>29)</sup> 그들은 심지어 중국정부가 제공한 방공호 설비마저 미더워하지 않았다. 난이 있을 때마다 항간에 나타나는 중국 전래의 ‘變天사상’이 또 다시 중국 전역을 유행처럼 배회했다. 청대 중·후반에 횡행한 ‘백련교도의 난’, ‘태평천국의 난’이 말해주듯이 민중들의 항간에 이 사상이 떠돌아다닐 때는 심각한 위기상황임을 역사가 실증해준다.

특히 이러한 동향은 중국지도부가 좌시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근현대 중국역사를 되돌아보면 외부의 침략세력에 대해 불만을 가진 민중들의 화살이 나중에 중국정부를 겨눈 일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이때에도 중공지도부 간부들의 뇌리에는 과거 역사의 난들이 발생했을 때 초동단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화를 키운 사례들이 떠올랐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정부에 대한 불만으로까지 발전할 소지가 있는 인화성 높은 이러한 동향에 대응해 중국지도부는 군중동원 운동을 통해 중국청년과 군중들의 시국인식을 통일시키려고 노력했다. 이것이 중공 지도부가 전국적으로 군중동원, 즉 이른

28) 『朝鮮人民軍自漢城撤退後重慶青年思想情況』『內部參考』, 第244號(1950年10月11日), 84~85쪽.

29) 『內部參考』, 第275號(1950年11月22日), 第275號, 93~98쪽. 第275號는 실제 자료의 순서로는 중복돼 있어 실제로는 제276호가 맞다.

바 ‘抗美援朝運動’을 전개시키기 시작한 배경이다. 목적은 중공의 참전과 전쟁 지지, 국민당 잔여 세력, 토호, 지주 등의 반혁명세력의 척결, 토지개혁, 전쟁에 필요한 자원동원 등을 달성하기 위함이었다.

중국의 국가재정상황은 이미 1950년 4월부터 호전돼 재정수지는 균형을 이루었고, 물가가 안정되는 추세에 있었다.<sup>30)</sup> 毛澤東도 동년 6월 6일에서 9일까지 개최된 중공 제7계 제3중전회에서 재정수지평형, 통화정치팽창과 물가가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경제상황을 좋게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재정경제의 근본적 호전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세 가지 필수적인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 토지개혁완성, 2. 공상업의 합리적 조정, 3. 국가기구가 필요한 대부분 경비를 절감 등의 이러한 3개 조건을 실현하려면 대략 3년이 걸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毛澤東의 이 발언이 중공이 왜 한국전쟁 시기에 항미원조운동을 추동하게 됐는지, 또 그 목적이 민중들을 전쟁지지로 유도하고자 한 단일한 것이 아니라 국내의 정치적, 경제적 목적을 동시에 염두에 둔 다목적용이었음을 알 수 있다.

중국 전역에 항미운동이 개시되는 과정에서 일부는 국가적 동원의 선전선동의 영향을 받아서인지는 좀 더 고찰을 거쳐야 하지만 젊은 층에서는 정부의 선전에 호응하는 동향이 눈에 띄게 나타났다. 그런 맥락에서 공산주의 북한은 제국주의에 대항해 패배할 수 없고 필연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신념이 형성돼 갔다. 그런데 전쟁이 자신들이 바라는 바와 달리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자 당혹스런 반응도 나타났다. 예를 들어 重慶을 중심으로 한 젊은이들의 반응을 보면, 북한인민군이 38도선 이북으로 도주한 것에 관해 비교적 큰 사상적 파동이 일었다. 북한군의 후퇴 원인을 두고 세 종류의 사상정황이 존재했다. 1) 세계 평화 역량의 강대함을 맹목적으로 믿고, 어쨌든 승리는 평화민주진영의 것이기 때문에 인식상 전쟁에 대해 있어야 할 경고성은 없애고, 평화쟁취의 노력은 전쟁을 제지하는 중대한 의의를 무시했다. 지나친 좌파적 망동적 사상 경향이 있었다. 소련은 왜 출병하지 않느냐는 질책과 주은래 외무부장은 왜 단지 항의만 하고, 우리가 침략자를 물리칠 힘이 있다면 차라리 침략자들을 물리쳐 없애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이러한 인식은 부분적으로 학교에서 받기 서명

<sup>30)</sup> 房維中主編, 『中華人民共和國經濟大事記(1949-1980)』(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4年), 4~5월분 참조.

하는가 하면 중앙인민정부에게 조선전쟁에 대해 행동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3) 전쟁을 두려워하고, 어떤 학생은 제3차 세계대전 발발이 두려워 청년단을 탈퇴하겠다고 했다.<sup>31)</sup>

한편, 중공 중앙의 반혁명진압 지시에 따라 과거 반혁명분자들에 대해 관대하게 대해온 조치나 태도를 바꾸어 강경하게 진압하기 시작했다. 중공은 또한 한반도 전장에서 체포한 미군과 蔣介石의 중국국민당군 특무요원의 지휘관을 재판 없이 처분하는 행위를 통해서도 “대대적으로 간부 군중들의 정신적 각오와 ‘反漢奸’(외부 세력에 협조하거나 부역한 자에 대한 통칭) 운동의 열의를 고양시키려고 했다.” 1951년 4월 이전까지 미군과 蔣介石군 간첩들이 전개한 반혁명사건은 총 800여건에 달했고, 西北지구에서 시행된 반혁명진압 작전에서만 5,000여명의 간첩이 체포된 것으로 보고됐다.

중공이 전국 각지의 당 조직을 동원해 거국적으로 전개한 항미원조운동에 대한 중국인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 이에 대한 답은 크게 찬성과 지지를 보내고 적극 호응하고 참여하는 부류와 관망하거나 반대하는 부류로 나타났다.<sup>32)</sup> 山西省의 경우, 지식인은 표면적으로 抗美援朝전쟁을 지지하면서도 전쟁의 전망에 대해서는 회의했으며, 대부분이 미국을 두려워 한 공미사상이 극심했다. 또 공산당이 전하는 소식을 믿지 않았고, 중국국민당의 라디오방송을 자주 청취했다. 중공의 일반 당 간부들은 제3차 세계대전 발발이 일어 날 것을 염려했으며, 신입 간부는 變天사상과 미국에 대한 공포정서가 강했다. 전체적으로는 간부 군중들은 사상적으로 파동이 대단히 컸다. 특히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미국의 원자탄에 대해 크게 두려워했다.<sup>33)</sup>

전체적으로 조망하면, 察哈爾省과 여타 東北지방의 遼東, 遼西, 熱河, 黑龍江 등 각성의 각 계층의 반응은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과 대동소이한 패턴을 보여준다.<sup>34)</sup>

31) 『朝鮮人民軍自漢城撤退後重慶青年思想情況』, 『內部參考』, 第244號(1950年10月11日), 84~85쪽.

32) 侯松濤, 『全能政治：抗美援朝運動中的社會動員』(北京：中央文獻出版社, 2012年),

33) 『內部參考』, 第288號(1950年12月8日), 41~42쪽.

34) 『遼東, 遼西, 熱河, 黑龍江等省各階層對時局的反映』, 『內部參考』, 第296號(1950年12月18日), 93~97쪽. 察哈爾省 각 계층의 사상적 동향에 대해서는 『內部參考』, 第298號(1950年12月20日), 104~109쪽을 참조.

## V. 중국인민해방군의 참전 : 恐美심리와 勝美심리의 혼재

毛澤東과 彭德懷는 미군이 38선을 넘을 경우 반드시 개입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었다. 1950년 10월 중순 김일성의 구원 요청을 받아들인 毛澤東의 명령에 따라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부대(참전을 대비해 조직한 ‘東北변방군’이 모체가 된 이른바 ‘抗美援朝志願軍’) 25만 여명의 대군이 1진으로 압록강을 건너 극비리에 북한 땅으로 잠입했다. 그리고 약 1주일 뒤인 11월 초, 극비리에 입북해 매복하고 있던 중국군이 첫 전투(이른바 현재 중국에서 말하는 ‘제1차 전역’)에서 압록강을 향해 북진하고 있던 한국군만을 골라 기습 공격했다. 그런데 당시 중국의 매체들에는 중국군이 미군을 물리쳤다는 식으로 보도됐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공산당원들과 정부에 협조적인 성향의 적극분자들은 크게 흥분했다. 당시 일반 중국인들은 중국군이 참전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참전한 군인들은 상부의 지시로 자신의 가족에게도 참전 사실을 함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날아든 승전소식이었기에 더욱 흥분을 고조시켰을 것이다.

사실상 미군을 어떻게 대적할 것인가 하는 점은 참전결정 과정에서 毛澤東, 周恩來, 彭德懷 등 중공 수뇌부들에게 과연 무기 장비가 노후하고 빈약한 중국군이 당시 최첨단의 우수한 무기 장비로 무장한 미군을 물리칠 수 있을 지 의문시 됐던 문제였다. 그런 차에 중국군이 미군을 격퇴했다는 소식은 毛澤東뿐만 아니라 일반 민중들까지도 중국군이 직접 미국을 겨냥해야 한다는 자만을 드러내 보이게 했다. 또한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후방지역 역할을 해온 沈陽, 旅順, 大連 등의 東北지역 주요 도시들의 당 기관들은 군중들을 중국정부의 참전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게 하고 각종 행사나 지원활동, 헌금 및 징집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전장과 가까운 東北의 沈陽, 旅順, 大連 지역 군중들도 중국정부의 전쟁개입 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자기임무에 충실해 희생하는 이들이 나왔다.

하지만 갑자기 징병을 당해 전장터에 나가는 것에 대해 불만스러워 한 이들도 많았다. 심지어 東北지역의 민중들 가운데서도 출전 징병에 불만스러워 했으며, 적의 폭격시 방공호 설비에 대해서도 신뢰하지 않았으며, 變天사상까지 나타났다.<sup>35)</sup> 대학 교수, 교사, 변호사 등 지식인들은 겉으론 참전을 지지했지만 중국이 이길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으며, 미국에 대한 공포심리(恐美情緒)가 극심했다. 이들은 대체로 중공이 전하는 소식을 믿지 않고 국민당의 라디오방송을 자주 청취했다. 전체적으로 중공 당 간부들은 심리적 불안이 대단히 컸다. 일반 당 간부들은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것에 대해 염려했다. 신입 중공 당 간부는 ‘變天’사상과 공미심리가 강했다. 그들을 두렵게 한 것은 제3차 세계대전 발발과 미국이 원자탄을 투하할지도 모른다는 루머나 추측이었다. 미 공군 전투기의 공습을 이용한 臺灣의 중국국민당 특무들의 활동도 더 활발해졌다. 특무 중에는 한국의 인천에서 중국 山東, 華北지역으로 잠입해 들어가 거점을 만들어 암약한 이들도 적지 않았다. 山西省의 경우, 군벌 출신으로 蔣介石의 북벌과정을 전후해 중국국민당의 일원이 된 閻錫山군 계열의 장교, 一貫道와 천주교 신자들이 포함된 일부 지주들은 이 기회를 틈타 헛소문을 퍼트리면서 민심을 선동하기도 했다.<sup>36)</sup>

미군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나거나 강해진 것은 나중에 중국군이 평양을 점령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부터였다. 이 시기 중국인의 반응에서 두드러진 현상은 미군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의 회복이었다. 그렇지만 미 공군의 공습과 폭격에 대해선 여전히 두려워했으며, 미국을 겁내는 공미심리는 완전히 가시지 않았다.<sup>37)</sup> 또한 미국이 해군을 동원해 중국연안을 위협하거나 혹은 비행기를 동원해 중국연해 각 도시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이번 패배를 설욕하려고 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1950년 11월 중순경, 天津 지역 은행들이 연일 긴축했다. 이 탓에 며칠 동안 암시장에서 4~5원으로 거래되던 이자가 7~8원으로 폭등했다. 사채 고리대금 이자는 8~10원이나 됐다. 그러다보니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에서 빌린 소액 대출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 중간 이익을 취하는 상인들도 일부 생겨났다. 山西省 太原의 경우, 1950년 10월 중순 이후 한 달 동안 25종의 물가가 평균 100분의 10정도 올랐다.<sup>38)</sup>

35) 『內部參考』, 第281號(1950年11月30), 151~162쪽.

36) 『內部參考』, 第288號(1950年12月8), 41~42쪽.

37) 『解放平壤後天津市民反映』『內部參考』, 第293號(1950年12月14), 75~76쪽. ; 『解放平壤後天津市民反映(續誌)』『內部參考』, 第297號(1950年12月19), 99~100쪽.

38) 『山西省抗美援朝運動展開以來各階層思想動向』『內部參考』, 第288號(1950年12月8日), 41쪽.

## VI. 휴전협정 체결 전후 : 전쟁으로부터의 해방감과 새희망심리의 표출

1953년 7월, 휴전협정이 체결된 뒤의 중국내 동향은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다. 크게 보면 휴전에 대한 낙관과 비관이 교차하거나 반신반의 하는 이들로 갈렸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전쟁에 참전한 중국군의 혈육과 친지들의 반응이었다. 그들은 한시바빠 전장터에서 귀환할 아들을 보겠다는 일념으로 참전 군인들이 속히 귀국하길 고대했다. 중국군 군속들은 친지들이 하루 빨리 귀국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sup>39)</sup>

전쟁 내내 밤낮 구분 없이 등화관제 상태로 숨죽이면서 지내온 압록강 대안, 북한을 지척에 둔 지역 일대의 주민들은 안도의 한 숨을 내쉬었다. 어느 사회든 으레 그렇지만 휴전이라는 상황 변화에 상인들이 가장 민첩하게 움직였다. 天津지역의 영국, 스위스, 그리스 국적의 외국상인들은 대부분 이제부터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승만이 지금 소란을 피우고 있지만 별 수가 없다”고 하면서 “통상을 준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새로운 장애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자세를 보이기도 했다.<sup>40)</sup>

반면, 휴전협정은 “미 제국주의가 적의 공격을 늦추게 하고 숨을 돌리려는 술수를 부린 것이기 때문에 며칠 가지 못할 것이라거나, “길어 봤자 3개월을 가지 못 할 거”라는 말도 많이 떠돌았다. 휴전을 극력 반대한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이 돼도 혼자서라도 싸우겠다는 주장을 두고 전쟁포로 교환협정이 거짓 평화 공세의 술수가 아닐까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 과거 국공투쟁시 중국국민당과 중국공산당 양당이 그랬던 것처럼 서로 싸우면서 회담하고, 회담하면서 싸우는 꼴이 나지 않겠느냐고 지레짐작하는 이들도 있었다. 심지어 지방 1급 기관 간부들 중에도 휴전은 그야말로 9~11일 정도에 그치고 전쟁이 재발될 거라고 여긴 자들이 존재했다. 협상 중 “몇 차례나 협상을 중단한” “미 제국주의”의 침략본성은 변할 수 없으며,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은 호전적 인물이라는 게 이유였다.<sup>41)</sup>

39) 『内部參考』, 第185號(1953年8月10日), 100쪽.

40) 『内部參考』, 第178號(1953年8月1日), 8~9쪽.

다른 한편, 天津, 南京, 開封지역에서는 근거 없이 낙관하면서 전쟁에 대한 경계심이 사라진 분위기도 나타났다. 노동자들 중에는 한반도문제가 해결됐으니 즉각 중국군을 철수시켜 臺灣을 하루 빨리 해방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이들도 있었다. 또한 이제 ‘抗美援朝’ 구호는 없애도 되며, 중국군은 한시 바빠 귀국해야 하고, 전쟁비용을 위해 그간 압력을 받아온 현금도 더는 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펴는 사람들도 있었다. 조금 비판적인 사람들 가운데는 중국이 참전해서 얻은 게 무엇인가 비아냥거리면서 참전 대가에 대해 회의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다. 그들은 중국이 참전했지만 臺灣해방을 이루지 못했으며, 유엔에도 가입하지 못했으니 아무 것도 이룬 게 없지 않느냐는 얘기였다. 또 그나마 과거에는 抗美援朝運動이 모든 공작의 중심이자 동력이 됐는데 휴전이 된 지금부터는 무엇을 경제건설의 동력으로 삼을지 우려하는 소리도 나왔다.<sup>42)</sup>

반면, 이승만 대통령이 홀로라도 싸우겠다고 하니 예전 국공 간에 싸우면서 회담하고, 회담하면서 싸우는 꼴이 나지 않겠느냐고 하면서도 지금부터는 사업이 잘 될 것이며, 미국 상품들도 수입될 것이며, 정전 후에 정부가 건설로 나아가면 도처에 인력이 필요할 것이며, 실업자도 취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있었다.<sup>43)</sup>

## 맺음말

해방 6년 차에 한반도에서 느닷없이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이 소식을 들은 중국인들 가운데 놀라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20여년 이상 지속된 항일전쟁과 국공내전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은 그들에게 한반도에서의 전쟁발발은 하나의 충격이었다. 毛澤東이 전쟁 모의에 깊숙이 개입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던 일반 중국인들로서는 급작스런 전쟁발발 소식에 충격을 받고, 불안감을 감추지 않았다. 중국과 강을 사이에 두고 이웃하고 하고 있는 한반도에서의 전쟁발발은 곧 중국의 안전에 직

41) 『内部參考』, 第179號(1953年8月3日), 24쪽.

42) 『内部參考』, 第180號(1953年8月4日), 30~32쪽.

43) 『内部參考』, 第180號(1953年8月4日), 32쪽.

결되는 문제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전쟁소식에 무감각하게 지내는 이가 없었으며, 그들은 매 전황의 변화에 신경을 쓰고 전황변화를 알리는 보도가 나올 때마다 일희일비하면서 중국사회가 들썩거렸다. 그만큼 한국전쟁은 중국과 자신의 안위와 직결돼 있었기 때문에 각종 풍문과 유언비어를 자아내기에 충분한 극적 요소를 지니고 있었다.

중국이 개입해 초기 북한의 파죽지세를 막고 북진해온 미국의 군사행보에 급제동을 걸자 중국인들은 대부분 강 대 강이 맞부딪치는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지 않을까 우려하기 시작했다. 미군의 북진은 북한의 점령이 아니라 다시 중국으로 진출할 것으로 예단한 경향이 강했기 때문에 미군의 북진공격은 중국사회에 각종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급기야 세상이 바뀐다는 天變사상이 춤을 추게 하기에 충분했다. 여기에 천주교 등 종교인들이 일반의 두려움 속으로 파고들었다. 민심의 동요는 당연히 중국경제에 메가톤급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상공업계 전체가 출렁거렸다. 흔히 “경제는 심리다”라는 말이 실감시키듯이 당시 중국 대도시에서 주가가 폭락하고 물가는 오른 반면, 달러와 금값은 폭등했다.

중국인들의 두려움과 공포감은 미 공군기가 압록강 대안의 중국 영토를 폭격 혹은 기총소사로 공격하는 등의 침범 소식이 전해준 뒤로 더욱 확산됐다. 그것은 毛澤東이 주창해 중공 지도부에서 일반화 된 상황판단, 즉 미군이 북한점령에 만족하지 않고 다음 목표는 중국이라는 예단의 영향을 받은 나머지 사람들은 가족과 개인의 안전을 도모하고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 가진 물건과 주식을 처분하거나, 피난을 가도 어디서든 통용 가능한 금을 사재기하는 행태가 일반화 됐다. 그러한 현상은 전국 어디서든 볼 수 있던 현상이었다. 이에 대응해 중국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방관하지 않고 깊이 개입해 일반인들의 공포심리를 통제하기 시작했다. 민간인 단체들이 나서서 전국적으로 전개한 ‘반침략선전운동’은 모두 중공이 막후에서 주도한 것들이었다. 즉 군중들의 불만과 공포심을 밖으로 돌리게 하는 대상으로 이른바 ‘미 제국주의’가 만들어졌다. 이는 동시에 민족주의를 자극시킨 정치공작이기도 했다.

한국군과 유엔군이 감행한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소식은 중국사회에 기존에 존재해오던 초기 단계의 우려 수준을 넘어 미군의 반격이 북한으로 이어질 것이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현실로 다가오는 듯한 충격을 안겨다 줬다. 중국정부가 시행한 공업시설의

오지 이전은 사람들의 불안심리를 더욱 부채질하기에 충분했다. 이러한 심리가 확산되면서 주식폭락, 금값이 상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심지어 민중들 사이에는 중국정부를 불신하는 경향까지 보이기 시작했다. 이 기회를 틈타 대륙에서 암약하고 있던 중국국민당의 간첩들이 중국 전역에서 고개를 내밀고 각종 테러나 사회교란, 유언비어 확산 등 반중공 공작을 전개했다. 외부세력이 일으킨 전쟁이 또 다시 내부 중국인끼리의 투쟁과 전쟁으로 치닫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과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한 상황이었다. 사람들의 불안감과 의심과 위기의식이 날로 극성을 부리게 되면서 ‘變天사상’이 또 다시 춤을 추기 시작한 것은 이를 말해준다.

이런 상황을 수수방관할 수 없는 중공과 중국정부는 좌시할 수 없었다. 당과 정부의 간부들은 전국의 각종 기관들을 동원해 각급 학교별로 ‘항미원조운동’, 전쟁지원단체, 비행기 헌납 등과 관련된, 조직의 결성을 위한 발기 서명운동을 전개시켰다. 이에 대해 중앙정부에게 한국전쟁에 개입하라고 요구하는 주장까지 대두됐다. 제3차 세계대전의 발발이 두려워 각종 청년단을 탈퇴한 자들도 있었듯이 크게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부류도 있었지만 불만을 가지고 기피하는 상반된 현상이 나타났다. 사회적인 혼란은 경제적인 혼란을 잠재울 수 없었고, 여전히 압달러와 금값이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었다.

이 모든 충격, 혼란, 혼돈, 의구심, 불안, 공포, 도피 등의 상황은 전쟁이 종결되지 않는 한 사그라들기 쉽지 않다. 이윽고 1953년 7월 휴전협정이 체결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혼란과 불안심리가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안도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휴전은 일시적인 것일 뿐, 다시 전쟁이 재개될 것이라는 의구심을 표시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대체로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에 새로운 희망을 말하는 게 대세였다.

마지막으로 이번 관찰을 통해 한시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중국인들의 다양한 반응과 행동은 지역마다, 계층마다, 직업마다 달리 나타났고, 그러한 편차를 무시하고 부분의 현상들을 전체상인양 일반화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 문제는 향후 더 많은 사실들을 토대로 표본추출과 통계학적 방법론을 활용하는 등 이에 합당한 사회학적인 연구방법론을 가지고 새롭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

【제5발표】

# 냉전시기 동아시아 권위주의 국가 신문통제체제의 구축 과정

- 대만과 한국의 비교를 중심으로 -

왕언메이\*

1. 머리말
2. 대만 신문통제체제의 구축
3. 한국 신문통제체제의 구축
4. 대만과 한국의 신문 통제 정책의 차이와 원인
5. 맺음말

## 1. 머리말

1992년 외교가 단절된 후 한국과 대만의 관계는 급속도로 멀어져 갔다. 양국의 국민들은 한국과 대만이 밀접한 외교관계를 유지하며 동맹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잊어가고 서로 낯설어졌다. 그러나 한국과 대만은 유사한 역사적 경험을 지니고 있다. 대만과 한국은 모두 식민지 시기를 겪었으며, 해방 후 두 국가 모두 ‘반공진영’에 소속되어 반공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국가체제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냉전시기 두 국가 모두 권위주의 독재 정권의 성질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1987년에 한국은 ‘민주화선언’을 선포하고, 대만도 같은 해 계엄령을 해제해, 두 국가는 1987년이라는 같은 시기에 민주화 사회로 전환하기 시작한다.

---

\* 王恩美, 대만국립사범대학.

권위주의 정권에 있어서는 언론 통제는 정권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한다. 언론을 통해 정권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강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중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언론의 민중 의사 반영 기능을 마비시킴으로서 정부의 위협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권위주의 국가 시기 대만과 한국 정부 모두 언론통제체제를 구축했다.

신문은 양국이 모두 무척 중시하는 언론매체 중 하나이다. 그러나 양국 역사 발전의 차이로 인해 신문통제체제의 구축 시기와 과정은 차이가 있다. 시기적으로는 대만은 1950년대인 반면, 한국은 1960에서 70년도 초기에 걸쳐 신문통제체제를 구축한다. 방법적으로는 대만은 직접적이고 강압적인 방법을 취하는 한편, 한국은 간접적이고 유희적인 방법을 사용했다.

양국의 통제체제 구축 시기와 방법이 다른 것은 권위주의 정권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비교적인 시각에서 대만과 한국의 신문통제체제의 구축 과정과 방법을 검토하고 왜 이런 차이가 생겼는지 그 원인을 살펴 보도자 한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검토시기가 다른 점이다. 대만과 한국 의 신문통제체제의 구축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대만은 1950년대, 한국은 1960에서 70년대가 주요 검토시기이다.

이러한 비교 분석을 통해서 한국과 대만의 민주화 이전의 신문 정책의 차이와 특색을 찾아내고, 이로 인해 양국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기를 기대한다.

## 2. 대만 신문통제체제의 구축

### 1) ‘신문금지(報禁)’제도의 구축과정

1945년 일본이 항복하고 1947년 ‘2.28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시기는 신문, 잡지 수량이 우후죽순처럼 증가하고 일정한 언론 자유성을 가진 민주화 이전의 대만 언론사상 가장 자유로운 시기라고 할 수 있다.<sup>1)</sup> ‘2.28사건’ 후 국민당은 언론 통제를

1) 楊秀菁, 『臺灣戒嚴時期新聞管制政策』(板橋: 稻香, 2005), p.29,39-43.

강화해 나간다. 그러나 중화민국정부가 대만으로 이전하기 전까지는 언론은 여전히 자율성을 확보한 상태로 철저한 언론통제에는 도달하지 못했다.<sup>2)</sup>

1945년 5월 대만에서 계엄령을 발포되고, 12월 중앙정부가 대만으로 이전한 후 제도화된 언론통제가 실시된다. 중화민국정부가 실시한 신문통제정책은 일반적으로 ‘신문금지(報禁)’정책 이라고 한다. ‘신문금지’정책은 출판 환경을 제약하는 것으로 통제 효과를 발휘하는 방식이다. ‘신문금지’정책은 신문 등록증을 제한하는 ‘한증(限證)’, 신문지의 양을 제한하는 ‘한장(限張)’, 신문을 발행할 때 신문 등록증을 등록한 소재지에서만 인쇄·출판하도록 제한하는 ‘한인(限印)’으로 나눌 수 있다.<sup>3)</sup>

신문의 양과 등록증을 제한하기 시작한 원인은 2차세계대전 이후 물자 부족 때문이었다. 1951년 초 대만성정부(臺灣省政府)는 각 현과 시의 신문지 용지 사용량을 ‘큰 한 장과 반 장(一大張半)’ 즉 3면으로 축소했다. 신문지 양을 제한하는 것으로 신문의 기사량을 제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같은 해 6월 행정원훈령(行政院訓令)에 따라 대만성정부는 신문사, 잡지사, 통신사에 대해 ‘등록증 제한’을 실시했다. <sup>4)</sup> 이 규정에 의하면 주관 관청은 실제 상황에 따라 신문지 양과 기타 인쇄 원료를 공급할 수 있었고, 절약 원칙과 중앙정부의 명령에 따라 신문과 잡지의 수량을 조절할 수 있었다.<sup>5)</sup> 따라서 7개의 신문사만 등록증을 발급 받았다.<sup>6)</sup> 그 후 중화민국정부는 새 신문의 발행을 허가하지 않았다.

인쇄·출판 지역을 제한하기 위해 정부는 신문사에게 반드시 발행소 및 인쇄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명기하도록 했으며 동일 신문이 다른 지역에서 출판할 때에는 사전에 미리 등록 신청을 하도록 했다.<sup>7)</sup> 그러나 ‘신문 등록증 제한 정책’으로 인해 다른

2) 何義麟, 「媒介真實與歷史想像—解讀1950年代臺灣地方報紙」, 『臺灣史料研究』, 24(臺北, 2005.3), p.5.

3) 楊秀菁, 「戰後國民黨新聞政策與報業自主意識的轉變—以戒嚴時期歷次『出版法』修訂為中心的分析」, 『現代學術研究』, 13(臺北, 2004.12), p.113.

4) 楊秀菁, 「戰後國民黨新聞政策與報業自主意識的轉變—以戒嚴時期歷次『出版法』修訂為中心的分析」, p.116.

5) ‘出版法’第28條規定. 陳國祥, 祝萍, 『臺灣報業演進40年』(臺北: 自立晚報, 1987), p.56.

6) 7개의 신문사는 『中國郵報』(1952年9月創刊), 『青年戰士報』(1952年10月創刊), 『工商日報』(1953年8月創刊), 『中國晚報』(1955年10月創刊), 『成功報』(1956年10月創刊), 『馬祖日報』(1957年9月創刊), 『英文中國報』(1960年7月改版為報紙). 그중 『青年戰士報』와 『馬祖日報』는 군영 신문이다. 楊肅民, 『限證政策下我國報業問題研究』(臺北: 國立政治大學新聞研究所碩士論文, 1985), p.14-17 참조.

지역에서의 발행을 허가 받는 것은 무척 어려웠다. 따라서 대북에서 발행하는 신문은 남부 혹은 다른 지역에서 인쇄소를 설립하거나 남부 신문사가 북부 혹은 다른 지역에서 인쇄소를 설립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sup>8)</sup>

‘신문금지’정책 중 가장 영향이 큰 것은 ‘신문 등록증 제한 정책’이었고 이 정책 하에서는 신문 시장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등록증을 구입해 발행인 명의를 변경하거나 신문의 이름을 변경해 발행할 수밖에 없었다. 다만 각지에서는 ‘등록증’을 둘러싸고 고가 매매가 성행하는 현상까지 일어났다.<sup>9)</sup>

종합해서 말하자면 대만은 ‘신문금지’정책을 통해 신문 매체의 객관적인 환경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통제를 진행했다. 1950년대 초 대만은 거의 아무런 저항 없이 ‘신문금지’정책이 신속하게 신문통제 제도로 자리잡았다.

## 2) 언론 법제를 이용한 직접적인 언론 내용 통제

‘출판법’ 제33조에 의하면 출판물은 ‘내란죄, 외환죄, 공무방해죄, 혹은 질서방해죄, 사전(祀典)모독죄, 혹은 풍기방해죄를 위반하거나 타인이 위반하게끔 선동’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었다.<sup>10)</sup> 그리고 ‘출판법’ 제33조에도 ‘전시 혹은 변란, 또는 헌법에 의해 급속한 처리가 필요할 시에는 중앙정부의 명령에 의해 출판물의 정치, 군사, 외교 혹은 지방 치안 사항의 게재를 금지 혹은 제한할 수 있다’고 명기되어 있다.

11) 1949년 6월 22일 공포한 ‘대만성계엄기간신문잡지도서관리관법(臺灣省戒嚴期間新聞雜誌圖書管理辦法)’의 ‘관리’를 ‘관제’로 수정해, 1953년 7월 27일 ‘대만성계엄기간신문잡지도서관제관법(灣省戒嚴期間新聞紙雜誌圖書管制辦法)’을 공포했다. 그 중 제2

7) ‘出版法施行細則’ 第6條：同一新聞紙或雜誌另在他地出版發行者，或出版業另在他地設立分支機構者，均應依照出版法第九條及第十六條之規定，先行申請核准登記。

8) 陳國祥, 祝萍, 『臺灣報業演進40年』, p.56.

9) 何義麟, 『媒介真實與歷史想像—解讀1950年代臺灣地方報紙』, p.8,10.

10) ‘出版法’(1952년3월25일 수정공포), 立法院法律系統: <http://lis.ly.gov.tw/lglawc/lawsingle?0^986006918181D81C600681F281C09A64668189A1C01960869181>(방문일자: 2016년12월 1일).

11) 『出版法』(1952년3월25일수정공포), 參考: 立法院法律系統.網址: <http://lis.ly.gov.tw/lglawc/lawsingle?0^986006918181D81C600681F281C09A64668189A1C01960869181>(방문일자: 2016년12월1일).

조에서는 ‘신문지, 잡지, 도서, 공지, 표어 및 기타 출판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7 항목 내용의 기재를 금지시켰다. ①군사 신문 발행 기관의 공포를 거치지 않은 ‘군기 종류범위령(軍機種類範圍令)’에 열거된 각 항목의 군사 소식에 관한 발표. ②국방, 정치, 외교에 관한 기밀. ③공비(共匪)선전을 위한 도서 문자. ④국가원수를 비방하는 도서 문자. ⑤반공항아(反共抗俄) 국책에 위반된 언론. ⑥시청(視聽)을 혼란시키기에 충분하고 민심과 사기에 영향을 주고, 혹은 사회 치안을 해치는 언론. ⑦정부와 국민 감정을 도발하는 도서 문자.<sup>12)</sup>

만일 ‘출판법’ 혹은 ‘대만성계엄기간신문잡지도서관제관법’을 위반하면 ‘발행 일시 정지’를 명할 수 있었다. 또한 ‘발행취지’ 역시 언론 내용을 통제하는 중요한 기준이었다. 신문 혹은 잡지는 발행 전에 등록증을 신청해야 하는데 그 신청서에는 반드시 ‘발행취지’를 명시해야 했다. 만일 발행 취지를 위반하면 ‘출판법’에 따라 ‘발행 일시 정지’를 명할 수 있었다.<sup>13)</sup> 비록 명확하게 문자로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발행 정지 기간은 1년에 달하거나 무기한인 경우도 있었다.<sup>14)</sup>

‘대만정보안사령부(臺灣省保安司令部)’(이하 보안사령부)는 언론 내용의 통제를 실제로 집행하는 기관이다. 보안사령부는 필요 시, ‘대만성계엄기간신문잡지도서관제관법’ 제3, 4조에서 규정한 신문, 잡지 및 기타 출판물에 대해 ‘사전 검열’을 실시하고 1부를 보안사령부에 보내 검열에 대비하도록 규정했다.<sup>15)</sup> 1953년 ‘대만성계엄기간신문잡지도서관제관법’이 공포된 후, 이 법은 1987년 계엄령이 해제되기 전까지 신문매체의 보도 내용을 통제하는 가장 중요한 법률이 되었다.

1950년 중반부터 국민당 내부와 장개석은 신문 매체의 언론에 대해 강도 높은 우려를 보이며 ‘출판법’을 수정했다. 1958년 3월 28일 내정부(內政部)는 ‘출판법수정초안’을 입법원(立法院)에 보내 ‘비밀심사’를 진행한다. 비록 ‘비밀심사’가 폭로되어 신

12) 楊秀菁, 薛化元, 李福鐘編, 『戰後臺灣民主運動史料彙編(七)新聞自由』(新店: 國使館, 2002), p.387.

13) ‘出版法’(1952年3月25日 수정공포)第41條3,4款: 出版品有左列情形之一者, 得定期停止其發行. 一, 不為第九條或第十七條之聲請登記, 或就應登記之事項為不實之陳述而發行出版品者. 二, 不為第十條或第十八條之聲請變更登記, 而發行出版品者. 三, 出版品之記載違反第三十三條第一款之規定情節重大者. 四, 出版品之記載違反第三十五條之規定情節重大者. 前項定期停止發行處分, 非經內政部核定不得執行.

14) 楊秀菁, 『臺灣戒嚴時期新聞管制政策』, p.131-133.

15) 楊秀菁, 薛化元, 李福鐘編, 『戰後臺灣民主運動史料彙編(七)新聞自由』, p.388.

문업공회(報業公會)가 이에 항의하며 5월 6일 청원서를 입법원(국회)에 제출했지만 아무런 효과도 발휘하지 못 했다. 1958년 6월 20일 ‘출판법’은 입법원 제 21회기 제 12차 ‘비밀회의’에서 통과됐다.<sup>16)</sup> 1958년 ‘출판법’의 가장 큰 영향은 ‘발행 일시 정지’에서 ‘등록 말소’로 단속 강도를 높인 점이다. 1958년 전 정부에 의해 ‘부당언론’으로 낙인 찍히면 신문사에 대한 최대 처벌은 발행을 일시 정지시켜 경영난을 유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1958년 이후에는 신문사는 ‘등록 말소’로 인해 폐업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sup>17)</sup>

### 3) ‘개조위원회중양제4조’의 기능

국민당 조직인 ‘개조위원회중양제4조’(이하 ‘제4조’)는 언론통제에 있어 무척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52년 10월 당 개조를 완성한 후 ‘제4조’는 정치선전을 전담하며 신문 보도와 언론계 인사의 임명권을 장악하게 된다. ‘제4조’는 언론인을 지도해 보도 내용이 당의 노선에 부합하도록 이끌어가는 역할도 맡았다. ‘제4조’의 업무내용은 신문, 도서 등 간행물을 심사하고 라디오 사업 정책, 언론 정책을 세우는 것도 포함 되어 있었다.<sup>18)</sup>

‘제4조’의 주요 업무는 언론 매체를 감시, 지도하고 처벌하는 것이었다. ‘제4조’ 주 임은 주로 신문사 사장, 편집장에게 전화로 직접 원칙을 지시했다.<sup>19)</sup> 그리고 정식 혹은 비정식 집회를 통해 민감한 주제에 대한 지시를 책임자에게 지시하는 방식을 취하거나 직접 언론에 압력을 가해 책임자를 교체시켰다. 심지어는 발행을 정지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1972년 ‘제4조’는 ‘중앙문화공작회(中央文化工作會)로 개편되었다. 1970년대 대만의 경제 발전, 국제환경의 변화, 장경국(蔣經國)시대의 막이 오르면서 국민당의 신문통제 정책은 점차 완화되기 시작한다.

16) 楊秀菁, 『戰後國民黨新聞政策與報業自主意識的轉變—以戒嚴時期歷次「出版法」修訂為中心的分析』, p.146.

17) 楊秀菁, 『戰後國民黨新聞政策與報業自主意識的轉變—以戒嚴時期歷次「出版法」修訂為中心的分析』, p.147.

18) 袁公瑜, 『國民黨文工會職能轉變之研究』(宜蘭: 佛光人文社會學院政治學研究所, 2002), p.2-3, 29-30.

19) 袁公瑜, 『國民黨文工會職能轉變之研究』, p.34,40.

### 3. 한국 신문통제체제의 구축

#### 1) ‘언론기업화’ 제도의 구축과정

1945년에서 1948년까지 미군정청의 조선 남부 언론에 대한 방침은 공산주의노선 신문과 중간 좌파 신문을 폐간시키고 우파적인 언론매체를 배양하는 것이었다. 1948년 8월 대한민국정부(이하 한국정부) 설립 후, 동년 9월 이승만정부는 남은 좌파 신문매체를 철저히 제거하고 정부에게 도전하는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 ‘언론단속사항’ 7개항을 발표한다.<sup>20)</sup> 그러나 실질적인 통제 효과는 발휘하지 못 했다.

1961년 ‘5.16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정부는 1962년 6월 28일 ‘최고회의언론정책’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정부가 신문사를 위해 필요한 자금 융자 등 최대의 지원과 편의를 제공해 신문사를 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었다. 21)박정희정부는 소자본 언론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한편, 비교적 큰 규모를 지닌 신문사를 ‘기업화’하기 위해 다양한 경제적 지원책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지원책은 은행융자의 앞선, 신문용지 배급상의 특혜, 차관제공 등이다. 22)

1962년부터 모든 신문사가 필요한 신문용지를 신문협회가 일괄 수입 분배하도록 했다. 1967년 무역자유화 정책의 실시로 인해 신문용지는 수입자동승인 품목으로 지정되었고 신문, 교과서, 정기간행물용 수입용지의 관세율은 4.5%로 다른 일반 수입 상품에 비해 25.5%를 감면혜택 받은 셈이었다. 이를 통해 신문용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통로가 구축되었다. 또한 1962년부터 1972년까지 신문용지의 신문사

20) 이승만정부가 발표한 ‘언론단속사항’ 7개항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의 국시, 국책을 위반하는 기사. 2. 정부를 모략하는 기사. 3.공산당과 이북 괴뢰정권을 인정 내지 비호하는 기사. 4.허위 사실을 날조, 선동하는 기사. 5.우방과 국교를 저해하고 국위를 손상하는 기사. 6.자극적인 논조나 보도로써 민심을 격앙 소란케 하는 민심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기사. 7.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기사. 송건호, 『한국현대언론사』(서울 : 삼민사, 1990), p.78-79 ; 김민환, 『한국언론사』(서울 : 나남출판, 2002), p.407.

21) 寬黨클럽信永研究基金, 『韓國言論法令全集(1945-1981)』(서울 : 寬黨클럽信永研究基金, 1982), p.783-784.

22) 이용준, 『1960년대 신문산업의 재생산구조』, 김왕석, 임동욱『한국언론의 정치경제학』(서울, 아침, 1992), p.166.

공급가격을 일반 시판 가격 보다 낮게 책정하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신문용지의 가격인상을 통제해 신문산업의 이윤을 확보해 주었다. 23)

1965년 자본주의 경영방식을 표방하며 설립한 『중앙일보』의 대규모 인쇄시설투자는 신문 인쇄의 자동화, 고속화 시대의 막을 올려 다른 일간 신문사들의 시설투자 경쟁을 불러 일으켰다. 1966년부터 신문사들은 고속운전기와 각종 생산 기계설비를 들여와 인쇄시설을 큰 폭으로 확충했다. 그러나 당시 신문사들은 이러한 시설투자를 위해 은행 등 외부 용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박정희정부는 ‘신문협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1967년부터 은행용자 금리를 26%에서 18%로 인하해 주었다.24)

이러한 정부의 신문용지 관세, 신문용지의 국내 공급가격 및 금융특혜 등의 우혜조치로 서울 위주의 신문사들이 점차 ‘기업’으로 성장해 갔다. 1970년대부터 ‘기업’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한국정부의 특혜 외에 한국의 신문사가 ‘기업’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광고수입의 증가’ 때문이었다.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를 예를 들자면, <표1> 과 같이 1970년대 들어 광고수입이 판매수입을 초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25) 이것은 신문사의 광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광고가 주요 수입원으로 자리잡았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한국정부는 재벌그룹이 언론사를 경영해 시장을 독점하는 것을 허용했다. <표2>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1970년대 초기 재벌그룹이 주요 방송사, 통신사, 신문사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삼성그룹은 『중앙일보』와 동양방송을 소유하고 있고, 경방그룹은 『동아일보』를 소유하고 있다.

23) 문종대, 「1970년대 신문산업의 자본축적과정」, 김왕석, 임동욱, 『한국언론의 정치경제학』(서울, 아침, 1992), p.195-196.

24) 당시 한국의 은행 용자 이자는 26-24%였고, 지하 금융의 이자는 58.8%-50.8%였지만 언론매체에 대해서는 용자 이자를 18%로 낮춰 주었다. 이용준, 「1960년대 신문산업의 재생산구조」, p.167-170.

25) 『東亞日報』의 판매액은 1962년 2억1,500만원이었는데, 1965년에는 6억400만원, 1970년에는 27억4,600만원, 1975년에는 43억2,100만원, 1979년에는 206억4,000만원으로 증가했다. 주동환, 『한국정부의 언론정책이 신문 산업에 미친 영향에 관한 일고찰』, (서울: 서울대학교신문학과 박사학위논문, 1992), p.99,134.

〈표1〉 신문판매 수입과 광고 수입의 비교

년도	동아일보		중앙일보	
	판매수입 비율	광고수입 비율	판매수입 비율	광고수입 비율
1970	50.5%	49.5%	49.6%	50.4%
1971	44.9%	55.1%	52.6%	47.4%
1972	48.2%	51.8%	55.2%	44.8%
1973	42.6%	57.4%	53.4%	46.6%
1974	44.3%	55.7%	56.9%	43.1%
1975	63.4%	36.6%	48.4%	51.6%
1976	44.7%	55.3%	46.6%	53.4%
1977	43.7%	56.3%	46.0%	54.0%
1978	42.7%	57.3%	48.3%	51.7%
1979	46.0%	54.0%	39.2%	60.8%

자료 : 김해식, 『한국언론의 사회학』(서울 : 나남, 1994), p.209.

〈표2〉 1970년대 재벌그룹이 소유한 언론사

그룹명	소유 언론사
럭키그룹(현 LG그룹)	국제신문, 경남일보, 부산문화텔레비전, 진주문화방송
삼성그룹	중앙일보, 동양방송(리디오, 텔레비전), 동양방송부산국리디오, 텔레비전)
쌍용그룹	동양통신, 대구문화방송(리디오, 텔레비전)
동부그룹	강원일보, 춘천문화방송, 삼척문화방송
일신그룹	충청일보, 청주문화방송
두산그룹	합동통신
동아그룹	대전문화방송(텔레비전)
미원그룹(현 대상그룹)	전주문화방송
경방그룹	동아일보, 동아방송

자료 : 김해식, 『한국언론의 사회학』(서울 : 나남, 1994), p.211.

주의해야 할 것은 『조선일보』, 『서울신문』 등 재벌그룹이 경영하지 않는 언론사도 ‘언론기업화’ 정책에 의해 경영 규모가 확대되고, 광고양의 증가로 ‘대기업’으로 성장했다는 것이다. 박정희정부는 언론사가 광고업, 레저산업, 운송업, 호텔 및 문화산업 경영을 허가하고 필요한 융자도 알선해 주었다. 언론매체들은 1970년대에 ‘대자본가’로 성장했다.

## 2) 간접적인 언론법령을 이용한 언론 내용 통제

1948년 이승만정부는 ‘언론단속사항’을 발표했지만 법적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이승만정부는 1948년, 1952년, 1955년 각각 직접적으로 언론과 연관된 법령을 제정하려 했지만 모두 실패했다.<sup>26)</sup> 박정희정부도 직접적으로 언론과 연관된 법령을 제정해 언론 내용을 통제하려 했지만 역시 실패로 끝나고 만다. 1964년 7월 30일 집권 여당인 공화당은 ‘언론자율적규제강화7개항목’을 기초로한 ‘언론윤리위원회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8월 2일 통과되었다. <sup>27)</sup> ‘언론윤리위원회법안’에서는 각 언론기관은 의무적으로 윤리위원회 회원이 되고, 각 언론기관의 대표 1명으로 언론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보도에 대한 심사와 제제를 위해 윤리위원회 안에 심의회를 둔다고 규정했다. 심의회는 제제방법으로 회원사에게 정간 권고, 경고, 해명, 정정, 사과를 지시할 수 있었다. 그리고 윤리요강에는 헌법기관에 대한 모독, 국가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거나 선동하는 것, 반공법 국가보안법 및 형법의 명예훼손에 저촉되는 보도를 범규사항으로 규정했다.<sup>28)</sup>

정부가 윤리위원회를 이용해 언론 내용을 통제하고자 하는 의도가 명확히 들어났고, 이는 언론계의 커다란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1964년 8월 3일 ‘한국신문편집인협회’는 ‘언론윤리위원회법안’은 헌법 위반이며 비민주적인 악법이라고 비판하며 악법폐기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 기사단에서도 성명을 발표하고 동법의 전면철폐를

26) 이승만정부는 1948년 10월 ‘신문 기타 정기간행물법’ 초안을 작성해 공보부와 법무부의 심사를 통과했다. 그러나 ‘조선언론협회’, ‘조선신문기자협회’ 등 언론매체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입법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1952년에도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기타 출판물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출판물 관련 법안을 제정하려고 했다. 이 법안에 의하면 국가보안을 문란케 하는 선동 기사를 게재했을 경우에는 출판심의위원회의 결의를 얻어 해당 부분의 삭제, 취소, 정정 또는 정간을 명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1955년에는 ‘출판물에 대한 임시 단속법’의 제정을 다시 추진했다. 법안의 내용은 출판물법과 대체로 비슷하지만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편집인 및 인쇄인의 자격을 제한하고 외국 출판물물의 수입을 허가제로 하는 등 일부 조항은 더욱 엄격한 것이었다. 각 신문은 이에 반대하는 사설을 싣고 반발했다. 이승만정부는 결국 여론의 압력에 눌러 입법에는 실패했다. 김민환, 『한국언론사』, p.457,459-460.

27) 「言論規制·學園保護法案 電擊적으로 單獨提案」, 『경향신문』(서울), 1964년7월30일, 1版. 「「言論倫理委」法案通過 日曜日·深夜會議서 共和黨 贊成」, 『경향신문』, 1964년8월3일, 1版.

28) 「共和黨法案審議完了」, 『동아일보』, 1964년7월30일, 1版.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했다. 발행인협회, 통신협회, 편집인협회, IPI한국위원회<sup>29)</sup>, 신문윤리위원회 등 5개 언론단체는 ‘언론윤리위원회법 철폐투쟁위원회’를 구성했다.<sup>30)</sup> 8월 17일에는 한국에서 정식으로 ‘한국기자협회’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한국신문발행인협회’는 정부의 결정에 굴복하고 만다. 8월 18일 ‘한국신문발행인협회’는 이사회를 소집해 ‘언론윤리법’이 제정 공포된 이상 법절차에 따른 개정 또는 철폐를 위한 노력은 계속토록 하되 법 자체는 지켜야 한다고 합의했다.<sup>31)</sup>

‘한국신문편집인협회’와 ‘한국기자협회’는 ‘한국신문발행인협회’의 결정에 반대를 표명하며 법안폐지를 골자로 하는 진정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와 언론매체 사이의 대립구조가 날로 심각해지자, 1964년 9월 8일 언론계 원로급 인사들이 박정희를 접견하고 자율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전제로 동법의 시행 보류를 요청했다. 다음날 박정희가 이 건의를 받아들여 윤리위원회 소집을 무기한으로 연기한다고 발표해 이 사건은 일단락되었다.<sup>32)</sup> 결국 ‘언론윤리위원회법’의 입법은 실패로 끝났다.

1960년대 박정희정부의 언론 내용 통제는 주로 ‘국가보안법’,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반공법’ 등의 법률이 적용되었다. 1970년대에는 국회를 통과할 필요 없이 대통령이 바로 발표할 수 있는 ‘대통령 긴급조치’가 언론 내용을 통제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sup>33)</sup> 특히 1975년 5월 13일 공포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에서는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외곡하는 행위가 금지 되었다. 또한 집회, 시위 또는 신문, 방송, 통신 등 공중전파수단이나 문서, 도서, 음반 등 표현물에 의하여 헌법을 부정, 반대, 외곡 또는 비방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기를 주장, 청원, 선동, 선전하는 행위도 금지 되었다. 만일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정부가 방송, 보도, 제작, 판매 또는 배포를 금지할 수 있었고 등록을 취소할 수 도 있었다. 심지어는 법관의 영장 없이 위반자를 체포, 구금, 압수, 수사할 수 있었다.<sup>34)</sup> 그 후 ‘대통령 긴급조치 제9

29) 국제언론단체인 국제언론인협회(International Press Institute) 는1951년에 결성되었고, ‘IPI 한국위원회’는 1961년에 설립되었다.

30) 김해식, 『한국언론의 사회학』(서울 : 나남, 1994), p.111-112.

31) 김해식, 『한국언론의 사회학』, p.114.

32) 김민환, 『한국언론사』, p.594.

33) 김민환, 『한국언론사』, p.497.

34) 『大統領緊急措施第9號』, 第1,2,5,8條 收入於 : 寬薰클럽信永研究基金, 『韓國言論法令全集(1945-1981)』, p.799.

호'는 언론 내용을 통제하는데 가장 중요한 법률로 자리 잡았다.

### 3) 경영층을 이용한 언론사와 언론 내용 통제

비록 '언론윤리위원회법'의 입법은 실패로 끝났지만 이 사건은 한국 언론매체 역사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는 정부와 언론매체의 충돌이 처음 표면화된 사건이고, 이 사건은 언론매체의 내부구조 변화를 가져왔다. 한국 언론매체는 경영자와 편집인, 기자가 결속해 정부 압력에 대항하는 전통이 있었다. 그러나 경영자 단체인 '한국신문발행인협회'가 '언론윤리위원회법사건'으로 인해 정부 쪽으로 돌아서게 되었다.

언론사 경영층은 위에서 서술한 정부의 각종 특혜 정책으로 인해 정부 측으로 기울어갔다. 신문의 성질에 있어서도 점차 정론 신문의 색채에서 탈피해 상업주의적 경영을 확립해 간다. 신문사 내부 구조적으로도 경영층 중심으로 권력 질서가 재편되었다. 경영층에서 편집권을 장악하고 편집층, 기자들과도 충돌구조가 형성된다. 정부의 언론매체 관리 방식도 이 사건을 계기로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편집자, 기자 등 언론인을 직접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층에게 압력을 가하거나 조절자의 역할을 담당시키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박정희정부는 언론위원회 설립에 반대 입장을 취한 『경향신문』, 『조선일보』, 『동아일보』에 대해 중앙정보부 내부에 '언론책임조절반'을 설치하고 각 신문사 별로 전략을 수립해 각 신문사의 경영진을 포섭해 갔다.<sup>35)</sup> '언론기업화' 과정에서 언론매체의 내부 권력구조가 경영층 우선으로 조절되었고 신문의 제작과 편집권도 기자에서 경영진 위주로 전환했다. 정부는 경영진에게 제제와 압력을 가하는 방식으로 편집자와 기자를 통제하고, 나아가서는 언론 내용까지도 통제하게끔 했다. 따라서 정부가 직접 나서지 않아도 경영층을 통해 정부의 의도와 정책을 관철할 수 있었고, 언론 내용의 통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다.

또한 1972년 1월 1일부터 '프레스카드제'가 실시되었는데, 이는 국가가 기자의 자

35) 이재국, 『공론화 절실, 실질적 보상 있어야: 언론 과거사 청산과 경향신문 강제매각 사건』, 『신문과 방송』, 417(서울, 2005.9), p.124.

격을 심사해 허가증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기자의 동태를 파악하고 감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프레스카드제’ 실시를 계기로 기자의 수를 대폭 감소시켰다. ‘프레스카드제’ 실시 후 38%인 1,920명의 기자가 해직당해 기자 수는 3,137명으로 줄었다.<sup>36)</sup>

그리고 언론매체가 정부와 대항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언론 인사를 대량 정부에 흡수해 각 부서의 공보관 즉 대변인으로 등용했다. 1976년 통계에 의하면 18개 중 12개 정부 부서의 공보관이 언론인 출신이었다.<sup>37)</sup> 1970년대에는 안기부 요원이 신문 사나 편집국에 상주하며 신문 편집에 간섭했다. 정부는 수시로 ‘협죄의뢰’라는 형식으로 언론기관의 보도행위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문화공보부는 면담이나 전화 통화 등을 통해 언론기관에 압력을 가했다.<sup>38)</sup>

#### 4. 대만과 한국의 신문 통제 정책의 차이와 원인

##### 1) 직접적인 통제와 간접적인 통제

신문매체 통제체제에 대한 대만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는 대만의 ‘신문금지’정책은 직접적인 통제 방식을 취하는데 비해 한국의 ‘언론기업화’정책은 간접적인 방식이라는 것이다. ‘신문금지’ 제도 하에서 신문사 등록증 발급 제한, 신문용지 제한, 인쇄 제한으로 인해 신문사의 수량, 인쇄량과 기사량이 제한되었다. 이는 신문매체의 물질적인 환경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통제 효과를 발휘하는 방식이었다.

한국의 ‘언론기업화’제도의 가장 큰 특색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신문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층과 결탁하거나 경영층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통제효과를 발휘하는 것이었다. 한국정부는 언론사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조해 주었다. 정부와 언론사 경영층 사이에는 일종의 ‘밀월관계’가 형성되어 경제 제제를 가하는 방식으로 경영층에게 압력을 가해 경영층이 스스로 편집인, 기자와 언론

36) 김해식, 『한국언론의 사회학』, p.136.

37) 김해식, 『한국언론의 사회학』, p.124,141-142.

38) 김민환, 『한국언론사』, p.498.

내용을 통제하게끔 했다.

언론 내용의 통제에 관해서도 대만이 한국에 비해 엄격하다고 할 수 있다. 중화민국 정부는 ‘대만성계엄기간신문잡지도서관제판법’과 ‘출판법’을 이용해 언론 내용을 통제했다. 이 두 법률은 정부가 언론인 체포, 정간, 등록 말소를 집행하는 주요 법적 근거를 제공해 주었다. 그러나 한국은 이승만정부 때부터 직접적으로 언론매체를 제재할 수 있는 법령 제정을 추진했으나 실패로 끝났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국가보안법’을 강화하고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반공법’,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등으로 부족한 규제를 보완할 수밖에 없었다.

1968년 『신동아』라는 잡지에 ‘차관’이라는 내용이 ‘반공법’위반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보도내용 중 어느 부분이 ‘반공법’ 위반인가를 질의하며 정부를 비판했다. 이렇듯 한국정부의 신문매체 통제체제는 대만에 비해 허술하며 철저하지 못 했다.

## 2) 권위주의 체제의 차이와 신문 정책

### ① 언론매체 구조의 차이

대만의 ‘2.28사건’ 과정에서 실종, 살해, 투옥당한 언론인은 34명에 달했다.<sup>39)</sup> ‘2.28사건’은 대만 출신 언론매체 엘리트들에게 큰 타격을 입혔다. 대만 출신 문인들과 기업들은 신문사 경영에 불안감에 떨치지 못하고, 언론 출판계를 떠났다. ‘2.28사건’ 이후 중국대륙에서 온 엘리트인 ‘외성인(外省人)’과 ‘반산(半山)’들이 대만 출신 엘리트를 대신해 언론 매체와 여론의 주도권을 장악했다.<sup>40)</sup> 국민당과 ‘외성인’은 모두 중국대륙에서 대만으로 건너온 집단으로 비교적 쉽게 공통 의식을 형성할 수 있었다. 중화민국정부가 추진하는 언론매체 정책에 관한 호응도도 무척 높았다.

이에 비해 한국은 정부와 공통 배경을 지닌 신(新)이민 집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39) 呂東熹, 『『自立晚報』의崛起與消失談臺灣報業轉型正義』, 張炎憲主編, 『戰後臺灣媒體與轉型正義論文集』, (臺北: 吳三連獎基金會, 2008), p.3-5.

40) 이러한 구조는 현재까지도 유지되어 실질적으로 언론사의 실권을 장악하거나 경영권을 가진 인사의 대다수가 ‘외성인’ 출신이다. 呂東熹, 『『自立晚報』의崛起與消失談臺灣報業轉型正義』, p.6,48-49.

해방 후 한국은 식민지시기의 전통을 이어받아 식민지시기에 형성된 엘리트가 언론매체를 주도하는 구조를 형성했다. 1919년 ‘3.1운동’ 이후 일본은 조선에 부분적인 언론 자유를 허용했다. 1920년 조선통독부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발행을 허가했는데<sup>41)</sup> 이 두 신문은 조선민족운동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조선민중의 입장을 신문에 반영했다. 일본 당국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다. 해방 후 식민지시기에 축적한 언론매체 엘리트들이 다시 언론계에 진출해 식민지시기의 형성된 비판적인 입장의 전통을 계승해 해방 초기의 언론계를 이끌어 갔다. 한국에서는 대만과 같이 식민지시기에 배양한 언론매체 엘리트들이 숙청되지 않았고 여전히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정부에 대항할 실력도 갖추고 있었다.

## ② 정부 기초의 차이

대만의 ‘신문금지’ 제도는 ‘출판법’에 근거하고 있는데 중화민국정부는 1930년 중국 대륙에서 제정한 ‘출판법’을 기초로 수정을 가해 발표했다. 즉 법을 새로 제정한 것이 아니라 수정만 가했기 때문에 입법 난이도를 낮출 수 있었다. 이에 비해 한국정부는 새로 창립한 정부이고 새로 법안을 제정해야 했기 때문에 입법 난이도가 대만에 비해 무척 높았다.

## ③ 선거제도로 인한 사회 여론 압력의 차이

1949년 12월 중화민국정부가 대만으로 철폐한 후, 중국대륙 시기에 제정한 ‘중국 전체’를 국가 영토로 설정한 ‘중화민국헌법’을 대만에서 계속해서 사용했다. 중국대륙 시기에 선출한 중앙민의대표(국민대회대표, 입법위원, 감찰위원)의 직권을 연장하고 중앙선거는 봉쇄했다. 그리고 지방선거만 개방했다. 중앙민의대표는 ‘만년국회’로 불리며 대표들의 고령화에 따라 국회기능을 유지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69년 처음으로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1972년 이후에는 정기적으로 실시했다. ‘자유지역’에 있는 대만인은 선거를 통해 국민대회대표와 입법위원 일부를 선거로 선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총통선거는 여전히 불가능했다.

41) 성주현, 「1930년대 이후 한글신문의 구조적변화와 기자들의 동향—『동아일보』와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8(서울, 2009.8), p.154,156.

대만에 비해 한국정부는 국민의 직접적인 투표로 설립되었다. 1952년 7월 헌법을 수정해 1952년 8월 5일 처음으로 정·부통령의 직접 선거를 실시했다.<sup>42)</sup> 1961년부터 지방선거를 동결하고 지방정부의 수장은 중앙정부에서 임명했다. 그리고 1972년 유신 헌법이 공포되어 대통령 선거제도가 간접 선거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국회의원 선거는 중단되지 않고 계속 실시되었다.

대만과 한국의 선거제도의 차이는 언론 정책에도 반영됐다. 대만정부는 선거와 국민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웠다. 대만은 중앙선거를 개방하지 않기 때문에 선거나 정부에 대한 비판이나 불만을 언론이 보도한다고 해도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권교체도 불가능했다. 그렇기 때문에 중화민국정부는 고압적이고 강압적인 언론정책을 전개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은 투표권을 지닌 국민이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를 통해 정부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었고 선거와 국민의 비판은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었다. 선거는 언론매체가 정부와 대항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었다. 언론매체에게 있어 선거는 자신의 영향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회임과 동시에 정부와 대항할 수 있는 힘을 보충해 준 것이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선거의 압력 하에서 언론정책에 있어 회유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 ④ 야당 영향력의 차이

중화민국정부는 대만에서 ‘정당 설립 금지(黨禁)’제도를 실시하고 국민당 이외의 정당은 존재할 수 없게끔 규정했다.<sup>43)</sup> 대만에서 국민당 이외의 정당이 정식으로 설립되는 것은 1989년 ‘동원감란시기인민단체법(動員戡亂時期人民團體法)’이 수정된 이후이다.<sup>44)</sup>

42) 임영태, 『대한민국50년사1 - 건국에서 제3공화국까지』, p.77-79,179-180.

43) 사실상 대만에는 국민당 외에 민주사회당(民主社會黨)과 청년당(青年黨) 두개의 합법적인 정당이다. 그러나 이 두 정당의 당 대표는 모두 중국대륙 출신자으로 국민당의 제정 보조를 받아 당의 운영을 유지했다. 따라서 ‘꽃병 정당’으로 불렸다. 이 두 정당은 국민당 산하에 있는 정당으로 반대당(야당)이라고 보기 힘들다. 田弘茂, 『大轉型—中華民國의 정치和社會變遷』(臺北:時報文化出版, 1991), p.87-88,117.

44) ‘動員戡亂時期人民團體法’(1989년1월20일제정공포) 第45條:符合左列規定之一者為政黨: 一,全國性政治團體以推薦候選人參加公職人員選舉為目的,依本法規定設立政黨,並報請中央主管機關備案者.二,已立案之全國性政治團體,以推薦候選人參加公職人員選舉為目的.立法院法律系統: <http://lis.ly.gov.tw/lglawc/lawsingle?00780E3B4C7E00000000000000000000A000000>

그러나 한국은 국회선거를 통해 민의 기초를 지닌 유력한 야당을 생산할 수 있었다. 비록 1960년대 박정희 시기부터는 여당이 국회의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지만 야당은 계속해서 존재했고 정부를 감독하는 역할을 했다. 야당은 언론매체와 연합함으로써 정부를 비판하고 야당의 입장을 선전할 수 있었다. 그리고 야당은 언론매체의 유력한 보호자 역할을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신문매체와 야당은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측면에서 협력관계를 형성했다. 이런 환경 하에서 한국정부는 강압적인 언론통제를 실시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랐다.

##### ⑤ 정당 혹은 정부가 지닌 언론매체 침투력의 차이

대만으로 후퇴한 국민당은 ‘당의 개조’를 실시한다. 1952년 당 개조가 끝난 후 대만에서는 국민당 이외의 정당설립을 금지하는 일당전제(一黨專制)체제가 실시되어 ‘당이 정부를 이끄는’ 체제인 ‘당국체제(黨國體制)’가 형성되었다. 중화민국의 ‘당국체제’는 언론 정책에도 반영되었다. 앞에서 서술한 ‘제4조’가 바로 당에 소속된 조직으로 당이 모든 언론 정책을 장악하고 감시, 지도, 처벌을 주관했다. 언론계의 간부 혹은 책임자는 모두 국민당원 혹은 국민당 관련인사였고 심지어는 당 혹은 정부에서 직접 신문사를 경영했다. ‘육군훈련사령부(陸軍訓練司令部)’는 『정충보(精忠報)』(1948.2.22 창간)를, ‘국어추진위원회(國語推行委員會)’는 『국어일보(國語日報)』(1948.10.25 창간)를, ‘남경중앙일보사(南京中央日報社)’는 『중앙일보(中央日報)』(1949.3.22 창간)를, ‘팽호방위사령부(澎湖防衛司令部)’는 『건국일보(建國日報)』(1949.11.23 창간)를 발간했는데, 이는 모두 관영신문이다.

그리고 1950년대 국민당은 주로 지방의 당 지부나 각 신문사내에 ‘당원소조(黨員小組)’를 설치해 국민당 당원을 통해 언론을 감시했다.<sup>45)</sup> 1960년대 대만 경제가 발전하기 시작하자 대만 본토 출신인사들이 언론매체 산업에 진입하려 한다.<sup>46)</sup> 국민당은 언론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직접 각 신문사에 ‘신문당부(新聞黨部)’를 설립하고 조직적으로 언론을 감시하고 여론 방향에 간섭하기 시작한다.<sup>47)</sup> 『중앙일보』, 『국어일보』 등 관

002000000^01124078012000^00086001001 참조(방문일자: 2016年12月1日).

45) 楊秀菁, 『臺灣戒嚴時期新聞管制政策』, p.189; 呂東熹, 『『自立晚報』的崛起與消失談臺灣報業轉型正義』, p.30-31.

46) 呂東熹, 『『自立晚報』的崛起與消失談臺灣報業轉型正義』, p.25.

영 신문 이외의 민영 신문인 『중신신문(徵信新聞)』(1968년에 『중국시보(中國時報)』로 변경)와 『연합보(聯合報)』의 사장은 모두 국민당 당원으로 당과 정부에 대한 부응도가 무척 높았다. 『중국시보』와 『연합보』는 국민당의 지원 하에서 점차 시장을 독점하게 된다.<sup>48)</sup>

한국에는 당이나 정부기관에서 경영하는 신문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정부는 ‘문화공보부’가 언론정책을 담당하지만 그 영향력은 국민당의 ‘제4조’와 비교되지 못할 정도로 약했다. ‘문화공보부’의 언론에 대한 감시는 주로 ‘프레스카드제’를 통해 이루어진다. 한국정부는 언론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언론계 인사들을 정부로 흡수해 각 부서의 ‘공보관’에 임명함으로써 정부와 언론계의 연계를 시도한 것이다.

#### ⑥ 민중 역량의 차이

대만은 ‘당’을 이용해 노동계, 학원, 농민, 상공업계에 침투해 반대세력의 형성을 저지했다. 노동계 침투에 관해서는 1950년 국민당은 당 조직을 동원해 노조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노조를 장악하고 당원이 이를 주도하는 일원체제를 형성했다. 따라서 대만의 노조는 ‘어용’ 조직으로 묘사되었다.<sup>49)</sup> 학원통제에 관해서도 국민당, 구국단(救國團), 군사훈련체계를 이용해 감시체제를 구축했다. 1980년대 이전에는 거의 어떤 반정부 형태의 학생운동도 발생하지 못했다.<sup>50)</sup> 국민당은 ‘농협’에 대해서도 국민당원이 조직을 장악하는 형식을 취했다. 1980년대 이전에는 국민당 통제 하에서 민중은 조직화된 세력을 형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민중의 자발적인 반정부조직도 형성되지 못했다.

1960, 70년대 한국에서는 야당, 사회단체, 학생, 노동단체가 주요 정부비판 세력으로 성장했다. 특히 대학생조직은 야당, 사회단체, 노동단체와 연계해 조직적으로 반정부운동을 전개했다.<sup>51)</sup> 이러한 민중세력은 언론매체가 정부와 대항할 수 있는 뒷받침

47) 楊秀菁, 『臺灣戒嚴時期新聞管制政策』, p.188-189.

48) 楊秀菁, 『臺灣戒嚴時期新聞管制政策』, p.244.

49) 倪炎元, 『東亞威權政體之轉型－比較臺灣與南的韓民主化歷程』, (臺北: 月旦出版社, 1995), p.125-126.

50) 倪炎元, 『東亞威權政體之轉型－比較臺灣與南的韓民主化歷程』, p.128-129.

이 되었다. 1970년대 중반 이전까지 한국 언론매체는 정부를 비판하는 중요한 세력 중 하나였다.

언론매체는 민중세력과의 결합을 통해 정부를 비판하는 생존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정부는 강제적인 제제를 가하지 못했다. 고압적인 통제는 언론의 보도를 통해 민중 세력의 결합과 확대라는 결과를 가져올 지 몰랐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더욱더 조심스럽고 정교하게 언론문제를 처리해야만 했기 때문에 간접식 통제 방법이 출현했다.

## 5. 맺음말

대만의 신문 통제 체제는 1950년대에 ‘신문금지’ 정책을 통해서 구축되었다. 그리고 ‘출판법’과 ‘대만성계엄기간신문잡지도서관제관법’을 적용해 신문의 언론 내용을 통제했다. 1960년 『자유중국(自由中國)』과 1961년 『공론보(公論報)』 두 잡지가 정간된 후 대만의 언론은 강력한 통제하에 들어가게 된다. 1960년대는 대만의 언론통제가 가장 엄격했던 시기이다. 1970년대에는 중화민국정부가 외교적으로 심각한 좌절을 겪으면서 언론 표출 공간이 확대되었다. 1971년 『대학잡지(大學雜誌)』가 국민당의 묵인하에 창간되어 지식인들의 가장 중요한 언론 표현 공간이 되었다. 그러나 『대학잡지』의 언론이 점차 격렬해짐에 따라 1974년 국민당의 ‘특별 지도’에 의해서 개편되어 원래의 비판성 언론 성질을 상실했다. 52)

1970년대 대만은 중앙민의대표의 보궐선거를 정기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1975년 ‘당외세력(黨外勢力)’이 『대만정론(臺灣政論)』이라는 잡지를 창간해 언론 자유 공간이 확대되었다. 1979년 잡지등록이 개방되자 잡지는 정부비판 주요 매체가 되었다. 잡지 등록 수는 계속 증가했고 단속을 통해 발행 금지된 잡지의 수량도 폭증했다. 그 중 1979년 『미려도(美麗島)』잡지의 정간은 ‘미려도사건’을 유발했다. 비록 1970년대말에

51) 전재호, 『자유민주주의를 중심으로 본 민주화운동: 제1공화국에서 제5공화국까지』, 『한국 정치외교사논총』, 22 : 2(서울, 2000.2), p.155-156.

52) 楊秀菁, 『臺灣戒嚴時期新聞管制政策』, p.209-223.

‘미려도사건’이 발생하기는 했지만 1970년대와 1980년대는 대만 사회의 언론공간이 그 이전에 비해서는 크게 확대되었다.

한국의 신문 통제 체제의 구축시기는 대만에 비해서 늦다. 1960년대 박정희정부 때부터 ‘언론기업화’ 정책을 통해 언론통제체제를 구축하기 시작한다. 1950년대는 민주화 전에 한국 언론이 가장 자유로운 시기였다. 1960년대부터 한국 신문매체는 정부의 각종 특혜를 받으며 ‘대기업’으로 성장했다. 1970년대 중반부터 한국 신문사의 경영층이 신문 편집권을 장악함으로써 한국의 신문통제체제는 완비되었다. 전두환정부의 1980년대가 한국에 있어서는 신문 통제가 가장 엄격했던 시기이다.

1980년 전두환정부는 중앙지를 6개로 한정하고 지방지는 ‘1도 1사의 원칙’에 따라 통폐합해 언론구조를 전면적으로 재편했다. 또한 같은 해 12월 ‘언론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언론을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법안을 제정했다. 이 법에 따라 언론매체가 ‘등록된 발행목적’을 위반하거나 ‘폭역행위등 공공질서를 문란케 하는 위법행위를 고무·찬양’했을 경우에는 문화공보부부장이 발행 정지를 명할 수 있었다.<sup>53)</sup> 뿐만 아니라 문화공부부내에 ‘홍보조정실’을 설치해 정보를 관리하고 정부 정책의 선전을 담당하게 했다. <sup>54)</sup>

대만은 1987년 7월 15일 계엄령이 해제되었다. 같은 날 국방부는 ‘대만성계엄기간 신문잡지도서관제판법’을 폐지하고, 12월 30일 행정원은 ‘전시신문용지절약판법(戰時新聞用紙節約辦法)’을 폐지해 ‘신문금지’ 제도가 종결되었다.<sup>55)</sup> 반면 한국은 1987년 ‘6.29민주화선언’ 후 같은 해 11월 ‘언론기본법’이 폐지되고 ‘정기간행물등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법률은 신문매체의 등록 기준과 규정을 설명한 것으로 언론 내용 통제에 관한 조항은 들어 있지 않다.<sup>56)</sup>

대만과 한국은 비슷한 시기에 언론통제를 해제하고 언론 자유화 시대로 진입했다. 대만은 ‘신문금지’ 정책이 종결된 후 신규 신문사가 폭증했으나 기존 신문사와 대항하기 어려웠다. 이는 언론 시장이 자유 경쟁시대로 진입해 신문사의 수입이 광고에 의

53) ‘언론기본법’(1980년12월31일 제정 공포), 第3條, 第24條.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www.law.go.kr/main.html>(방문일자 : 2016년12월1일).

54) 김해식, 『한국언론의 사회학』, p.152-153.

55) 楊秀菁, 『臺灣戒嚴時期新聞管制政策』, p.274-275.

56) ‘정기간행물등록에 관한 법률’(1987년11월28일 제정 공포).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www.law.go.kr/main.html>(방문일자 : 2016년12월1일).

준하게 된 상황에서 발행량이 광고주가 광고를 싣는 중요 기준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sup>57)</sup> 따라서 발행량이 많은 기존 신문사가 우세한 ‘언론기업화’ 구조가 형성되어 한국과 유사한 언론 형태로 발전했다. 한국은 1970년대에 이미 신문사가 광고에 의존하는 시대로 진입했고 대형 언론매체가 유리한 환경이 형성되었다.

대만과 한국 정부가 언론통제를 해제한 후 가장 다른 양상을 보인 것은 한국은 그다지 언론 자유 공간이 확대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만은 ‘신문금지’가 해제된 후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가 사라져 비판 언론의 공간이 급속도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한국은 경영층을 이용한 간접 통제였기 때문에 ‘6.29민주화선언’ 후 정부로부터 압력이 감소했지만 언론사의 경영층은 여전히 정부와 협력관계에 있었다. 현재까지도 한국의 주요 언론사들은 이러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정부는 여전히 경영층을 통해서 통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대만 또한 민주화 후 일시적으로 언론사가 증폭했지만 언론사가 ‘기업화’ 되면서 중화민국정부와 일부 대형 신문사 경영층 사이에는 한국과 유사한 협력관계가 형성되었다. 중화민국정부도 한국과 같은 경영층을 통해 언론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57) 呂傑華, 「報業發展與經濟變遷—論報禁解除十周年台灣報業生態及發展趨勢」, 『民意研究季刊』, 第204期(臺北, 1998.4), p.89-90.